재정정보분석 19-01

dBrain을 활용한 재정지출과 조세지출 연계관리

정성호

2019. 8.

한국재정정보원
Korea Public Finance Information Service

dBrain을 활용한 재정지출과 조세지출 연계관리

정성호

2019. 8.

한국재정정보원
Korea Public Finance
Information Service

dBrain을 활용한 재정지출과 조세지출 연계관리

정성호 연구위원

이 보고서는 한국재정정보원 홈페이지(www.kpfis.or.kr)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한국재정정보원은 발간 보고서에 관한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안하신 소중한 의견이 향후 재정관리시스템 개선과 재정운용에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02-6908-8581 ✉ analysis@kpfis.kr

요 약

1. 연구의 개요 및 목적

□ 조세지출(간접)은 재정지출(직접)과 동일한 정책목표를 추구하는 수단이므로 통합 재정지출 관점에서 관리될 필요

○ 조세지출은 특정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유용한 수단이기도 하지만 세입 기반을 축소시키는 주된 원인임

○ 최근 조세지출의 항목과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어 체계적 관리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음

○ 재정지출과 달리 조세지출은 예산안 첨부서류로 조세지출예산서가 작성될 뿐 예산 및 결산체계와 연계되지 않고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dBrain)에서도 관리 되지 않고 있음

□ 조세지출은 지속가능한 재정운영의 한 축으로 건전재정(책임성과 투명성) 및 효율적인 재원배분 관점에서 관리될 필요

○ 조세지출예산서가 예산안 첨부서류로 활용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되고, 동일한 재정지출 관점에서 체계적 연계관리가 필요함

○ 재정지출과 조세지출의 연계관리를 통해 지출총량 관리는 물론 지출효율화 수단으로 활용되어야 함

□ 본 보고서에서는 재정지출과 조세지출의 연계관리 필요성을 설명하고, 두 지출간 연계 정도를 검토한 후 체계적 연계관리를 위한 수단으로 템플릿(template) 및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dBrain) 활용 방안을 제안

○ 우리나라와 주요 국가의 조세지출 관리 구조를 비교·검토한 후 재정지출과 조세지출의 연계관리 관점에서 활용 가능한 방안을 탐색

○ 재정지출과 조세지출의 연계검토를 통해 대안을 제시하고, 연계관리를 위한 템플렛과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dBrain)활용 방안을 제안

2. 조세지출의 개념 및 현황

□ 조세지출은 「조세특례제한법」,* 개별법,** 경과조치***에 따른 조세지출로 구분되며, 조세지출 항목 및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

* 조세특례제한법 : 「조세특례제한법」의 모든 비과세·감면 제도
** 개별세법 :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등 특별세액공제
*** 경과조치 : 조세특례 규정 폐지 이후 종전 규정에 따라 한시적으로 발생하는 조세지출

○ 2019년 기준, 조세지출 항목은 239개(조세특례제한법 200개, 개별세법 39개)이고, 국세수입액은 294.8조원이며, 조세지출 규모는 47.4조원임(국세감면율 13.7%)

〈표 1〉 조세지출 항목 및 규모

(단위: 조원, %)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항목수	조세특례제한법	186	190	190	197	200
	개별세법	43	40	39	38	39
	계 (수)	229	230	229	235	239
규모	조세지출총액	35.9	37.4	39.7	41.9	47.4
	국세수입액	217.9	242.6	265.4	293.6	294.8
	국세감면율	14.1	13.4	13.0	13.5	13.7
	국세감면한도율	14.7	14.7	14.4	14.0	13.8

□ 재정지출은 프로그램예산체계에 기초하여 관리되지만, 조세지출은 「조세특례제한법」에 기초하여 부가적으로 프로그램 예산체계를 활용하는 등 관리 구조 및 방식의 차이가 있음

○ 재정지출은 프로그램예산체계(분야-부문-프로그램-단위-세부사업)에 기초하여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dBrain)에서 관리되고 있음

○ 조세지출은 「조세특례제한법」에 기초하여, 기능별, 세목별, 감면방법별 등으로 구분 관리하고 있으며,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dBrain)에서 관리되지 않고 있음

- 기능별(프로그램예산체계의 분야-부문과 비교 가능한) 분류조차 재정지출(분야-부문)과 연계되지 않아 정책수단을 비교 검토하기에 제한됨

〈표 2〉 재정지출과 조세지출 관리 구조 및 방식

구분	재정지출	조세지출
관리 수단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 (dBrain)	없음(기재부에서 조세지출내역만 관리)
정보 활용	예산, 결산, 및 성과관리	예산안 첨부서류
세부 정보 관리	프로그램예산체계에 기초한 관리 (분야-부문-단위사업-세부사업)	조세특례제한법에 기초하여 아래 항목별 관리 -기능별(프로그램예산체계 16개 분야 중 13개 분야-부문)* -세목별(소득세 등 직접국세, 간접국세) -감면방법별(비과세 등 직접감면, 간접감면) -조세특례제한법상(중소기업, 연구개발 등)

* 조세지출예산서상 기능별 분류는 분야별 내역을 제시하고 있지만 실제 분류의 기초는 분야-부문까지 활용

□ **조세지출은「국가재정법」및「조세특례제한법」등에 규정하고 있으며, 최근 조세지출 관리를 구체화하기 위해「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

○ 2010년 이후, 「국가재정법」 제27조(조세지출예산서의 작성)와 제34조(예산안의 첨부서류), 「국가재정법」 부칙 제6조(조세지출예산서의 작성·제출에 관한 적용례 등)에 근거하여 조세지출 관리

○ 2013년 법 개정으로 「국가재정법」 제27조(조세지출예산서의 작성)는 폐지되어, 현재는 「국가재정법」 제34조, 「국가재정법」 부칙 제6조에 기초하되,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의 2(조세지출예산서의 작성)에 구체화하였는데, 이는 조세지출의 세부 내역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3. 주요 국가의 조세지출 관리

□ 개별 국가의 조세지출은 OECD의 준거기준*을 기초하되, 개별 국가의 경제 상황과 배경, 중요 재정지출 항목 등을 반영하기 때문에 획일적인 관리방식이 있는 것은 아님

* "조세체계상 일반적인 원칙인 기준조세체계(benchmark tax system)를 벗어난 것"으로 규정, 여기서 '기준조세체계'란 세목별 과세대상, 세율구조, 과세구간, 과세단위, 과세기간, 국제조세규약 등을 의미

□ 조세지출은 개별 국가의 경제 상황과 역사적(사회적) 배경 등을 반영하기 때문에 다양한 방식으로 관리

○ 주요 국가의 조세지출은 개별세법에 기초하여 관리되는 반면 우리나라의 조세지출은 「조세특례제한법」에 기초하여 관리되고 있음

○ 프랑스는 재정지출과 조세지출(예산안의 부속서류)을 아우르는 공공정책 전반의 성과관리를 목표로, 성과보고서에 조세지출과 기능별 분류 등을 연계하여 관리하고 있음

○ 호주는 직접지출과 연계한 조세지출의 검토와 직접지출과 유사한 수준의 감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신규 조세지출은 규제영향평가를 수행하고, 사전평가를 수행하지 못한 경우 사후평가 수행과 의회의 요청에 따른 감사원의 사후평가를 수행함

○ 뉴질랜드는 「소득세법」에 근거하여 예산안과 함께 조세지출내역서를 작성하고 있으며, 조세지출은 조세체계를 활용한 지출(납세자에게 소득 이전이나 비과세 감면 등)과 순수 조세지출로 구분하여 정책목적(사회, 경제, 기타)과 영향 (경과규정, 영구규정, 일시규정)으로 구분 관리하고 있음

○ 영국은 모든 조세감면을 파악하되, 규모추정이 가능한 항목(5천만 파운드 이상 또는 이하)에 한정하여 조세지출을 관리하지만,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은 연계 관리하지 않고 있음

〈표 3〉 주요 국가 조세지출관리

구분(관리)	조세지출 관리
프랑스 (개별세법)	- 예산안 부속서류로 조세지출예산서 제출(우리나라와 유사) - 재정지출 및 조세지출 전반의 성과관리, 성과보고서에 조세지출 연계
호주 (개별세법)	- 재정지출과 조세지출 연계검토 - 신규조세지출은 규제영향평가, 사후평가 필히 수행, 의회요청에 따른 감사원 사후평가
뉴질랜드 (소득세법)	- 예산안과 조세지출내역서 함께 제출(우리나라와 유사) - 조세지출의 정책목적(사회, 경제, 기타) 및 영향(경과, 일시, 영구)으로 구분관리
영국 (개별세법)	- 재정지출과 조세지출 미연계 - 국세청에서 관리, 규모추정이 가능한 항목(5천만 파운드 이상 또는 이하)에 국한하여 조세지출 관리

4. 재정지출과 조세지출의 연계관리 방안

□ **재정지출과 조세지출은 동일한 정책목표를 추구하는 수단으로 연계관리를 통해 효율적 재원배분에 기여할 필요**

○ 조세지출은 세입(예산)단계에서 개괄적 심의만 되고 있어 세출관점에서 효율적 재원배분에 기여하지 못함

○ 재정지출과 조세지출 간 비교 검토가 제한되어 재원배분의 효과성을 측정하기 어려움

- 프로그램예산체계(분야-부문)에 기초하여 재정지출과 조세지출의 연계정도를 검토한 결과,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이 체계적으로 연계되지 않음
- 이는「조세특례제한법」에 기초한 하위 조세지출항목을 단순히 프로그램예산체계(분야-부문)에 대응시킨 것과 무관하지 않음

- 재정지출(프로그램예산체계)의 분야-부문 등에 기초하여 조세지출의 기능별(분야-부문) 분류의 체계적 검토를 통해 일치화 작업 필요

□ **예산, 결산 및 성과관리 측면에서 재정지출과 조세지출의 연계관리를 통해 건전재정과 효율적 재원배분에 기여할 필요**

○ 예산 측면에서 현행 예산(재정지출)은 프로그램예산체계에 기초하여 관리되고 있지만 조세지출예산은 분야-부문 내역만 제시하고 있어 국가재정운용을 정책수단별로 비교가 제한됨

- 예산안 세출 첫 부분 등에 기능별 재정지출과 조세지출 내역을 제시하고, 소관부처별 재정지출(재정사업) 끝 부분에 조세지출 내역을 함께 제시할 필요
-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조세지출내역을 포함하여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예산안의 재정지출과 조세지출의 연계 심의가 가능하도록 개편 필요
- 두 지출 간 연계관리를 위해 국가재정운용계획의 분야(12개 분야)는 프로그램 예산체계와 조세지출 체계(16개 분야)를 일치시킬 필요
- 예산측면에서 두 지출 간 연계관리는 재원배분의 효과성 등을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재정집행의 책임성 강화에 기여

○ 결산 측면에서 현행 국가결산보고서는 재정지출정보만 제공하고 있는데, 재정 지출과 조세지출 내역의 통합공개를 고려할 필요

- 국가결산서 결산개요, 일반회계 세출, 기능별 세출에서 재정지출과 조세지출의 총량을 제시하고, 필수보충정보 또는 부속서류에 제시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
- 재정지출과 조세지출의 결산내역을 동시에 제공하려면 조세지출 결산을 재정 지출 결산과 동일한 순기로 조정이(앞당겨야) 필요
- 국세통계연보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raw data)의 실시간 연계는 제한되더라도 월 단위 조세지출내역의 공유를 고려해야 하고, 이 자료는 국가결산보고서에 조세지출내역 추정치로 활용가능

- 결산측면에서 두 지출 간 연계관리는 재정지출의 효과성 등을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재정집행의 책임성 및 투명성 강화에 기여

○ 성과관리 측면에서 현행 조세지출에 국한된 성과평가체계는 재정지출과 연계된 성과평가가 불가능하므로 재정지출과 연계된 조세지출 성과평가체계로 개편될 필요

- 프랑스와 같이 조세지출과 성과보고서가 연계되도록 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성과관리 측면에서 두 지출 간 연계관리는 재정지출의 효과성 등을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재정집행의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음

□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dBrain)을 활용한 재정지출과 조세지출의 세부내역을 연계하여 관리될 필요

○ 통합 재정지출 관점에서 조세지출의 세부내역은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dBrain)에서 통합관리되어야 함

-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dBrain)에서 조세지출관리를 위해 조세지출체계(분야-부문, 조세특례제한법)는 현행 프로그램예산체계(분야-부문-프로그램-단위사업-세부사업)로 확장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음
-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dBrain)을 활용한 세부 조세지출 내역관리를 위한 수단으로 템플렛(template)이 필요하며, 이는 수작업(조세지출예산서 작성)에서 발생되는 오류를 줄일 수 있음
- 차세대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dBrain) 구축시 조세지출관리 로직을 추가로 반영할 필요가 있고,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dBrain)에 조세지출이 추가됨에 따른 재정지출과 조세지출의 구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부문코드에 T를 추가할 필요가 있음(예, 110-117T)

〈표 4〉 dBrain에서 재정지출과 조세지출의 연계관리(예시)

	소관부처	회계	코드	분야	코드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재정지출	A	일반	11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3	무역 및 투자유치	통상협력 지원	양자간 통상협력 지원	양자산업 협력
재정지출	A	일반	11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3	무역 및 투자유치	통상협력 지원	양자간 통상협력 지원	산업통상협력 개발지원 (ODA)
조세지출	B	일반	11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7**T**	산업혁신 지원	연구개발 지원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감면	세액감면
조세지출	B	일반	11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7**T**	산업혁신 지원	연구개발 지원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감면	저율과세
조세지출	A	일반	11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6**T**	중소기업 일반	중소기업 지원정책	중소기업 세액공제	소득세 공제
조세지출	A	일반	11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6**T**	중소기업 일반	중소기업 지원정책	중소기업 세액공제	법인세 공제
조세지출	A	일반	11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6**T**	중소기업 일반	중소기업 지원정책	중소기업 세액감면	소득세 감면
재정지출	A	일반	11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5	에너지 및 자원개발	에너지 자원정책	에너지자원 정책지원	에너지 국제기구 분담금
재정지출	A	일반	11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5	에너지 및 자원개발	에너지 자원정책	에너지자원 정책지원	에너지 정책홍보
재정지출	A	일반	11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5	에너지 및 자원개발	에너지 자원정책	에너지자원 정책지원	국가에너지 위원회운영

목 차

Ⅰ. 서론 ····· 1

Ⅱ. 조세지출 개념 및 현황 ····· 3

1. 재정지출과 조세지출의 개념 및 구조 ····· 3

가. 재정지출 ····· 3

나. 조세지출 ····· 7

2. 조세지출의 범위 및 특성, 법적 근거 ····· 10

가. 조세지출의 범위 및 특성 ····· 10

나. 조세지출의 법적 근거 ····· 13

다. 조세지출 관리의 목적 ····· 16

3. 재정지출과 조세지출의 연계 논거 ····· 17

가. 재정관리(예산·결산) 측면의 연계 ····· 17

나. 성과관리 측면의 연계 ····· 19

Ⅲ. 각국의 조세지출 관리 ····· 22

1. 우리나라의 조세지출 관리 ····· 22

가. 조세지출구분 ····· 22

나. 조세지출 작성 대상기관 (19개 기관) ····· 27

다. 조세지출예산서 작성 ····· 27

2. 주요 국가의 조세지출 관리 ····· 28

가. 영국 ····· 28

나. 프랑스 ····· 33

다. 호주 ····· 37
라. 뉴질랜드 ····· 44
마. 국제비교를 통한 시사점 ····· 48

Ⅳ. 재정지출과 조세지출의 연계관리 ····· 52

1. 재정지출과 조세지출의 연계 필요성 ····· 52
2. 재정지출과 조세지출 연계검토 ····· 53
3. 조세지출 통계작성 및 수단 ····· 69
가. 조세지출 통계작성 간 오류 ····· 69
나. 조세지출 통계작성 수단으로서 템플렛(template) ····· 72
4. 향후 과제 도출 ····· 76

Ⅴ. 결론 및 정책적 함의 ····· 81

참고문헌 ····· 84

부록 ····· 85

표 목 차

〈표 2-1〉 재정지출 구조 ····· 4

〈표 2-2〉 예산과목체계(분야-부문) ····· 5

〈표 2-3〉 dBrain 시스템상 재정지출 관리구조 ····· 6

〈표 2-4〉 국세감면 추이(2017~2019) ····· 8

〈표 2-5〉 조세지출 항목 수 및 조세지출 규모 ····· 9

〈표 2-6〉 조세지출의 특성 ····· 11

〈표 2-7〉 조세지출항목 유형별 구분기준 ····· 12

〈표 2-8〉 관리대상 유형별 조세지출 현황 ····· 12

〈표 2-9〉 조세지출보고서와 조세지출예산서 차이 ····· 13

〈표 2-10〉 예산·결산 및 조세지출예산서와 국가재정운용계획 기능별 분류 비교 ····· 19

〈표 2-11〉 조세지출 성과관리 체계 ····· 20

〈표 3-1〉 기능별 조세지출 규모(2017~2019) ····· 23

〈표 3-2〉 세목별 조세지출 규모(2017~2019) ····· 24

〈표 3-3〉 감면방법별 조세지출 규모(2017~2019) ····· 25

〈표 3-4〉 조세특례제한법상 분류기준에 따른 조세지출 규모(2017~2019) ····· 26

〈표 3-5〉 부가가치세 감면 중 조세지출로 분류되지 않는 항목_프랑스 ····· 35

〈표 3-6〉 국가별 조세지출관리 요약 ····· 49

〈표 4-1〉 중소기업_조세지출 항목 ····· 55

〈표 4-2〉 연구개발_조세지출 항목 ····· 56

〈표 4-3〉 조세지출_산업진흥·고도화 부문(110-114) 현황 (122건) ····· 57

〈표 4-4〉 중소기업_조세지출 항목 ····· 59
〈표 4-5〉 조세지출_산업진흥·고도화 부문 재분류(예시) ····· 60
〈표 4-6〉 연구개발_조세지출 항목 ····· 62
〈표 4-7〉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_예산 항목 ····· 64
〈표 4-8〉 기능별 재정지출과 조세지출 규모 ····· 66
〈표 4-9〉 근로· 자녀장려금_조세지출 항목 ····· 67
〈표 4-10〉 사회복지 기초생활보장_예산 항목 ····· 68
〈표 4-11〉 개별 조세지출항목 간 차이(조세지출예산서 / 국세통계연보) ····· 71
〈표 4-12〉 템플렛 체계 ····· 73
〈표 4-13〉 기능별 재정지출과 조세지출 규모 ····· 77
〈표 4-14〉 dBrain에서 재정지출과 조세지출의 연계관리(예시) ····· 79

그림목차

〈그림 2-1〉 조세지출예산 작성목적 ····· 16

〈그림 3-1〉 Estimated costs of principal tax reliefs_영국 ····· 29

〈그림 3-2〉 Estimated cost of minor tax reliefs_영국 ····· 30

〈그림 3-3〉 Tax reliefs in force in 2017-18 or 2018-19:
Estimates of cost unavailable_영국 ····· 30

〈그림 3-4〉 재정지출 구조_프랑스 ····· 37

〈그림 3-5〉 Large measured tax expenditure for 2017-2018 to 2020-21_호주 ··· 39

〈그림 3-6〉 Tax Expenditures Based on Revenue Gain Approach_호주 ····· 40

〈그림 3-7〉 개별 조세지출 항목별 포함내용_호주 ····· 41

〈그림 3-8〉 일몰기한이 있는 조세지출 항목_호주 ····· 43

〈그림 3-9〉 조세지출항목 판단절차_뉴질랜드 ····· 45

〈그림 3-10〉 조세지출의 분류_뉴질랜드 ····· 46

〈그림 3-11〉 조세지출과 조세체계를 통한 지출 규모_뉴질랜드 ····· 47

〈그림 4-1〉 중소기업_조세지출 연계검토 ····· 61

〈그림 4-2〉 연구개발_조세지출 연계검토 ····· 63

〈그림 4-3〉 근로장려금_조세지출 연계검토 ····· 69

〈그림 4-4〉 조세지출예산 질문지_표지 ····· 74

〈그림 4-5〉 세부 조세지출실적 작성지 ····· 75

Ⅰ. 서론

조세지출(간접)은 재정지출(직접)과 동일한 정책목표를 추구하는 수단이므로 재정지출의 관점에서 관리될 필요가 있다. 조세지출은 특정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유용한 수단이기도 하지만 세입기반을 축소시키는 주된 원인이기도 하다. 최근 조세지출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으므로 체계적 관리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재정지출과 조세지출은 관리방식에 있어 차이가 있다. 재정지출은 예산 및 결산기제와 연계하여 관리됨은 물론 dBrain 시스템을 활용하여 관리된다. 한편 조세지출은 예산안 첨부서류로 규정되어 3개 연도의 조세지출규모를 국회에 제출하고 있지만 재정관리측면에서 다소 제약이 있다. 예컨대, 예산 및 결산기제와 연계되지도 않고 디지털 예산회계 시스템(dBrain)에서도 관리되지 않고 있다.

현재 조세지출의 세부내역은 개별 행정기관(국세청 등)이 관리하고, 기획재정부가 그 원천자료(raw data)를 활용하는 구조이다. 기획재정부는 개별 행정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원천자료를 활용하여 조세지출예산서를 작성한다. 조세지출통계 산출과정에서 담당자가 수작업으로 산출하다보니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수반된다. 조세지출은 지속가능한 재정운영의 한 축으로, 중요한 재정지출중 하나이다. 따라서 건전재정과 효율적인 재원배분 관점에서 관리해야 한다. 조세지출예산서가 국회에 제출되고 있지만 예산안 첨부서류로 활용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 즉, 재정지출과 동일한 관점에서 관리가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재정지출을 관리하듯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dBrain)을 활용하여 조세지출을 병행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최근 국세감면률이 지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한다면 조세지출의 연계관리는 의미있는 과제이다. 왜냐하면 조세지출의 관리는 재정지출의 총량관리는 물론 재정지출효율화 기제로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총량위주의 조세지출 통계를 공시하고 있으며, 조세지출 통계는 수작업으로 작성된다. 그러다 보니 종종 통계상 오류가 발생하게 된다. 특히 개별 행정기관에서 제출한 조세지출 기초자료에서 일부 조세지출을 누락하거나, 또는 총계 오류가 발견된다. 근본적으로는 개별 행정기관에서 조세지출 내역 자료가 정책결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는 인식보다는 형식적 보고행위라는 인식에서 비롯된 듯하다. 따라서 조세지출관리에 대한 인식의 변화도 필요하겠지만,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dBrain)을 활용하여 세부자료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의 연계관리를 의미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dBrain을 활용한 재정지출과 조세지출의 연계관리 방안”을 탐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영국, 프랑스, 호주, 뉴질랜드 4개 국가의 조세지출관리체계 전반을 모니터링하고, 적용가능한 방안을 모색한다. 특히, 재정지출과 조세지출의 연계관리(예산 및 결산, 성과관리 등)에 초점을 맞춰 방안을 탐색한다. 두 지출간 연계성 강화를 위해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dBrain) 활용을 제안하고, 아울러 dBrain을 활용한 조세지출의 체계적 관리(작성오류 개선 등)를 위한 대안적 기제로 개별 행정기관이 활용가능한 표준 템플렛(template)을 제안한다.

본 연구의 구성은 제2장에서 재정지출 및 조세지출 개념 및 구조, 조세지출의 범위 및 특성, 법적 근거 및 재정지출과 조세지출의 연계 등에 관해 논의한다. 제3장에서는 각국의 조세지출관리를 설명하는데, 우리나라 조세지출관리 구조를 논의한 후 주요국가의 조세지출관리와 비교한다. 제4장에서는 재정지출과 조세지출의 연계관리의 필요성, 연계검토, dBrain을 활용한 조세지출관리를 위한 대안적 기제로 템플렛(template), 조세지출연계관리방안을 제안한다. 마지막 제5장은 결론 및 정책적 함의 순으로 글을 맺는다.

Ⅱ. 조세지출 개념 및 현황

1. 재정지출과 조세지출의 개념 및 구조

재정지출은 정부가 공공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지출을 의미한다. 재정지출은 일반회계(1개), 특별회계(19개), 기금(67개) 등으로 구성되며,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dBrain)에서 프로그램예산체계에 기초하여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예산 및 결산구조는 16개 분야 69개 부문(분야-부문-프로그램-단위-세부 사업)을 활용하고 있다(2019년 예산부터 일부 '부문' 개편).

가. 재정지출

재정지출은 크게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으로 구분할 수 있다. 2017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은 총 280.5조원으로 기능별로 보면 일반·지방행정 분야 지출액은 63.3조원(22.6%), 교육 분야 지출액은 58.9조원(21.0%), 사회복지 분야는 40.6조원(14.5%), 국방 분야 지출액은 39.5조원(14.1%)이다. 특별회계 세출은 62.4조원이며, 기금 세출은 619.3조원이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재정지출액은 342.9조원이며, 조세지출액은 39.7조원이다. 조세지출을 포함하면 정부재정지출총액은 382.6조원이다. 여기에 기금 지출액 619.3조원을 포함하면 1,001.9조원이다.

〈표 2-1〉 재정지출 구조

(단위: 조원)

기능별 (16개분야-69개부문)		일반회계 (1개)	특별회계 (19개)			(기금 67개)	
1	일반공공행정	63.3	기타 특별 회계 (14)	교도작업	0.09	사회 보험성 기금	181.6
2	공공질서 및 안전	17.2		교통시설	15.9		
3	외교·통일	2.5		국방·군사시설이전	0.27		
4	국방	39.5		농어촌구조개선	11.1		
5	교육	58.9		등기	0.3		
6	문화 및 관광	2.7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0.08	계정성 기금	303.4
7	환경	3.5		에너지및자원사업	5.2		
8	사회복지	40.6		우체국보험	0.7		
9	보건	6.9		유아교육지원	3.9		
10	농림수산	8.9		주한미군기지이전	0.7		
11	산업·중소기업·에너지	6.9		지역발전	9.9	금융성 기금	268.0
12	교통 및 물류	17.4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0.3		
13	통신	0.3	기업 특별 회계 (5)	혁신도시건설	0.1		
14	국토 및 지역개발	5.3		환경개선	5.0		
15	과학기술	6.2		양곡관리	1.4	사업성 기금	107.4
16	예비비	0.6		우체국예금	2.3		
				우편사업	3.8		
				조달	0.3		
				책임운영기관	0.9		
소계		280.5	소계		62.4	소계	619.3
재정지출(기금제외) 계		342.9					
재정지출과 조세지출 계		382.6(조세지출 39.7조원 포함)					
재정지출(기금포함) 계		1,001.9					

자료: 대한민국정부(2018). 2017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서 발췌

<표 2-2>는 프로그램예산과목체계에 관한 설명이다.

〈표 2-2〉 예산과목체계(분야-부문)

프로그램 예산체계		
분야 (16)	**부문 (69)**	
010. 일반공공행정	011. 입법 및 선거관리 013 지방행정·재정지원 015 정부자원관리	012 국정운영 014 재정·금융 016 일반행정
020. 공공질서 및 안전	021 법원 및 헌재 023 경찰 025 재난관리	022 법무 및 검찰 024 해경
030. 통일·외교	031 통일	032 외교·통상
040. 국방	041 병력운영 043 방위력개선	042 전력유지 044 병무행정
050. 교육	051 유아 및 초중등교육 053 평생·직업교육	052 고등교육 054 교육일반
060. 문화 및 관광	061 문화예술 063 체육 065 문화 및 관광일반	062 관광 064 문화재
070. 환경	071 상하수도·수질 073 대기 075 해양환경	072 폐기물 074 자연 076 환경일반
080. 사회복지	081 기초생활보장 083 공적연금 085 노인·청소년 087 보훈 089 사회복지일반	082 취약계층지원 084 보육·가족 및 여성 086 노동 088 주택
090. 보건	091 보건의료 093 식품의약안전	092 건강보험
100. 농림수산	101 농업·농촌 103 수산·어촌	102 임업·산촌 104 식품업
11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1 산업금융지원 113 무역 및 투자유치 115 에너지 및 자원개발	112 산업기술지원 114 산업진흥·고도화 116 산업·중소기업일반
120. 교통 및 물류	121 도로 123 도시철도 125 항공·공항	122 철도 124 해운·항만 126 물류 등 기타
130. 통신	131 방송통신	132 우정
140. 국토 및 지역개발	141 수자원 143 산업단지	142 지역 및 도시
150. 과학기술	151 기술개발 153 과학기술일반	152 과학기술연구지원
160. 예비비	161 예비비	

자료: 대한민국정부(2018). 2017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서 발췌; dBrain 예산분류체계

dBrain시스템 상 재정지출은 분야-부문-프로그램-단위사업-세부사업 등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는데, <표 2-3>과 같다.

〈표 2-3〉 dBrain 시스템상 재정지출 관리구조

소관	회계	분야(16개)		부문(69개)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대통령비서실 및 안보실	일반회계	010	일반·지방행정	016	일반행정	기관운영	인건비	인건비
대통령비서실 및 안보실	일반회계	010	일반·지방행정	016	일반행정	기관운영	기본경비	기본경비
대통령비서실 및 안보실	일반회계	010	일반·지방행정	016	일반행정	국정지원	국정운영지원	업무지원비
대통령비서실 및 안보실	일반회계	010	일반·지방행정	016	일반행정	국정지원	국정운영지원	국정운영관리
대통령비서실 및 안보실	일반회계	010	일반·지방행정	016	일반행정	국정지원	국정운영지원	시설관리 및 개선
대통령비서실 및 안보실	일반회계	010	일반·지방행정	016	일반행정	국정지원	정보화	정보화 추진(정보화)
대통령 경호처	일반회계	010	일반·지방행정	016	일반행정	대통령경호처 운영	인건비	인건비
대통령 경호처	일반회계	010	일반·지방행정	016	일반행정	대통령경호처 운영	기본경비	총액인건비 대상기본경비
대통령 경호처	일반회계	010	일반·지방행정	016	일반행정	대통령경호처 운영	기본경비	총액인건비 대상기본경비
국회	일반회계	010	일반·지방행정	011	입법및선거관리	의정활동지원	의정지원	입법활동지원
국회	일반회계	010	일반·지방행정	011	입법및선거관리	의정활동지원	의정지원	입법및특별활동지원
국회	일반회계	010	일반·지방행정	011	입법및선거관리	의정활동지원	의정지원	입법및정책개발
국회	일반회계	010	일반·지방행정	011	입법및선거관리	의정활동지원	의정지원	의원연구단체활동
국회	일반회계	010	일반·지방행정	011	입법및선거관리	의정활동지원	의정지원	국정감사및조사
국회	일반회계	010	일반·지방행정	011	입법및선거관리	의정활동지원	위원회운영지원	위원회활동지원
국회	일반회계	010	일반·지방행정	011	입법및선거관리	의정활동지원	위원회운영지원	국회운영위원회 운영지원
국회	일반회계	010	일반·지방행정	011	입법및선거관리	의정활동지원	위원회운영지원	법제사법위원회 운영지원
국회	일반회계	010	일반·지방행정	011	입법및선거관리	의정활동지원	위원회운영지원	정무위원회 운영지원
국회	일반회계	010	일반·지방행정	011	입법및선거관리	의정활동지원	위원회운영지원	기획재정위원회 운영지원
국회	일반회계	010	일반·지방행정	011	입법및선거관리	의정활동지원	위원회운영지원	외교통일위원회 운영지원
국회	일반회계	010	일반·지방행정	011	입법및선거관리	의정활동지원	위원회운영지원	국방위원회 운영지원
국회	일반회계	010	일반·지방행정	011	입법및선거관리	의정활동지원	위원회운영지원	행정안전위원회 운영지원

자료: 기획재정부(2019). 열린재정 홈페이지에서 일부 내용 발췌.

나. 조세지출

OECD(1996)에 따르면 조세지출은 “조세체계상 일반적인 원칙인 기준조세체계(benchmark tax system)를 벗어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기준조세체계’란 세목별 과세대상, 세율구조, 과세구간, 과세단위, 과세기간, 국제조세규약 등을 의미한다. 다만, 국가별로 조세체계가 상이하고 조세지출의 범위에 대한 국가 간 합의된 기준이나 원칙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각 국가의 상황에 따라 그 범위를 달리 설정할 수 있다. 대부분의 국가는 “조세의 일반적인 조세체계에서 벗어난 조세특례에 의하여 납세자에 대한 재정지원을 목적으로 발생하는 국가 세입의 감소”를 조세지출로 정의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조세지출은 「조세특례제한법」, 「개별법」, 경과조치에 따른 조세지출로 구분된다.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면 조세지출은 “조세감면·비과세·소득공제·세액공제·우대세율 적용 또는 과세이연 등 조세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으로 규정하고 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의2). 또한 「개별법」에 다양한 조세지출을 규정하고 있다(「소득세법」 등).

우리나라의 조세 지출규모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즉, 국세 수입이 증가된 만큼 이와 연관된 조세지출규모도 증가하였다. 2017년 국세감면액 실적은 39.7조원으로 2016년 37.4조원 대비 2.3조원 증가하였으며, 2018년과 2019년은 2017년 대비 각각 2.2조원, 7.7조원 증가한 41.9조원 및 47.4조원으로 전망된다. 2017년 국세감면율 실적은 13.0%로 2016년 13.4% 대비 0.4%p 감소하였으나 2018년 13.5% 및 2019년 13.7%로 각각 증가할 전망이다(<표 2-4> 참고). 감면률 법정한도는 직전 3년 국세감면율 평균 +0.5%p로 규정하고 있다.[1)]

1) 국세감면률 법정한도는「국가재정법」제88조(국세감면의 제한) “국세수입총액과 국세감면액 총액을 합한 금액에서 국세감면액 총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에 규정하고 있다. 현 추세라면 국세감면률 법정한도가 지속해서 증가할 개연성이 적지 않다. 따라서 위 조항은 강행규정으로의 변경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표 2-4〉 국세감면 추이(2017~2019)

(단위: 억원, %)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실적	비중	전망	비중	전망	비중
○ 국세감면액 (A)	396,769	100.0	418,598	100.0	474,125	100.0
조특법상 조세지출	201,873	50.9	210,803	50.4	262,680	55.4
개별세법상 조세지출	184,201	46.4	195,678	46.9	208,134	43.9
경과조치에 따른 조세지출	10,694	2.7	12,117	2.9	3,311	0.7
○ 국세수입총액 (B)	2,653,849		2,681,290[3]		2,993,235	
○ 국세감면율 [A/(A+B)][1]	13.0		13.52		13.7	
○ 국세감면율 법정한도[2]	14.4		14.0		13.8	

(단위: 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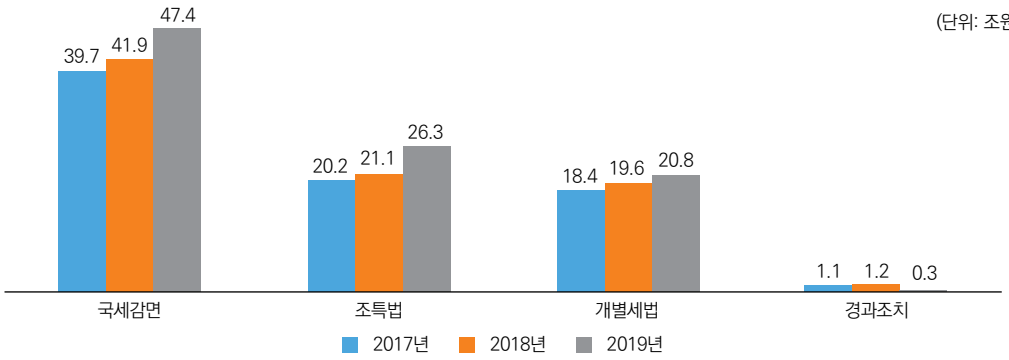

1) 국세감면율 = 국세감면액 총액 / (국세수입 총액 + 국세감면액 총액)

2)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 직전 3년 국세감면율 평균 + 0.5%p

3) 「국가재정법」에 따라 국세 세입예산안 확정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나, 2018년에는 세입예산안 대비 초과세수가 예상되므로 '18년 국세감면율은 전망치 대비 다소 하락 예상

자료: 대한민국정부(2018). 2019년도 조세지출예산서

또한 조세지출 항목수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표 2-5〉 조세지출 항목 수 및 조세지출 규모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항목 수	조세특례제한법	186	190	190	197	200
	개별세법	43	40	39	38	39
	계 (개 수)	229	230	229	235	239
규모	조세지출총액(조원)	35.9	37.4	39.7	41.9	47.4
	국세수입액(조원)	217.9	242.6	265.4	293.6	294.8
	국세감면율(%)	14.1	13.4	13.0	13.5	13.7
	국세감면한도율(%)	14.7	14.7	14.4	14.0	13.8

자료: 대한민국정부(2014, 2015, 2016, 2017, 2018). 2015년~2019년도 조세지출예산서

조세지출은 예산의 기능별 분류기준에 따라 작성·공표하여 재정운영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아울러 항목별로 예산 분류기준(분야-부문)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한정된 국가재원의 효율적 배분에 활용할 수 있다. 조세지출은 지원의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또는 실효성이 미미한 비과세·감면 제도의 정비를 통해 효율적인 조세감면제도 운용이 가능하다.

조세지출규모는 조세지출예산서가 제출되는 직전연도의 실적금액(신고기준), 해당연도 및 다음연도의 전망금액으로 구분한다. 2019년도 조세지출예산서의 경우, 직전연도(2017년) 조세지출의 규모는 국세청 등에서 제출받은 조세감면 신고금액을 집계하여 작성하고 있다. 소득세 비과세·부가가치세 면제 등과 같이 납세자의 신고의무가 없는 조세감면의 경우에는 농협 등 관련 행정기관에서 수집한 기초자료를 토대로 감면금액을 추정하고, 국세청 및 행정기관의 자료 수집 한계 등으로 합리적 추정이 어려운 항목은 '추정곤란'으로 표시한다. 또한, 준비금, 과세이연, 이월과세 등 간접감면의 경우에는 이자상당액을 계산하여 조세지출 금액을 추정한다. 해당연도(2018년) 조세지출의 규모는 해당연도 상반기까지 신고한 조세감면액에 이전 연도의 진도비[2]를 적용하여 추정한다. 다음연도(2019년) 조세지

2) 진도비 = 상반기 감면액 / 연간 감면액 (연도별, 항목별)

출의 규모는 해당연도 조세감면 추정금액에 경제성장률·설비투자증가율 등 경제지표, 세목별 탄성치 등을 반영하여 추정한다.

2. 조세지출의 범위 및 특성, 법적 근거

가. 조세지출의 범위 및 특성

"조세특례제한법상 조세지출"은 원칙적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의 모든 비과세·감면 제도를 포괄한다. 다만, 중과세 제도 또는 납세자의 세부담 경감 목적이 아닌 경우(동업기업 과세특례)와 세입이 감소되지 않는 경우 등은 조세지출의 특성이 아니므로 관리대상에서 제외하고,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는 조세지출예산서 작성대상에서 제외한다.

"개별세법상 조세지출"은 특정성, 대체가능성, 폐지가능성 등 조세지출의 특성과 개별 조항의 입법취지, 연혁, 필요적 경비 여부 등을 감안하여 조세지출 여부를 판단한다. 조세지출과 일반 조세체계 특성을 겸하고 있는 경우 '개별세법상 조세지출'로 구분하여 조세지출예산서에 포함한다(예, 소득세법상 특별세액공제: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또한 "경과조치에 따른 조세지출"은 조세특례 규정 폐지 이후 종전 규정에 따라 한시적으로 발생하는 조세지출로서 조세지출예산서에 포함한다. 조세지출은 특성에 따라 특정성, 대체가능성, 폐지가능성, 기타로 구분하고 있다(OECD, 1996).

〈표 2-6〉 조세지출의 특성

구 분	내 용
특정성	조세지출은 특정 산업 및 경제활동에 혜택을 제공하여야 함
대체가능성	조세지출은 조세제도의 효율적 운영과는 상관없는 특정 정책목표를 위해 사용되어야 하며 이러한 정책목표는 조세가 아닌 다른 정책수단으로도 성취할 수 있는 것으로 쉽게 입증될 수 있어야 함
폐지가능성	특정 조세지출을 없애는 것이 행정적으로 실행 가능하여야 함
기타	조세지출은 규모를 측정하기에 적절한 기준인 기준조세체계가 결정될 수 있도록 해당 세목의 범위가 넓어야 하며, 조세지출 혜택을 크게 상쇄시킬 수 있는 항목이 동일 조세제도 내에 존재하지 않아야 함

자료: OECD(1996). Tax Expenditures: Recent Experience.

2018년도 조세지출예산서부터 조세지출 정비 및 항목별 분류에 관한 논의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관리대상 유형별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즉, 조세지출예산서에 조세지출특성(특정성, 대체가능성, 폐지가능성)에 기초한 관리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이는 조세지출에 대한 대국민 이해도를 높일 수 있고, 조세지출 정비시 기초자료로도 활용이 가능하다.

조세지출은 특성을 고려하여 적극적 관리대상, 잠재적 관리대상, 구조적 지출로 구분하며, 적극적 관리대상은 조세지출의 특성을 모두 갖춘 항목을, 잠재적 관리대상은 일정 수준의 조세지출 특성을 갖춘 항목을, 구조적 지출은 조세지출의 특성이 없어 정비가 곤란한 항목으로 각각 정의할 수 있다. 또한 특성 보유정도에 따라 특정성, 대체가능성, 폐지가능성으로 구분된다.

〈표 2-7〉 조세지출항목 유형별 구분기준

낮음 ← 관리 가능성 → 높음

〈구조적 지출〉			〈잠재적 관리대상〉			〈적극적 관리대상〉		
특정성	대체 가능성	폐지 가능성	특정성	대체 가능성	폐지 가능성	특정성	대체 가능성	폐지 가능성
×	×	×	×	○	×	○	○	○
			○	×				
조세지출의 특성이 없는 항목으로 정비가 사실상 곤란			폐지가능성이 없고, 특정성·대체가능성 중 한 가지가 없어 적극적 관리 곤란			조세지출 특성을 모두 충족하므로 비과세·감면 정비 대상		

자료: 대한민국정부(2018). 2019년도 조세지출예산서.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관리대상 유형별로 구조적 지출, 잠재적 관리대상, 적극적 관리대상으로 그 포괄범위를 확장하여 관리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2-8〉 관리대상 유형별 조세지출현황

(단위: 억원, %)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실적	비중	전망	비중	전망	비중
○국세감면액(A)	396,769	100.0	418,598	100.0	474,125	100.0
구조적지출	79,577	20.1	85,343	20.4	90,166	19.0
잠재적 관리대상(B)	132,047	33.3	137,673	32.9	183,527	38.7
적극적 관리대상(C)	185,145	46.6	195,582	46.7	200,432	42.3
○ 국세수입총액(D)	2,653,849		2,681,290		2,993,235	
○ 국세감면율[A/(A+D)]	13.0		13.5		13.6	
○관리대상(E=B+C)감면율 [E/(E+D)]	10.7		11.1		11.4	
잠재적 관리대상 감면율	4.5		4.6		5.5	
적극적 관리대상 감면율	6.2		6.5		5.9	

자료: 대한민국정부(2018). 2019년도 조세지출예산서.

나. 조세지출의 법적 근거

정부는 1996년 OECD 가입을 계기로 재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재정을 운용하기 위해 1999년부터 2009년까지 직전연도, 해당연도의 국세감면 실적 및 전망 금액을 조세지출보고서로 작성하여 공표하였다. 2010년부터는 「국가재정법」에 근거하여 3개 연도 (직전·해당·다음)의 국세감면 실적·전망 금액을 집계·분석한 조세지출예산서를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하고 있다.

그 법적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의2, 국가재정법 제34조 및 부칙 6조이며, 3개 연도(직전연도, 해당연도, 다음연도) 조세지출 실적·전망을 집계·분석한 조세지출예산서는 국회에 제출함으로써 조세지출의 관리 및 통제가 가능한 구조가 되었다.

〈표 2-9〉 조세지출보고서와 조세지출예산서 차이

	조세지출보고서	조세지출예산서
운용기간	1999~2009년	2010년 이후
의무제출 여부	임의제출	의무제출 (예산안 첨부서류)
분류기준	지원 분야별	기능별 (예산분류기준별)
대상기간	2개 연도 (직전, 해당)	3개 연도 (직전, 해당, 다음)

자료: 대한민국정부(2018). 2019년도 조세지출예산서

조세지출 관련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다. 종전 조세지출예산서 작성에 관한 규정은 국가재정법에 근거하고 있는데, 국가재정법 제27조와 제34조(시행 2008.2.29., 법률 제8852호), 국가재정법 부칙 제6조(시행 2007.1.1., 법률 제8050호)에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었다.

국가재정법 (<종전 법률 제8852호>)

제27조 (조세지출예산서의 작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세감면·비과세·소득공제·세액공제·세액공제·우대세율적용 또는 과세이연 등 조세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당해 회계연도 및 다음 회계연도의 추정금액을 기능별·세목별로 분석한 보고서(이하 "조세지출예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34조 (예산안의 첨부서류) 제33조 규정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0. 조세지출예산서

국가재정법 (<법률 제8050호>)

부칙

제6조 (조세지출예산서의 작성·제출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27조 및 제34조 제10호의 규정에 따른 조세지출예산서의 작성 및 제출은 2011회계연도 예산안부터 적용한다.

조세지출예산서 작성과 관련된 현행 법률은 다음과 같다. 현행 법률의 특징은 조세지출을 기능별 세목별 등으로 세분화하여 관리하기 위함이다.

국가재정법 (<법률 제8852호>) 2018.4.17

제27조 삭제 <2013.1.1.>

제34조 (예산안의 첨부서류) 제33조 규정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0.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의 2에 따른 조세지출예산서

국가재정법 (<법률 제8050호>)

부칙

제6조 (조세지출예산서의 작성·제출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27조 및 제34조 제10호의 규정에 따른 조세지출예산서의 작성 및 제출은 2011회계연도 예산안부터 적용한다.

② 정부는 2009회계연도까지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감면금액·국세감면율 등에 관한 전년도 실적 및 당해연도 전망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제16009호>) 2019.1.1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의 2(조세지출예산서의 작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세감면·비과세·소득공제·세액공제·우대세율적용 또는 과세이연 등 조세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이하 "조세지출"이라 한다)의 직전연도 실적과 해당연도 및 다음 연도의 추정금액을 기능별·세목별로 분석한 보고서(이하 "조세지출예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세지출예산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조세지출예산서의 구체적인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조세지출 관리의 목적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국가에서 조세지출은 주요 재정정책 수단 중 하나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조세지출은 재정지출과 달리 정부의 직접지출이 아닌 세수 손실형태 등의 간접지출이기 때문에 그 규모를 명확히 파악하기란 다소 제약이 있다. 또한 세법상 예외적 조항을 열거하고 있어 복잡한 조세체계로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조세지출의 체계적 관리는 필연적이라 할 수 있다. 조세지출예산은 조세체계관리(예, 조세제도 정비)와 재정관리가 가능해야 한다. 우선, '조세체계관리'는 조세제도의 투명성, 효율성, 형평성 등을 강화할 수 있고, '재정관리'는 국가재정운용상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화할 수 있다(한국조세연구원, 2009).

〈그림 2-1〉 조세지출예산 작성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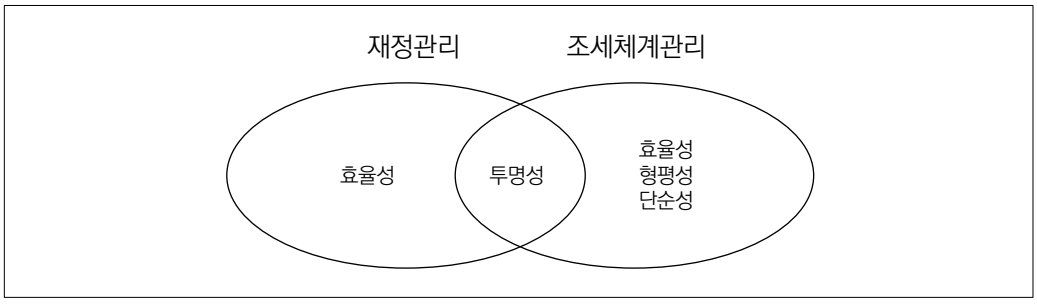

자료: 한국조세연구원(2009). p.5.

'조세체계관리'는 세제상 특혜의 세부 내역을 분석하고, 개별특혜조항을 평가함으로써, 정책결정시 왜곡을 야기하거나, 특정 계층에 지나친 혜택을 주거나, 복잡한 세제 조항 등을 관리하는데 유용하다. 특히, 지원의 목적을 달성하여 그 효과성이나 활용도가 낮다고 판단되는 조세지출은 폐지·정비함으로써 조세체계의 복잡성을 완화할 수 있다. 아울러 납세협력비용 및 과세관청의 행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는 조세지출

을 폐지할 것인지 또는 세율을 인하할 것인지 등 조세정책을 비교·평가할 때 유용한 수단이 된다.

'재정관리'는 세목별(기능별 포함) 조세지출규모를 추정하여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함으로써, 세출예산과 조세지출예산을 연계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되었으며, 법률로 규정되어 주기적인 예산과정상의 평가·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조세지출을 평가·심사의 장으로 끌어올 수 있게 되었다. 특히, 동일 또는 유사한 정책목적을 달성하려는 조세지출과 재정지출 간 비교·평가를 통해 효율적 재정운용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조세지출 규모 및 내역을 세출예산 기능별로 공개함으로써 특정 산업부문 또는 특정 계층에 조세지출의 혜택이 어떻게 배분되고 있는지, 직접지출인 세출예산과 간접지출인 조세지출예산을 포함한 국가의 모든 재정자원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분명히 함으로써 조세체계의 투명성은 물론 재정관리의 투명성도 제고할 수 있다.

3. 재정지출과 조세지출의 연계 논거

가. 재정관리(예산·결산) 측면의 연계

우리나라는 2010년부터 「국가재정법」에 근거하여 조세지출예산서를 예산안 첨부서류로 제출하고 있다. 외형적으로는 재정지출과 조세지출의 연계 심의가 가능한구조이다. 하지만, 재정지출과 조세지출의 연계 심의는 제한적이라 판단된다. 조세지출은 세입단계에서 지출로 인식되어 예산심의 과정에서 검토가 제한된다. 또한 조세지출은 법정지출로 경직성 경비에 해당되기 때문에 보다 엄격한 심의가 요구된다. 즉, 장기간에 걸쳐 운영되는 계속비 성격의 법정지출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심의되는 재정지출에 비해 제한적이다.

재정지출과 조세지출은 기능별 분류를 통해 일정 부분은 관리되고 있다. 그러나 조세지출은 재정지출과 같은 프로그램 예산체계에서는 관리마저 되지 않는다. 따라서 재정지출과 조세지출의 연계 검토는 필수불가결하다고 하겠다. 재정지출과 조세지출의 연계관리는 정부가 특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활용되는 정책수단으로 유용성을 지니고 있다.

연계 심의를 위해 국가재정운용계획, 예산안(재정지출), 조세지출예산의 통합심의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현행 예산안(세출)은 재정사업의 분야-부문-프로그램 항목까지 제시하고 있지만, 조세지출예산 내역은 제시하지 않고 있어 국가재정운용을 정책수단별로 비교할 수 없다. 따라서 국가재정운용계획에는 조세지출내역을 포함하여 국가재정운용계획, 예산안의 재정지출, 조세지출의 연계 심의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연계관리를 위해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예산안(결산서 포함), 조세지출예산의 분야를 일치시키는 것도 필요하다. 아울러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dBrain)에 조세지출 정보를 포함하여 합리적 재정운영의 기반이 되도록 해야 한다.

결산서(국가결산보고서)에 조세지출 내역자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조세지출은 간접 조세지출도 있지만 직접 조세지출(EITC 등)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결산보고서는 최종 재정지출에 국한되는데, 추후 재정지출과 조세지출 내역을 통합 공개하는 것도 고려되어야 한다. 대안으로 “결산개요-일반회계세출-기능별세출”란에 재정지출과 조세지출의 총량을 제시하고, 필수보충정보 또는 부속서류에 제시하는 것이다. 다만, 재정지출결산은 전년 자료(예, 2019년 결산시 2018 회계연도 자료를 활용한 결산)인 반면 조세지출 결산을 가정한다면 전년도 상반기 자료(2019년 조세지출예산서에 2018년 상반기자료만 제공)를 활용할 수밖에 없다. 재정지출과 조세지출의 결산내역을 제공하려면 재정지출결산과 동일한 순기로 조정이 필요하다.

〈표 2-10〉 예산·결산 및 조세지출예산서와 국가재정운용계획 기능별 분류 비교

예산 및 결산의 분야	조세지출예산서의 분야	국가재정운용계획의 분야
1. 일반공공행정	1. 일반공공행정	1. 일반공공행정
2. 공공질서 및 안전	2. 공공질서 및 안전	2. 공공질서 및 안전
3. 외교·통일	3. 외교·통일	3. 외교·통일
4. 국방	4. 국방	4. 국방[1](일반회계총계)
5. 교육	5. 교육	5. 교육
6. 문화 및 관광	6. 문화 및 관광	6. 문화·체육·관광
7. 환경	7. 환경	7. 환경
8. 사회복지	8. 사회복지	8. 보건·복지·고용
9. 보건	9. 보건	
10. 농림수산	10. 농림수산	9. 농림수산
11. 산업·중소기업·에너지	11. 산업·중소기업·에너지	10. 산업·중소기업·에너지
12. 교통 및 물류	12. 교통 및 물류	11. SOC
14. 국토 및 지역개발	14. 국토 및 지역개발	
13. 통신	13. 통신[2]	-
15. 과학기술	15. 과학기술	12. R&D[3](별도통계)
16. 예비비	16. 예비비	-

주: 1) 국방전력 증강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적은 특별회계(군사시설 이전) 예산은 제외.
2) 대부분 우편사업·우체국예금·우체국보험 특별회계 관련 예산.
3) 예산의 '과학기술'분야 외에 여타 분야 중 R&D 관련 사업예산을 중복계상.
자료: 정성호 외(2015). 원자료는 기획재정부 내부자료.

나. 성과관리 측면의 연계

조세지출은 재정지출과 동일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 중 하나이다. 따라서 재정지출과 마찬가지로 조세지출이 정책적 목적에 부합되는지, 그 목적을 달성했는지에 관한 성과평가가 필요하다. 현행 조세지출 성과관리 체계는 예비타당성평가, 자체평가(감면건의서, 평가의견서), 심층평가(의무심층평가, 임의심층평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다.

〈표 2-11〉 조세지출 성과관리체계

	예비타당성평가	자체평가		심층평가	
		감면건의서	평가의견서	의무심층평가	임의심층평가
대상	연평균 300억원 이상 조세지출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는 각 부처의 신규도입 건의 제도	연평균 300억원 이하 조세지출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는 각 부처의 신규 도입건의 제도	일몰기한도래 조세특례사항 및 일몰 없는 제도 중 평가대상으로 선정	연평균 300억원 이상 조세지출이 발생한 일몰도래 특례사항	기획재정부장관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선정한 특례 제도
평가 유형	사전	사전	사후	사후	사후
평가 대상 중복성	감면건의서 자체평가와 중복안됨	예비타당성평가와 중복안됨	심층평가와 중복	평가 의견서와 중복	평가 의견서와 중복
평가 주체	전문연구기관	소관부처수행/ 한국조세재정 연구원 확인점검	소관부처수행/ 한국조세재정 연구원 확인점검	전문 연구기관	전문연구 기관
평가 빈도	건의에 따라 평가하고 재요구 제한 있음	건의에 따라 평가하고 재요구 제한 없음	일몰도래시, 일몰없는 경우 3년에 1회평가	일몰도래시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결과 활용 가능성	평가된 경우 높음/예비타당성 평가를 수행하지 않고 신규도입된 사례다수	낮음 감면건의서 평가를 수행하지 않고 신규도입된 사례다수	낮음	낮음	보통

자료: 김학수(2017). p.18.

문제는 현행 조세지출 성과관리체계가 조세지출예산에 한정된 성과평가구조이다. 즉, 조세지출과 동일한 프로그램이 재정지출로 이루어 질 경우 성과평가가 제한된다는 것이다. 예컨대, 재정지출과 조세지출이 동일한 프로그램(예, 외국인직접투자)으로 추진될 경우 통합관점에서 성과평가가 제한된다. 왜냐하면 다양한 방식(자체, 심층평가 등)으로 조세지출 성과관리를 하고 있지만 조세지출에 국한된 성과관리로 재정지출과 조세지출이 연계된 성과관리는 불가능한 구조이다. 따라서 재정지출과 연계된 조세지출에 대한 성과평가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재정지출과 조세지출을 연계한 성과평가는 재정지출과 조세지출 간 조정을 통해 보다 효율적 재정운영이 가능하다.

Ⅲ. 각국의 조세지출 관리

1. 우리나라의 조세지출 관리

우리나라의 조세지출은 국가재정법에 기초하여 「조세특례제한법」, 「개별법」, 경과조치에 따른 조세지출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다. 조세지출관리를 위해 예산안 첨부서류로 국회에 제출되는 조세지출예산서는 기능별 조세지출(13개 기능), 세목별 조세지출, 감면방법별, 조세특례제한법 분류기준(23개 분류)에 따라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다.

가. 조세지출구분

조세지출은 「조세특례제한법」, 「개별법」, 경과조치에 따른 조세지출로 구분하여 관리되고 있으며, 2010년부터 국가재정법에 기초하여 산출된 조세지출예산서가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하고 있다. 조세지출예산서에서 조세지출 규모는 조세지출예산서가 제출(2019년도 조세지출예산서 기준, 2018년 9월 제출)되는 직전연도(2017년)의 실적금액(신고기준), 해당연도(2018년, 상반기 기준) 및 다음연도(2019년)의 전망 금액으로 구분하여 산출한다.[3] 직전연도와 해당연도 상반기 조세지출 규모는 국세청, 관세청 등(2019년도 조세지출예산서 기준, 19개 행정기관)에서 제출받은 조세감면 신고금액을 집계한다.

조세지출현황은 예산분류(기능별), 세목별, 감면방법별, 조세제한특례제한법 분류별로 구분한다.

첫째, 예산분류에 따른 기능별 조세지출은 16개 분야 중에서 공공질서

3) 대부분 국가에서 세수손실법을 활용하는데, 조세지출 규모 추정 시 다른 요소가 불변이라는 가정 하에 해당 조세지출의 존재로 인한 세입의 감소액을 조세지출 규모로 추정한다.

및 안전, 통신, 예비비를 제외한 13개 분야로 구분된다(일반공공행정, 외교·통일, 국방, 교육, 문화 및 관광, 환경, 사회복지, 보건, 농림수산, 산업·중소기업·에너지, 교통 및 물류, 국토 및 지역개발, 과학기술). 2019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 의하면, 2018년과 2019년 4대 분야(사회복지, 보건, 농림수산, 산업·중소기업·에너지)의 조세지출 비중은 82.3%, 83.7%로 각각 전망된다.

〈표 3-1〉 기능별 조세지출규모(2017~2019)

(단위: 억원, %)

기능별		2017년		2018년		2019년	
		실적	비중	전망	비중	전망	비중
1	일반공공행정	23,519	5.93	25,644	6.13	26,439	5.58
2	공공질서 및 안전	-	-	-	-	-	-
3	외교·통일	9	0.00	10	0.00	10	0.00
4	국방	6,588	1.66	6,194	1.48	6,416	1.35
5	교육	13,269	3.34	14,087	3.37	15,086	3.18
6	문화 및 관광	402	0.10	243	0.06	166	0.03
7	환경	7,662	1.93	9,133	2.18	9,418	1.99
8	사회복지	104,170	26.25	113,847	27.20	158,788	33.49
9	보건	51,519	12.98	55,440	13.24	59,034	12.45
10	농림수산	51,715	13.03	54,147	12.94	56,667	11.95
11	산업·중소기업·에너지	117,264	29.55	121,100	28.93	122,348	25.80
12	교통 및 물류	5,571	1.40	4,772	1.14	5,000	1.05
13	통신	-	-	-	-	-	-
14	국토 및 지역개발	15,042	3.79	13,928	3.33	14,699	3.10
15	과학기술	40	0.01	53	0.01	55	0.01
16	예비비	-	-	-	-	-	-
합 계		396,769	100.00	418,598	100.00	474,125	100.00

주: 공공질서 및 안전, 통신, 예비비는 국세감면 항목 없음
자료: 대한민국정부(2018). 2019년도 조세지출예산서

둘째, 세목별 조세지출은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직접국세 계, 부가가치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간접국세 계, 관세로 구분하여 산출한다. 2019년도 조세지출예산

서에 의하면 2018년과 2019년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의 조세지출 비중은 94.4%, 94.6%로 각각 전망된다.

〈표 3-2〉 세목별 조세지출규모(2017~2019)

(단위: 억원, %)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실적	비중	전망	비중	전망	비중
소득세	216,541	54.58	235,207	56.19	286,600	60.45
법인세	72,918	18.38	73,830	17.64	70,265	14.82
상속·증여세	2,116	0.53	2,309	0.55	2,505	0.53
직접 국세계	291,574	73.49	311,346	74.38	359,370	75.80
부가가치세	83,993	21.17	86,225	20.69	91,482	19.29
교통·에너지·환경세	7,841	1.98	7,673	1.83	8,025	1.69
개별소비세	5,788	1.46	5,616	1.34	6,795	1.43
주세	1,172	0.30	1,162	0.28	1,178	0.25
인지세	42	0.01	69	0.02	73	0.02
증권거래세	1,027	0.26	1,257	0.30	1,354	0.29
교육세	3,242	0.82	3,097	0.74	3,459	0.73
간접 국세계	103,105	25.99	105,100	25.11	112,365	23.70
관 세	2,089	0.53	2,152	0.51	2,391	0.50
합 계	396,769	100	418,598	100	474,125	100

자료: 대한민국정부(2018). 2019년도 조세지출예산서

셋째, 감면방법별 조세지출은 직접감면(비과세, 세액감면(소득·법인세 감면, 양도·증여세 감면), 세액공제, 소득공제, 저율과세, 기타감면(근로·자녀장려세제, 부가가치세 영세율, 부가가치세 면제, 개별소비세·교육세 면제, 주세·증권거래세 면제, 기타(매입세액공제 등), 관세 감면)), 간접감면(준비금, 과세이연 등)으로 구분한다. 2019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 의하면, 2018년과 2019년 직접감면 중 세액감면, 세액공제, 소득공제는 감면 총액의 60.75%, 55.04%로 각각 전망된다.

〈표 3-3〉 감면방법별 조세지출 규모(2017~2019)

(단위: 억원, %)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실적	비중	전망	비중	전망	비중
직접감면	395,692	99.73	417,164	99.66	472,836	99.73
1.비과세	25,717	6.48	26,312	6.29	27,585	5.82
2.세액감면	53,914	13.59	59,644	14.25	66,008	13.92
2-1.소득·법인세 감면	37,692	9.50	40,925	9.78	46,069	9.72
2-2.양도·증여세 감면	16,222	4.09	18,719	4.47	19,940	4.21
3.세액공제	111,674	28.15	116,462	27.82	111,764	23.57
4.소득공제	71,208	17.95	78,189	18.68	83,207	17.55
5.저율과세	5,499	1.39	6,316	1.51	5,817	1.23
6.기타감면	127,681	32.18	30,241	31.11	178,456	37.64
6-1.근로·자녀장려세제	17,679	4.46	18,314	4.38	57,587	12.15
6-2.부가가치세 영세율	26,383	6.65	25,394	6.07	26,582	5.61
6-3.부가가치세 면제	7,514	1.89	7,561	1.81	7,900	1.67
6-4.개별소비세·교육세 면제	16,779	4.23	16,287	3.89	18,196	3.84
6-5.주세·증권거래세 면제	2,333	0.59	2,587	0.62	2,687	0.57
6-6.기타(매입세액공제 등)	54,904	13.84	57,946	13.84	63,113	13.31
6-7.관세 감면	2,089	0.53	2,152	0.51	2,391	0.50
간접감면(준비금, 과세이연 등)	1,076	0.27	1,434	0.34	1,289	0.27
합 계	396,769	100.00	18,598	100.00	474,125	00.00

자료: 대한민국정부(2018). 2019년도 조세지출예산서

넷째, 「조세특례제한법」 분류별 조세지출은 중소기업, 연구개발, 국제자본거래, 투자촉진, 고용지원, 기업구조조정, 금융기관구조조정, 지역균형발전, 공익사업지원, 저축지원, 국민생활안정, 근로·자녀장려(EITC 등), 기타직접국세, 간접국세, 외국인투자, 제주국제도시육성, 기업도시, 지역발전, 농협구조개편, 공적자금 회수, 수협구조개편, 사업재편 계획, 기타로 구분된다. 2019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 의하면, 2018년과 2019년 중소기업,

연구개발, 국민생활안정, 근로·자녀장려, 간접국세는 감면 총액의 73.04%, 76.70%로 각각 전망된다.

〈표 3-4〉 조세특례제한법상 분류기준에 따른 조세지출규모(2017~2019)

(단위: 억원, %)

분 야		2017년		2018년		2019년	
		실적	비중	전망	비중	전망	비중
1	중소기업	24,176	6.09	26,557	6.34	31,050	6.55
2	연구개발	29,514	7.44	29,095	6.95	28,360	5.98
3	국제자본거래	24	0.01	4	0.00	4	0.00
4	투자촉진	16,496	4.16	17,558	4.19	10,002	2.11
5	고용지원	1,742	0.44	3,315	0.79	4,202	0.89
6	기업구조조정	921	0.23	1,439	0.34	1,581	0.33
7	금융기관구조조정	-	-	-	-	-	-
8	지역균형발전	25,225	6.36	26,199	6.26	27,810	5.87
9	공익사업지원	5,006	1.26	6,063	1.45	6,152	1.30
10	저축지원	14,319	3.61	14,420	3.44	14,696	3.10
11	국민생활안정	125,727	31.69	134,631	2.16	142,585	30.07
12	근로·자녀장려	17,679	4.46	18,314	4.38	57,587	2.15
13	기타직접국세	14,080	3.55	15,055	3.60	15,241	3.21
14	간접국세	94,455	23.81	97,158	23.21	104,071	1.95
15	외국인투자	2,121	0.53	1,973	0.47	2,064	0.44
16	제주국제도시육성	2,316	0.58	2,149	0.51	2,255	0.48
17	기업도시	75	0.02	54	0.01	56	0.01
18	지역발전	0	0.00	-	-	-	-
19	농협구조개편	480	0.12	515	0.12	538	0.11
20	공적자금 회수	-	-	-	-	-	-
21	수협구조개편	44	0.01	-	-	-	-
22	사업재편 계획	-	-	-	-	-	-
23	기타	22,369	5.64	24,100	5.76	25,871	5.46
합 계		396,769	100	418,598	100	474,125	100

자료: 대한민국정부(2018). 2019년도 조세지출예산서

조세지출예산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019년도 기준 조세지출예산서는 5개의 장으로 구성된다. 제1장에서는 조세지출예산제도의 의의, 정의, 범위, 유형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제2장 연도별 조세지출(Tax expenditures) 개요

에서는 연도별 조세지출 현황, 전년도(2017년) 조세지출 실적과 당해연도(2018년) 및 다음연도(2019년) 조세지출 전망에 관해 설명하고 있으며, 제3장은 연도별 조세지출을 예산분류별, 세목별, 감면방법별, 「조세특례제한법」 분류별, 조세지출 수혜자별 귀착 등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제4장은 당해연도(2018년)의 조세지출정비현황(신규, 폐지, 재분류)과 다음연도 조세지출예산서 항목조정에 관해 설명하고 있으며, 제5장은 조세지출항목별 내역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나. 조세지출 작성 대상기관 (19개 기관)

2019년도 조세지출예산서 기준, 조세지출관리 대상기관은 총 19개 행정기관이며, 세부 항목(세목별)은 총 479개로 구성되어 있다. 항목별로는 국세청 407개(규모면에서 약 95% 차지), 관세청 22개, 해양수산부 11개, 농협중앙회 10개, 산림청 5개, 수협중앙회 5개, 환경부 2개,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 2개, 행정안전부 1개, 농림축산식품부 1개, 산림조합중앙회 1개, 새마을금고 1개, 신협중앙회 1개, 중소벤처기업부 1개, 산업통상자원부 2개, KT&G 1개, 통계청 1개, 국민건강보험공단 1개, 근로복지공단 1개로 구성된다(<부록 2> 참고).

다. 조세지출예산서 작성

기획재정부는 매년 조세지출예산서를 작성하기 위해 국세청 등 19개 기관이 제출한 기초자료(raw data)를 활용한다. 기획재정부가 통계작성을 위해 개별 행정기관으로부터 조세지출 기초자료를 제공받으려면 우선 자료요청을 해야 한다. 기초자료를 요청한 이후 그 자료가 도착하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하다. 조세지출의 내역(기초)자료가 도착하면 자료상 오류는 없는지 꼼꼼히 체크하는 과정은 필수적이다. 왜냐하면 개별 행

정기관에서 제출한 조세지출자료의 수치상 오류[4]가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조세지출예산서 작성은 수작업으로 약 3개월 가량 소요된다. 따라서 기초자료 획득과정의 간소화는 물론 오류를 줄여야 한다. 이른바 템플렛(제4장에서 상세히 설명)을 활용하여 dBrain에 조세지출 내역자료를 온라인방식으로 탑재할 것을 제안한다. 다만 템플렛에 자기점검 기능을 추가하여 자료 작성자가 입력간 오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국세청(407건/497건) 등 다수의 내역자료를 탑재하는 기관의 경우는 템플렛을 활용하게 하고, 조세지출 자료가 1~2건인 기관의 경우에는 dBrain에 조세지출 자료를 직접 입력하게 하면 된다. 그 방식은 일정기간동안 dBrain을 개방하여 자료를 입력토록 하는 것이다.

2. 주요 국가의 조세지출 관리

가. 영국

영국은 우리나라의 「조세특례제한법」과 같이 조세특례 항목을 별도로 관리 및 규정하는 근거 법률은 없고, 개별세법에서 조세감면조항을 규정하고 있다. 영국 조세지출예산의 시작은 1979년 "예산백서 1979~1980"에 조세지출항목 열거한 때부터라고 본다. 즉, 1978년 6월 이후, 예산백서는 공공지출과 관련된 세제에 대한 적절한 정보를 포괄해야 한다는 하원 세출위원회의 권고를 따른 것이다. 영국은 조세지출예산서를 발간하지 않으며, 예산안과 세목별 조세지출규모만 요약표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조세감면항목의 목록은 작성하지만 추정이 가능한 경우에만 그 규모를 항목별로 제시하고 있으며, 특정 예산기능과 비용을 배분하지 않기 때문에 직

4) 오류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개별 행정기관에서 제출된 조세지출 세부내역의 총합오류와 내역을 누락하여 보고하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기획재정부 조세지출담당공무원 인터뷰).

접지출과 연계시키지 않고 있다. 영국은 국세청에서 매년 조세지출 관련 보고서(“Estimated costs of tax reliefs”와 “Tax expenditure and ready reckoners”)를 발행한다. 조세특례 관련 항목은 주요 조세지출 및 구조적 특례(main tax expenditures and structural reliefs, 5,000만달러 또는 그 이상), 소규모 조세특례(minor tax expenditures and structural reliefs, 5,000만달러 이하), 추정곤란 조세특례(tax allowances and reliefs in force- cost not known) 등으로 구분하여 집계하고 있다(HM Revenue & customs).

〈그림 3-1〉 Estimated costs of principal tax reliefs_영국

£m

Tax Expenditures	2013-14	2014-15	2015-16	2016-17	2017-18	2018-19	Table Note	No of claimants[note]	Year[note]
Income tax									
Relief for:									
Registered pension schemes	19,790	18,300	21,500	23,500	24,300	25,600	3	-	
Individual Savings Accounts	2,550	2,350	2,600	2,700	2,900	3,150	4	22,148,000	2015-16
Share Incentive Plan	300	220	270	240	240	240	5.6	-	
Save As You Earn	180	190	210	100	100	100	4,5	140,000	2016-17
Enterprise Management Incentives	70	70	110	190	190	190	6	7,000	2016-17
Approved Company Share Option Plans	70	70	50	30	30	30	6	10,000	2016-17
Venture Capital Trusts	130	130	136	170	226	178	7	13,000	2016-16
Enterprise Investment Scheme	450	540	545	590	550	600	7	35,000	2015-16
Seed Enterprise Investment Scheme	85	85	85	95	105	105	7	9,600	2015-16
Professional subscriptions	120	130	135	140	140	145	8	1,300,000	2016-17
Employer Supported Childcare including workplace nurseries	440	460	480	490	520	430	9	620,000	2018-19
Seafarers' Earnings Deduction	280	280	250	240	230	230		20,000	2017-18
Rent a room	110	90	110	130	140	150		150,000	2016-17
Wear and tear allowance	195	220	220	0	0	0	10	800,000	2015-16
Exemption of:									
First £30,000 of payments on termination of employment	900	700	1,000	1,200	1,200	900		300,000	2018-19
Interest on National Savings Certificates including index-linked certificates	250	250	250	250	250	250	11	-	
Premium Bond prizes	130	130	130	130	130	130	11	-	
Income of charities	1,570	1,700	1,930	1,880	1,870	1,960	12	-	
Foreign service allowance paid to Crown servants abroad	60	50	45	50	60	55		-	
Dividends from Venture Capital Trusts	60	60	55	30	35	60	13	-	
Corporation tax									
R&D tax relief: SME scheme	705	1,320	1,735	1,835	1,915	1,840	14,15	34,000	2016-17
R&D tax relief: Large company & RDEC schemes	900	1,625	1,925	1,610	1,680	1,735	14,15	1,900	2016-17
Film Tax Relief	265	305	425	510	530	545	16	600	2016-17
High-end TV Relief	60	120	170	155	160	165	16,17	150	2016-17
Video Games Relief	-	70	85	65	65	70	16,17	260	2016-17
Theatre Tax Relief	-	15	55	55	55	60		570	2016-17
Patent Box	365	650	755	1,085	1,085	1,085	18	1,200	2015-16

자료: HM Revenue & customs(2018). Estimated costs of principal tax reliefs

〈그림 3-2〉 Estimated cost of minor tax reliefs_영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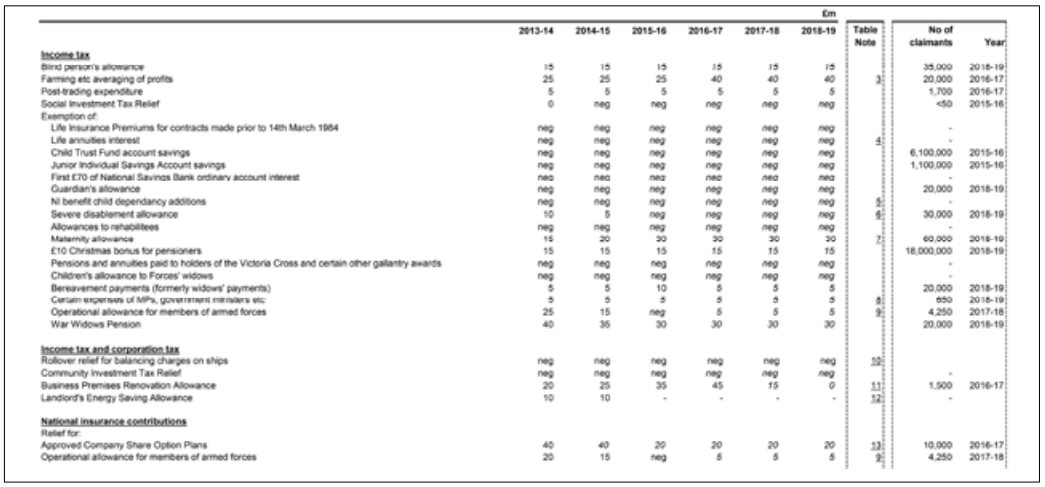

£m

	2013-14	2014-15	2015-16	2016-17	2017-18	2018-19	Table Note	No of claimants	Year
Income tax									
Blind person's allowance	15	15	15	15	15	15		35,000	2018-19
Farming etc averaging of profits	25	25	25	40	40	40	3	20,000	2016-17
Post-trading expenditure	5	5	5	5	5	5		1,700	2016-17
Social Investment Tax Relief	0	neg	neg	neg	neg	neg		<50	2015-16
Exemption of:									
Life Insurance Premiums for contracts made prior to 14th March 1984	neg	neg	neg	neg	neg	neg		-	
Life annuities interest	neg	neg	neg	neg	neg	neg	4	-	
Child Trust Fund account savings	neg	neg	neg	neg	neg	neg		6,100,000	2015-16
Junior Individual Savings Account savings	neg	neg	neg	neg	neg	neg		1,100,000	2015-16
First £70 of National Savings Bank ordinary account interest	nea	nea	nea	nea	nea	nea		-	
Guardian's allowance	neg	neg	neg	neg	neg	neg		20,000	2018-19
NI benefit child dependancy additions	neg	neg	neg	neg	neg	neg	5	-	
Severe disablement allowance	10	5	neg	neg	neg	neg	6	30,000	2018-19
Allowances to rehabilitees	neg	neg	neg	neg	neg	neg		-	
Maternity allowance	15	20	30	30	30	30	7	60,000	2018-19
£10 Christmas bonus for pensioners	15	15	15	15	15	15		18,000,000	2018-19
Pensions and annuities paid to holders of the Victoria Cross and certain other gallantry awards	neg	neg	neg	neg	neg	neg		-	
Children's allowance to Forces' widows	neg	neg	neg	neg	neg	neg		-	
Bereavement payments (formerly widows' payments)	5	5	10	5	5	5		20,000	2018-19
Certain expenses of MPs, government ministers etc	5	5	5	5	5	5	8	650	2018-19
Operational allowance for members of armed forces	25	15	neg	5	5	5	9	4,250	2017-18
War Widows Pension	40	35	30	30	30	30		20,000	2018-19
Income tax and corporation tax									
Rollover relief for balancing charges on ships	neg	neg	neg	neg	neg	neg	10		
Community Investment Tax Relief	neg	neg	neg	neg	neg	neg		-	
Business Premises Renovation Allowance	20	25	35	45	15	0	11	1,500	2016-17
Landlord's Energy Saving Allowance	10	10	-	-	-	-	12	-	
National insurance contributions									
Relief for:									
Approved Company Share Option Plans	40	40	20	20	20	20	13	10,000	2016-17
Operational allowance for members of armed forces	20	15	neg	5	5	5	9	4,250	2017-18

자료: HM Revenue & customs(2018). Estimated costs of minor tax reliefs

〈그림 3-3〉 Tax reliefs in force in 2017-18 or 2018-19: Estimates of cost unavailable_영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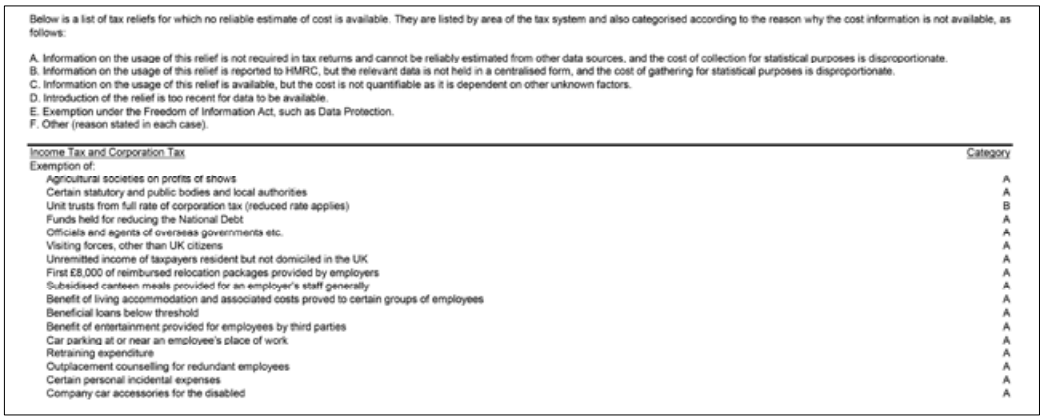

Below is a list of tax reliefs for which no reliable estimate of cost is available. They are listed by area of the tax system and also categorised according to the reason why the cost information is not available, as follows:

A. Information on the usage of this relief is not required in tax returns and cannot be reliably estimated from other data sources, and the cost of collection for statistical purposes is disproportionate.
B. Information on the usage of this relief is reported to HMRC, but the relevant data is not held in a centralised form, and the cost of gathering for statistical purposes is disproportionate.
C. Information on the usage of this relief is available, but the cost is not quantifiable as it is dependent on other unknown factors.
D. Introduction of the relief is too recent for data to be available.
E. Exemption under the Freedom of Information Act, such as Data Protection.
F. Other (reason stated in each case).

Income Tax and Corporation Tax	Category
Exemption of:	
Agricultural societies on profits of shows	A
Certain statutory and public bodies and local authorities	A
Unit trusts from full rate of corporation tax (reduced rate applies)	B
Funds held for reducing the National Debt	A
Officials and agents of overseas governments etc.	A
Visiting forces, other than UK citizens	A
Unremitted income of taxpayers resident but not domiciled in the UK	A
First £8,000 of reimbursed relocation packages provided by employers	A
Subsidised canteen meals provided for an employer's staff generally	A
Benefit of living accommodation and associated costs proved to certain groups of employees	A
Beneficial loans below threshold	A
Benefit of entertainment provided for employees by third parties	A
Car parking at or near an employee's place of work	A
Retraining expenditure	A
Outplacement counselling for redundant employees	A
Certain personal incidental expenses	A
Company car accessories for the disabled	A

자료: HM Revenue & customs(2018). Estimates of cost unavailable

‘추정곤란’ 항목은 이용 가능한 정보의 한계 등으로 인하여 감면 비용을 신뢰성 있게 산정할 수 없는 경우의 조세감면을 여섯 가지로 분류한다. 첫째, 세금신고서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Information on the usage of this relief is not required in tax returns and cannot be reliably estimated from other data sources, and the cost of collection for statistical purposes is disproportionate), 둘째, 세금신고서에는 포함되나, 통합하여 관리되지 않는 항목(Information on the usage of this relief is reported to HMRC, but the relevant data is not held in a centralised form, and the cost of gathering for statistical purposes is disproportionate), 셋째, 다른 요인에 의해 비용을 파악할 수 없는 항목(Information on the usage of this relief is available, but the cost is not quantifiable as it is dependent on other unknown factors), 넷째, 최근 도입된 감면항목(Introduction of the relief is too recent for data to be available), 다섯째, 관련 법에 따라 정보가 제한된 항목(Exemption under the Freedom of Information Act, such as Data Protection), 여섯째, 기타 항목(reason stated in each case)으로 구분한다(<그림 3-3> 참고).

주요 조세감면 항목은 ‘조세지출’(tax expenditure), ‘구조적 특례’(structural reliefs), ‘조세지출과 구조적 특례가 결합된 조세특례’(reliefs with tax expenditures and structural reliefs)로 구분된다. ‘조세지출’은 사회적 목적을 위해 특정 개인의 활동이나 제품을 지원 또는 촉진하는 것으로 공공지출과 유사한 효과를 지니는 것으로 정의하고, ‘구조적 특례’는 조세구조의 통합된 일부로서 소득을 얻기 위해 부담한 비용 또는 조세행정의 단순화와 납세순응을 위한 것으로 정의하며(예, 조세 구조상 필수불가결한 항목으로 소득세법상 개인 공제항목이나 사회보험료 공제 등), ‘조세지출과 구조적 특례를 모두 가진 조세특례’는 위 두 특례를 제외하고 조세지출과 구조화된 세액경감을 명확히 구분할 수 없는 항목으로 정의한다.

세부 조세지출 항목은 소득세, 법인세, 사회보장세, 양도소득세, 상속증여, 부가가치세, 소비세, 기후변화부담금, 인지세, 교통세(air passenger duty, vehicle excise duty), 탄소가격하한제로 구성되며 조세지출 규모와 세목별 비중을 제시하고 있다. 주요 분야별 조세지출 항목은 연구개발(R&D tax credits, Patent Box), 투자지원(Capital allowances, Of which: Annual Investment Allowance, Enterprise Investment Scheme), 고용지원(Employment Allowance), 지역발전(Community Investment Tax Relief, The Enterprise Zone Incentives)로 구분되며 실적치를 제공하고 있다(HM Revenue & customs, 2018). 특히, 'Estimated costs of tax reliefs'에서 각 유형에 속하는 개별 항목들에 대한 감면액 정보를 제시함은 물론 그 외 감면제도에 대하여 분석을 수행한 연구결과, 발간물 등의 리스트와 웹사이트 주소를 제시하고 있다.

조세지출보고서는 단지 조세지원의 규모를 공개함으로써 공공지출의 맥락에서 어떠한 조세 지원이 적절하게 검토되어야 하는가에 관한 의견을 형성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고 있다. 조세지출 규모추정은 「세수손실법(revenue forgone method)」[5]에 근거하며, 조세지출과 관련된 세법이 신설되는 경우에는 예산책임청(OBR, Office of Budget Responsibility)[6]과 KAI(Knowledge, Analysis and Intelligence)[7]에 의해 세수를 예측하고, 신규 법안이 미치는 경제적 영향을 예측한다. 영국은 명시적으로 조세지출에 대한 사전 및 사후평가 제도는 존재하지 않지만, OBR과 KAI의 예측

5) 조세지출규모 추정 시 다른 요소는 불변이라는 가정하에 해당 조세지출로 인한 세입의 감소액을 조세지출 규모로 추정하는 방법으로 대부분 국가가 활용하는 기법이다.
6) OBR은 2010년도에 신설되어 예산을 예측하는 부서(독립적인 기관, 정부기관 아님)이며, 경제예측, 주택가격 예측, 인플레이션 예측 등 거의 모든 분야의 예측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모든 세목과 재정지출에 대하여 세부 예측과 전망을 실시하고 매년 2차례(3월 춘계, 11월 본예산)에 걸쳐 그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국세청 또한 예측업무를 수행하는데, OBR이 만든 자료를 기반으로 조세납부를 예측한다.
7) KAI는 국세청(HMRC)의 주요 부서로, 주로 각종 계량모형을 이용하여 조세행정 및 납세순응 활동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재무부(HMT) 및 예산책임청(OBR)과 공유하고 있다.

은 사전평가의 성격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영국은 모든 법안(조세 및 재정지출)에 대한 예측, 평가 및 감시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 조세지출 평가 및 폐지(일몰) 여부도 이러한 체계 내에서 진행된다.[8)]

나. 프랑스

프랑스는 우리나라의 「조세특례제한법」과 같이 조세지출 항목만을 따로 규정하고 관리하는 법률은 없고, 개별세법에 조세지출 항목을 규정하고 있다. 프랑스는 「재정법(Loi de finances)」과 「사회보장재원조달법(Loi du financement de sécurité sociale)」에 근거하여 매년 조세지출예산서를 작성한다. 2001년 제정된 「재정법에 관한 조직법(Loi organique relative aux lois de finances, LOLF)」 제51조에 근거하여 작성되는 조세지출예산서는 예산안의 부속서류로서 성과보고서 작성시 기능별 분류와 조세지출 항목을 연계하고 있다.

프랑스는 납세자에게 표준화된 조세원칙을 적용하였을 때보다 국가의 수입 손실이 수반되는 입법 또는 규제 조항은 조세지출로 인식한다. 그렇다고 해서 국가의 수입 손실과 관련된 모든 조치를 조세지출로 인식하는 것은 아니다. 조세지출은 절대 불변이 아니기 때문에 조세지출의 범위는 언제든지 조정될 수 있다. 세목별 조세지출은 소득세, 법인세, 자산에 대한 연대세[9)], 무상양도에 대한 세금, 부가가치세로 구분된다(프랑스, 2018 조세지출예산서, p.1~11).

세목별 조세지출의 특징에 관해 간략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소득세

8) 예측은 OBR과 KAI가 수행하고, 2010년 독립기구로 설치된 조세간소화실(office of tax simplication: OTS)은 신규 조세특례제도 평가, 조세영향분석(tax impact assessment: TIA)과 조세정보 및 영향분석서(tax information & impact note)를 작성하여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특히, 조세정보 및 영향분석서의 내용중 핵심내용은 국민에게 알림은 물론 예산안과 함께 재정법안(finance bill)에 포함하여 국회에 제출한다.

9) 자산에 대한 연대세는 프랑스에서 거주하는 자연인의 프랑스 또는 프랑스 이외 지역에 위치한 재산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을 의미한다.

의 경우, 재산과 자본, 급여 등으로부터 얻은 이익과 관련하여 결정되지만 재분배적 특성과 관련된 할인,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한 조항 등은 조세지출로 간주하지 않는다. 법인세의 경우, 특정 공공정책 목적상(목표 또는 의도) 세제를 적용하지 않고 세율을 적용하여 조정한다. 예컨대, 소기업의 회전율 한도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일반기업에 적용되는 33.3%보다 낮은 15%의 세율을 적용한다. 자산에 대한 연대세의 경우, 원칙적으로 전년 소득의 75%까지는 해당 자산으로 인해 취할수 있는 기본소득으로 판단하여 세제 혜택이 제공되고, 거주 부동산의 순가치 중 30%에 대해 세제혜택을 제공한다. 그 외의 경우는 모두 조세지출로 간주한다. 무상양도에 대한 세금의 경우, 공공정책목표를 충족시키는 세제혜택은 조세지출로 분류한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부가가치세의 공통원칙에 관한 위원회지침(2006/112/EC, 2006년 11월 28일)을 적용하는데 기본 과세구조는 표준세율 20%이지만, 특정 카테고리는 10%, 5.5%, 2.1% 저율과세이다.

한편 특정부문을 지원하기 위해 부가세에 대한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경우 조세지출로 분류하지만, 다음 23가지 경우에 해당될 때는 조세지출로 분류되지 않는다.

〈표 3-5〉 부가가치세 감면 중 조세지출로 분류되지 않는 항목_프랑스

1	생활 영위를 위한 알콜류를 제외한 식음료에 대한 5.5%의 부가세율 적용
2	연극 및 서커스 등 공연에 대한 5.5%의 부가세율 적용
3	가공을 거치지 않은 농수산물에 대한 10%의 부가세율 적용
4	난방용 목재에 대한 10%의 부가세율 적용
5	CGI 281 octies (부가세율 2.1%)가 적용되지 않는 의약품에 대한 10%의 부가세율 적용
6	정부와 합의된 공공주택의 판매에 대한 5.5%의 부가세율 적용
7	특정 조건 하 공공주택의 판매에 대한 5.5%의 부가세율 적용
8	예술 작품 및 골동품에 대한 10%의 부가세율 적용
9	지방정부가 수도 및 소독업체 등에 제공한 수당 및 환급금에 대한 10%의 부가세율 적용
10	하수도 이용료에 대한 10%의 부가세율 적용
11	박람회 등 유사한 행사에 대한 10%의 부가세율 적용
12	동·식물원, 박물관, 기념관 등의 입장료에 대한 10%의 부가세율 적용
13	여객 운송에 대한 10%의 부가세율 적용
14	영화관 입장료에 대한 5.5%의 부가세율 적용
15	TV 수신료에 대한 10%의 부가세율 적용
16	애니메이션 공원 방문 비용에 대한 10%의 부가세율 적용
17	livres 책, 영화 등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법에서 정한 저작권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10%의 부가세율 적용
18	쓰레기 수거 및 처리에 대한 10%의 부가세율 적용
19	지방정부가 지역 TV방송국에 지원한 금액에 대한 10%의 부가세율 적용
20	지방정부가 지방 도로관리 비용으로 지급한 금액에 대한 10%의 부가세율 적용
21	해외 프랑스령 지방정부가 공공주택 개량 작업을 위해 지불한 비용에 대한 2.1%의 부가세율
22	해외 프랑스령에 위치한 공공주택의 양도로 얻는 이익에 대한 2.1%의 부가세율 적용
23	서적에 대한 5.5%의 부가세율 적용

자료: 프랑스(2018). 2018 조세지출예산서, p.10~11.

프랑스 조세지출예산서는 크게 여섯 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은 조세지출의 개념을 제시하고 있고, 국세뿐만 아니라 지방세 조세지출을 포괄하고 있으며, 세목별 조세지출 분류기준(세목별로 조세지출 항목으로 보지 않는 제도 포함)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제2장은 예산분류기준

별 및 세목별 조세지출 총규모를 비롯한 조세지출 규모 증감 이유 등 주요 현황을 제시하고 있다. 제3장은 전년도 조세지출 신규 도입 및 폐지항목 등의 주요 변경사항을 제시하고, 제4장은 당해연도 예산안에서 제안된 신규 도입/폐지 및 조세지출 규모 증가/감소 항목들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제5장은 개별 조세지출 항목들에 대하여 항목별 조세지출 규모, 수혜자 수 등 보다 세부적인 정보를 제시하고, 제6장은 부록으로서 조세지출 항목별 법조문, 수혜자 유형별 조세지출 항목, 재정지출 목적 및 프로그램별 조세지출 항목 분류 등을 제시한다. 특히, 재정지출 목적의 분류는 정책목적이 유사한 재정지출 프로그램을 조세지출 항목과 연결하여 세입 및 세출을 관리하기 위함이다(프랑스, 2018 조세지출예산서).

프랑스는 재정법 개정안에 재정지출과 조세지출을 아우르는 공공정책에 대한 성과관리를 지향하고 있다. 예산안에 전년도 성과보고서와 차기년도 성과계획서를 발표하고 있다. 성과계획서는 기능별 분류를 기준으로 성과목표와 성과지표, 연계 조세지출에 관한 내용, 하위 프로그램 및 사업별 지출액 분석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성과보고서는 기능별 분류를 기준으로 해당 성과보고서에 대한 총평 및 성과지표를 기준으로 목표달성, 조세지출규모와 연계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성과보고서는 조세지출과 연계된 항목의 전년도 최종 규모와 해당년도의 추정치 및 실제 지출 규모, 이 세 가지를 제시하여 조세지출의 성과를 즉각적으로 비교분석 할 수 있다.

프랑스의 재정지출 단계는 3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가장 상위단계인 기능별분류는 예산의 편성단위이다. 두 번째 단계는 프로그램으로 다수의 프로그램이 하나의 기능별 분류를 구성하고 있으며, 성과관리 단위이다. 가장 하위단위는 활동으로 우리나라의 세부사업에 해당한다.

〈그림 3-4〉 재정지출 구조_프랑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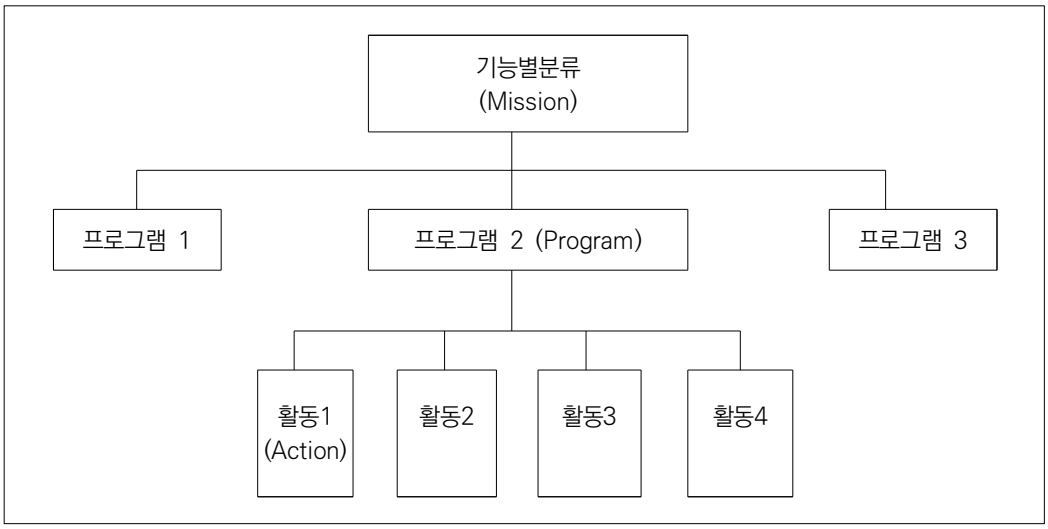

자료: 프랑스 성과평가 포럼 (https://www.performance-publique.budget.gouv.fr)

프랑스는 조세지출 평가를 위한 전담기관은 운용하지 않는다. 매년 부처 중심으로 조세지출을 평가하고, 재정경제부 내 일부 공무원이 조세지출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데, 주로 각 조세지출 시행에 따른 비용 산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따라서 프랑스는 사후평가제도를 활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조세지출 폐지(일몰법) 규정을 의무적으로 지키도록 법에 규정하였지만 중요한 조세지출의 경우에는 사실상 폐지할 수 없고(예, 국가경쟁력향상을 위한 연구·개발 관련), 일몰규제 시한이 1년 정도 남은 경우, 국회의원이 동일한 조세지출을 발의하고 연장시키는 경우가 많아 실제로 일몰규정은 실효성을 잃게 되었다.

다. 호주

호주는 우리나라의 「조세특례제한법」과 같이 조세지출 항목만을 따로 통합·규정하는 법률은 없고, 개별세법에서 조세지출항목을 규정하고

있다. 조세지출은 예산공정헌장(Charter of Budget Honesty act 1998)[10]에 제시하고 있는 것과 같이 예산서(Budget economic and fiscal outlook report)와 반기보고서(Mid-year economic and fiscal outlook) 작성 시 조세지출 관련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예산서는 4권으로 구성(Budget paper No. 1- No. 4)[11]되어 있는데 재정전략 및 전망(Budget strategy and outlook 2017-18)을 담은 1권의 세입(statement 11로 구성) statement 5: revenue 부록(Appendix A)[12]에 조세지출에 관한 내용을 포함해야 하고, 해당 회계연도 및 향후 3년간의 조세지출 규모 추정 내용을 포함한다. 재무부가 매년 1월 말 또는 회계연도[13] 시작 후 6개월 이내(둘 중 늦은 기한) 작성 후 공개하는 반기보고서(Part 3 재정전략 및 전망(fiscal strategy and outlook))에 조세지출 내역(Attachment B: tax expenditure)[14]이 포함되어 있다.

---

10) 예산공정헌장은 정부의 재정정책 수행의 기본 체계를 제공하고 재정정책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조세지출관련규정은 다음과 같다(Charter of Budget Honesty Act, 1998)
Part 5-Annual Government reporting
Division 1-Budget economic and fiscal outlook report
12 Contents of budget economic and fiscal outlook report
(1) A budget economic and fiscal outlook report is to contain the following information:
(d) an overview of the estimated tax expenditures for the budget year and the following 3 financial years;
Division 2-Mid-year economic and fiscal outlook report
16 Contents of mid-year economic and fiscal outlook report
(1) A mid-year economic and fiscal outlook report is to:
(b) contain a detailed statement of tax expenditures, presenting disaggregated information on tax expenditures;

11) No.1- Budget Strategy and Outlook; No.2- Budget Measures; No.3- Federal Financial Relations; No.4- Agency Resourcing.

12) http://www.budget.gov.au/2017-18/content/bp1/html/

13) 호주의 회계연도는 7월부터 다음 해 6월 말까지다.

14) http://www.budget.gov.au/2017-18/content/myefo/html/

〈그림 3-5〉 Large measured tax expenditure for 2017-2018 to 2020-21_호주

Tax expenditure		Estimate $m			
		2017-18	2018-19	2019-20	2020-21
Large positive tax expenditures					
E6	Capital gains tax main residence exemption — discount component	34,500	34,500	36,000	36,000
E5	Capital gains tax main residence exemption	28,500	29,000	30,000	30,000
C4	Concessional taxation of superannuation entity earnings	17,700	20,650	24,050	26,500
C2	Concessional taxation of employer superannuation contributions	16,200	17,800	18,800	20,000
E13	Capital gains tax discount for individuals and trusts	11,080	11,310	12,090	13,060
H28	GST — Food	7,200	7,500	7,800	8,100
H16	GST — Education	4,850	5,250	5,700	6,200
H19	GST — Health — medical and health services	4,300	4,600	4,900	5,250
H2	GST — Financial supplies — input taxed treatment	3,700	3,900	4,200	4,450
A24	Concessional taxation of non-superannuation termination benefits	2,500	2,400	2,300	2,150
B12	Exemption from interest withholding tax on certain securities	2,310	2,310	2,310	2,310
A40	Exemption of Family Tax Benefit payments	2,100	2,110	2,070	2,090
A19	Medicare levy exemption for residents with taxable income below the low-income thresholds	2,090	2,160	2,230	2,300
B2	Local government bodies income tax exemption	2,130	2,410	2,730	3,080
A17	Exemption of the Private Health Insurance Rebate	1,580	1,650	1,750	1,770
A27	Exemption of Child Care Assistance payments	1,745	2,420	2,460	2,485
D14	Exemption for public benevolent institutions (excluding hospitals)	1,600	1,700	1,800	1,900
D10	Exemption for public and not-for-profit hospitals and public ambulance services	1,550	1,650	1,750	1,850
H5	GST — Child care services	1,560	1,840	2,030	2,240
A54	Philanthropy — deduction for gifts to deductible gift recipients	1,350	1,410	1,460	1,510
F7	Concessional rate of excise levied on aviation gasoline and aviation turbine fuel	1,330	1,400	1,510	1,560
B73	Capital works expenditure deduction	1,240	1,320	1,410	1,495
H20	GST — Health — residential care, community care and other care services	1,230	1,320	1,410	1,510
B50	Lower company tax rate	1,300	1,600	1,800	2,200
Large negative tax expenditures					
F11	Higher rate of excise levied on cigarettes not exceeding 0.8 grams of tobacco	-2,420	-2,645	-2,925	-3,210
F23	Customs duty	-1,060	-1,170	-1,340	-1,500

자료: Treasury(Australia). Mid-Year Economic and Fiscal Outlook(MYEFO) 2017-18. p.70.

다만 예산서와 반기보고서에서는 조세지출의 추정방식과 규모가 큰 조세지출 목록 등 간략한 내용만 제시되어 있다. 호주에서는 조세지출의 정의 및 기준조세체계, 조세지출의 구분기준에 관해서 법에 구체적인 규정하지 않고 조세지출 내역서에서 제시하고 있으며, 조세지출은 "기준 조세체계와 달리 특정 행위나 특정 납세자 계층에게 세제상의 혜택을 부여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Treasury (Australia), Tax expenditure statement. 2017, p.3).

조세지출내역서(Tax expenditure statement)는 의회, 의회 위원회, 언론, 국민들에게 조세지출의 투명한 검토, 조세체계의 효율성과 형평성 논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다(Treasury(Australia), Tax expenditure statement. 2017, p.3). 특히, 조세지출과 직접지출(direct expenditure)을 연계해서 검토함으로써 조세지출도 직접지출과 유사한 수준의 감시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조세지출내역서(Tax expenditure statement 2017)는 5개의 장과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서론(Introduction)에서는 조세지출의 개념, 기준 조세체계의 개념, 조세지출내역서의 목적, 조세지출 규모 추정 방법, 조세지출 추정, 조세지출 규모 추정의 신뢰성, 추정 불가 조세지출, 규모가 큰 조세지출 항목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제2장 조세지출(Tax expenditures) 부분에서는 조세지출 항목별로 조세지출 규모, 제3장은 연금관련 조세지출 등에 관해 제시하고 있으며, 제4장은 조세지출의 변화(신규, 폐지), 조세지출 가이드라인(조세지출 유형(tax expenditure type); 조세지출 규모 추정의 신뢰성(estimate reliability); 도입 시기(commencement date) 및 일몰시기(expiry date), 법적 근거(legislative reference); 기능별 분야(functional category))에 관해 설명하고 있으며, 제5장은 세수증가법 추정(Revenue gain estimates of tax expenditures)[15] 부분에서는 규모가 큰 10개 조세지출 항목에 대해 세수손실법에 따른 조세지출 추정과 세수증가법에 따른 추정을 비교 제시하여 차이 발생의 원인을 설명하고 있다.

〈그림 3-6〉 Tax Expenditures Based on Revenue Gain Approach_호주

C4: Concessional taxation of superannuation entity earnings

Estimates	Revenue forgone estimate ($m)				Revenue gain estimate ($m)			
	2017-18	2018-19	2019-20	2020-21	2017-18	2018-19	2019-20	2020-21
	19,250	23,250	26,050	28,950	18,300	21,300	23,300	25,600
Reason for difference	Broadly, the revenue gain approach yields a lower estimate of the tax expenditure because it incorporates a likely behavioural response, with removal of the concessional taxation of both superannuation contributions and earnings leading to reduced superannuation contributions (and lower balances). It is assumed current preservation rules remain. In the accumulation phase, voluntary concessional contributions are assumed to cease (as in C2) and most non concessional contributions also cease after the start date. Over time this reduces the superannuation asset base and thus the revenue gain on withdrawing the earnings tax concession. Additionally, a significant proportion of funds in the retirement phase (not preserved) are withdrawn. Because of other tax concessions for older Australians (particularly the Seniors and Pensioners Tax Offset), the funds withdrawn attract minimal tax in the new investments chosen.							

C2: Concessional taxation of employer superannuation contributions

Estimates	Revenue forgone estimate ($m)				Revenue gain estimate ($m)			
	2017-18	2018-19	2019-20	2020-21	2017-18	2018-19	2019-20	2020-21
	16,900	17,750	19,400	20,900	16,300	17,050	18,600	20,050
Reason for difference	Broadly, the revenue gain approach yields a lower estimate of the tax expenditure because it incorporates a likely behavioural response, with removal of the concessional taxation of superannuation leading to reduced superannuation contributions. It is assumed that the Superannuation Guarantee remains and therefore compulsory contributions continue. Voluntary contributions are assumed to be directed to alternative tax-preferred investments.							

자료: Treasury(Australia). Tax expenditure statement 2017, p.137.

15) 세수증가추정법은 세수손실의 대안적 기법이다.

부록 A에서는 연금과 관련한 조세 지출에 관해 추가적인 설명을 제시하고, <부록 B>[16]에서는 조세지출 규모 추정의 신뢰성 측정 방법, 규모 추정이 곤란한 조세지출 항목의 분류기준, 기준 조세체계(benchmarks)에 대한 설명, 추정모형(총계모형, 분포모형, 마이크로시뮬레이션), 세수 인식 방식으로 조세 채무 방식(tax liability method)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조세지출 유형은 비과세(tax exemptions), 세액공제(tax deductions), 세액감면(tax offsets), 저율과세(concessional tax rates), 과세이연(deferrals of tax liability) 등으로 구분된다. 각 조세지출 항목별로는 기능별 분야(functional category), 조세지출 규모(tax expenditure estimates), 조세지출 유형(tax expenditure type), 조세지출 규모 추정의 신뢰성(estimate reliability), 도입 시기(commencement date) 및 일몰시기(expiry date), 법적 근거(legislative reference)에 관해 제시하고 있다. 기능별 분야는 일반행정, 국방, 공공질서 및 안전, 교육, 농업 등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직접지출과의 비교가 가능하다.

〈그림 3-7〉 개별 조세지출 항목별 포함내용_호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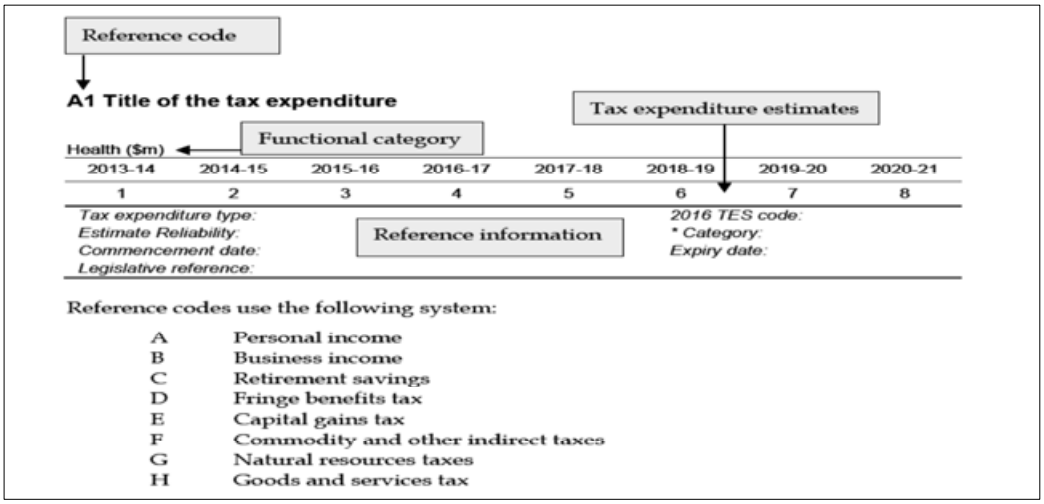

16) 〈부록 B〉에서 기준조세체계는 세원, 세율, 과세 단위, 과세 기간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세목에 따라 기준조세체계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A1 Deduction for expenses incurred by election candidates

General public services - Legislative and executive affairs ($m)

2013-14	2014-15	2015-16	2016-17	2017-18	2018-19	2019-20	2020-21
4	5	5	4	4	5	5	5

Tax expenditure type:	Deduction	*2016 TES code:*	A1
Estimate Reliability:	Medium		
Commencement date:	Introduced before 1985	*Expiry date:*	
Legislative reference:	Sections 25-60, 25-65 and 25-70 of the *Income Tax Assessment Act 1997*		

자료: Treasury(Australia). Tax expenditure statement 2017, p.23~24.

조세지출규모 추정은 「세수손실법(revenue forgone method)」에 근거하여 추정한다. 조세지출내역서에는 조세지출의 추정모형을 총계모형(aggregate modelling), 분포모형(distributional modelling), 마이크로 시뮬레이션(micro-simulation)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특히, 과세 의무 인식 시점에 대해 조세 채무 방식(tax liability method)과 경제적 거래 방식(economic transactions method)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조세채무방식은 소득세, 법인세, 연금 관련 과세 등에 활용되는 방식으로 세무 신고 또는 과세 기관에 의한 과세가 일어난 시점을 기준으로 하지만 경제적 거래방식은 간접세 등에 활용되는 방식으로 소득이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신규 조세지출에 관해서는 별도의 사전평가가 존재하지 않지만 규제영향평가[17](regulation impact statement: RIS)에 포함되어 검토될 수는 있다. 영향력이 아주 적은 정책 제안을 제외하고 신규 조세지출을 포함하여 새로 제안되는 정책은 규제영향평가[18]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긴급하게 정책 시행할 경우, 기밀이 필요한 경우 등 제한된 경우에는 규제영향평가를 제외할 수 있다. 다만 평가에서 제외하기로 결정된 경우 2년 뒤 사후평가(post implementation review: PIR)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구

17) 문제 검토, 민간이 아닌 정부가 수행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 문제해결 방안 검토(비용 편익분석 포함), 정책 제언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18) 규제영향평가는 의회에 제출, 웹사이트를 통해 일반에도 공개되고 있다. https://www.pmc.gov.au/regulation/best-practice-regulation)

체적인 내용은 'Best Practice Regulation: A guide for ministerial councils and national standard setting bodies'[19]에서 제시하고 있다. 규제영향 평가는 관련 부처에서 수행하고 총리실 내 규제담당실(The Office of Best Practice Regulation; OBPR)에서 규제 영향 평가의 질을 평가한다.

조세지출에 대한 사후평가는 존재하지 않지만 호주 감사원(Australian National Audit Office; ANAO)에서 의회의 요청 등에 따라 감사 및 정책평가 등을 실시하기도 한다. 다만 조세지출을 도입하기 전 규제영향평가에서 제외되었거나 주요한 경제적 효과를 가진 정책의 경우 사후 평가(Post Implementation Review; PIR)[20]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전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2년 내에 사후평가를 실시해야 하고, 주요한 경제적 효과로 판단한 경우 5년 내에 사후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또한 조세지출의 폐지(일몰법)에 관한한 전체 조세지출 항목에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일몰원칙은 존재하지 않는다. 일몰 규정은 특별히 적용할 필요가 있는 항목에 대해 사안별로 고려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이에 관해 조세지출내역서에서는 일몰기한이 있는 조세지출 항목은 일몰기한(expiry date)을 명시하고 있다.

〈그림 3-8〉 일몰기한이 있는 조세지출 항목_호주

Health ($m)

2013-14	2014-15	2015-16	2016-17	2017-18	2018-19	2019-20	2020-21
410	245	175	75	41	12	1	-

Tax expenditure type:	Offset	*2016 TES code:*	A22
Estimate Reliability:	Medium		
Commencement date:	Introduced before 1985	*Expiry date:*	1 July 2019
Legislative reference:	Section 159P of the *Income Tax Assessment Act 1936*		

The net medical expenses tax offset is available to a taxpayer whose eligible out-of-pocket medical expenses exceed certain thresholds. If eligible, the percentage of net medical expenses a taxpayer can claim is determined by their adjusted taxable income and family status. This offset is currently being phased out, with transitional arrangements for certain medical expenses.

자료: Treasury(Australia). Tax expenditure statement 2017, p.31.

19) https://www.pmc.gov.au/sites/default/files/publications/COAG_best_practice_guide_2007.pdf
20) https://ris.pmc.gov.au/compliance-reporting/post-implementation-reviews

라. 뉴질랜드

뉴질랜드는 우리나라의 「조세특례제한법」과 같이 조세지출 항목만을 따로 통합하여 규정하고 관리하기 위한 법은 존재하지 않고, 소득세법에서 조세지출항목을 규정하고 있다. 재정법(Public Finance Act, 1989)에서는 예산, 결산 작성 및 보고 의무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만 조세지출내역서 작성 의무에 관한 규정조항은 없다. 다만 조세지출내역서에서 소득세법(Income Tax Act 2007)에 한정된 조세지출항목을 제시하고 있다.

뉴질랜드는 매년 3월 말 예산안[21]과 조세지출내역서(Tax expenditure statement)를 작성·공개하는데, 궁극적으로는 조세체계를 통한 재정지출의 투명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이다. 또한 조세지출의 개념, 현황 및 조세지출규모 측정방법 및 측정을 위해 납세서식 등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New Zealand Treasury, 2017).

재정지출은 직접지출(direct spending), 조세체계를 통한 지출(spending through the tax system), 조세지출(tax expenditure)로 구분하고 있다. 직접지출은 일반적인 의미의 정부 지출을 의미하고, 조세체계를 통한 지출은 조세체계를 통해 납세자에게 소득 이전이나 비과세 또는 감면(공제)를 허용하는 것을 의미하며, 조세지출은 정책적 목적으로 효율적·중립적 방식으로 납세자의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것을 의미한다. 조세체계를 통한 지출과 조세지출을 포괄하여 조세지출로 인식할 수도 있으나 뉴질랜드는 조세지출의 범위를 상당히 좁게 정의하고 있다.

조세지출내역서에서는 특정 조세혜택이 조세지출로 분류될 수 있는지 판단하는 절차를 명시하고 있다(<그림 3-9> 참고). 1단계는 해당 항목이 특정 집단 또는 행위에 대한 혜택인지 여부를 검토하고, 2단계는 해당 항목이 납세자의 부담을 경감시키는지를 검토하고, 3단계는 해당 항목이 조세행정 또는 이중 과세목적을 갖지는 않는지를 검토하며, 4단계는 세입 정책목적과 관련이

21) http://www.treasury.govt.nz/budget/archive

없는지를 검토한다. 1단계에서 4단계까지 절차를 거쳐 조세지출항목이라 판단되면 조세지출내역서에 조세지출 항목에 포함하게 된다.

〈그림 3-9〉 조세지출항목 판단절차_뉴질랜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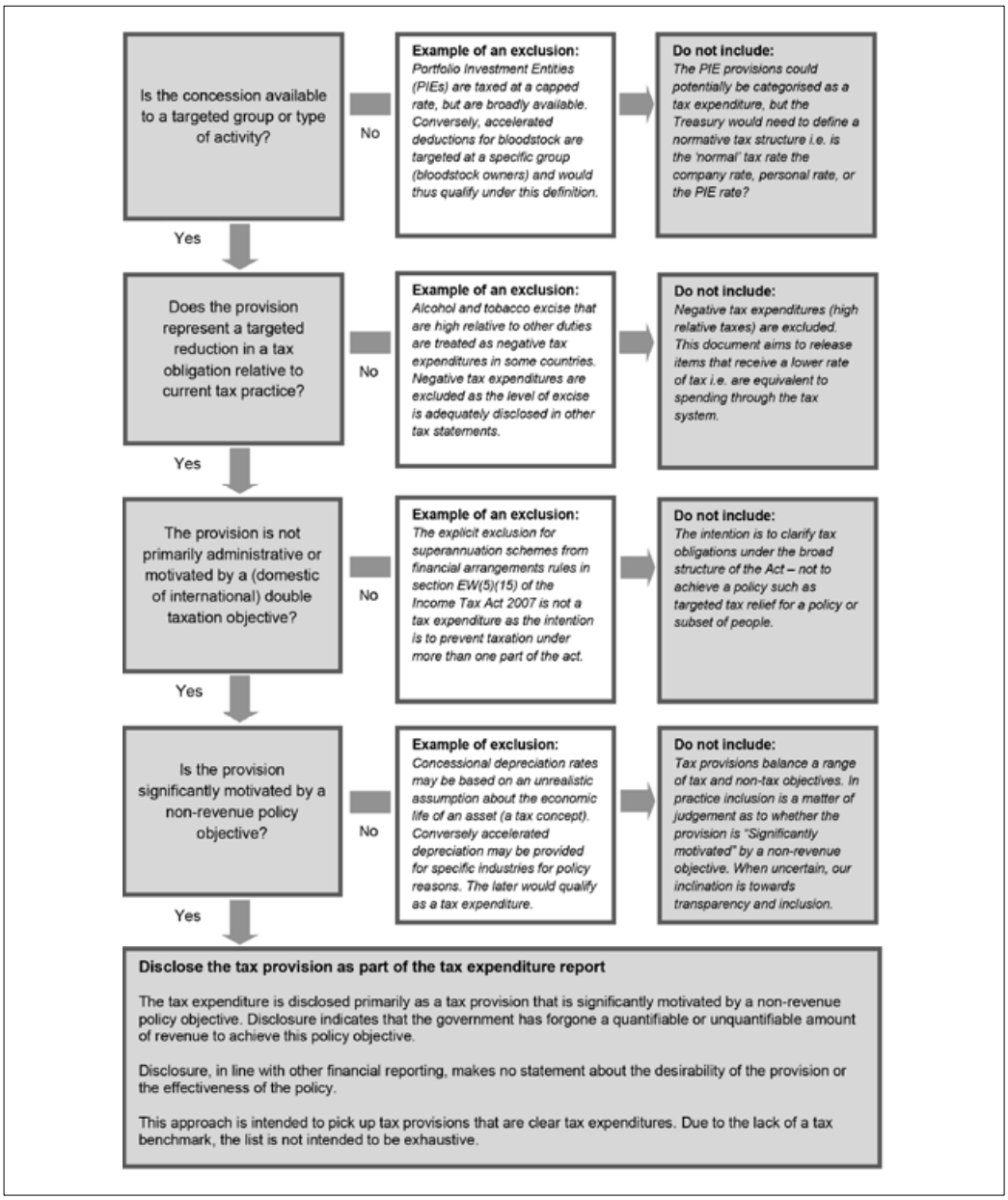

자료: New Zealand Treasury(2017). 2017 Tax expenditure, p.3.

뉴질랜드의 조세지출 내역서는 조세지출을 정책목적과 영향에 따라 각각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정책목적에 따라 사회(Social), 경제(Business), 기타(other)로, 영향에 따라 경과규정, 영구규정, 일시규정으로 구분한다. 이에 관한 세부 내용을 설명하면 조세지출의 영향에 따라 과거 행위에 근거하여 조세혜택이 주어지고 현재는 조세혜택이 주어지지 않는 경과규정(Historic), 조세혜택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영구규정(Permanent), 과세이연 등 조세혜택이 일시적으로 주어지는 일시규정(Timing)으로 구분되며 다음과 같다.

〈그림 3-10〉 조세지출의 분류_뉴질랜드

Tax Expenditure	Sections/ Classification	Comment	Policy Rationale	Type			Impact		
				Social	Business	Other	Historic	Timing	Permanent
Accelerated depreciation	*Sections DO 4-5, 12, DP 3, DZ 17-18, EE 31* *-Accelerated write-off*	The ability to depreciate capital items faster than their economic life reduces income by a greater amount in earlier years (deferring tax payments). This covers both primary sector amortisation and fixed asset depreciation.	To encourage investment in depreciable assets.		✓		✓	✓	

자료: New Zealand Treasury(2017). 2017 Tax expenditure, p.7.

뉴질랜드는 조세지출의 실적치 및 추정치를 측정할 때, 소득세 신고서, 세액공제 신고서와 같은 신고 서식을 통해 조세지출의 실적치를 측정하고, 추정치는 직전 연도와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가정하여 산출하고 있다.

조세지출 내역서에서는 측정이 가능한 조세지출 항목(Quantified tax expenditure)의 규모와 조세체계를 통한 지출(Appropriated spending through the tax system)의 규모를 제시하고 있으며, 측정이 곤란한 대다수의 개별 조세지출 항목은 규모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

〈그림 3-11〉 조세지출과 조세체계를 통한 지출 규모_뉴질랜드

Quantified tax expenditures	Value of expenditure 2011/12 (actual)	Value of expenditure 2012/13 (actual)	Value of expenditure 2013/14		Value of expenditure 2014/15		Value of expenditure 2015/16		Value of expenditure 2016/17 (forecast)
			As at April 2017	Estimated Actual	As at April 2017	Estimated Actual	As at April 2017	Estimated Actual	
Charitable or other public benefit gifts by a company: deduction	22	20	*17*	17	*31*	31	*18*	21	21
Charitable or other public benefits: tax credit	235	225	*234*	234	*241*	244	*235*	247	247
Independent earner tax credit	223	223	*221*	223	*219*	223	*208*	223	223
Māori Authorities: donations	0.5	0.7	*0.9*	0.9	*2.5*	2.5	*3.7*	3.7	3.7

Note: measured in $000,000s over March tax years. Italicised values may be incomplete. See the appendix for further information on quantification methods.

Appropriated spending through the tax system	Value of expenditure 2011/12 (actual)	Value of expenditure 2012/13 (actual)	Value of expenditure 2013/14 (actual)	Value of expenditure 2014/15 (actual)	Value of expenditure 2015/16 (actual)	Value of expenditure 2016/17 (forecast)
Child tax credit	2.0	1.7	1.8	1.3	1.1	0.9
Family tax credit	2109	2060	2015	2006	1793	1763
In-work tax credit	567	545	533	511	513	566
KiwiSaver tax credit	689	723	804	855	698	781
Parental tax credit	18	17	18	21	31	30
Minimum Family tax credit	11	12	14	16	14	13

Note: These credits are appropriated and are measured in $000,000s over financial years.

자료: New Zealand Treasury(2017). 2017 Tax expenditure, p.5.

뉴질랜드는 정책수단이나 정치적 결정에 따라 도입된 조세지출은 사전 평가에 주안을 두고 있으며, 특정 조세지출의 변화로 세수 증가로 이어질 것인지, 조세체계의 일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수준에서 정책적 필요에 따라 검토는 가능하지만 공식적인 사후평가는 없다. 개별 신규 조세지출에 대한 사전 평가는 별도로 실시하지 않고 각 부처가 새로운 정책 제안[22]을 할 때 해당 정책에 대한 사전 검토가 수행되며, 사전검토 내용은 규제영향분석보고서(Regulatory Impact Assessment: RIA)[23] 형식으로 작성·공개되는데, 새로운 규제관련 법안이 의회에 제출되거나, 규제의 내용이 관보 등을 통해 공개되는 시기에 담당 부처 웹사이트나 재무부 웹사이트[24]에서 공개된다.

22) 규제영향분석을 포함한 새로운 정책 제안절차는 'Guide to Cabinet's Impact Analysis Requirements'(http://www.treasury.govt.nz/regulation/impact-analysis/cabinet-requirements-guide)에 제시되어 있고, 규제영향분석보고서에 포함할 내용은 'Best Practice Impact Analysis'인데, (http://www.treasury.govt.nz/regulation/impact-analysis/ia-bestprac-guidance-note.pdf)에 제시되어 있다.

23) 2017년 6월 이전에는 RISs(Regulatory Impact Statements)로 작성되다가 2017년 8월까지 시범운영을 거쳐 현재는 규제영향분석보고서(RIA)로 작성되고 있으며, 문제 및 도입 목적, 대안 검토, 영향 분석(비용-효과 분석), 운영 방식 검토, 주기적인 점검 계획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24) http://www.treasury.govt.nz/publications/informationreleases/ria

뉴질랜드는 일몰기한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일부 조세지출 항목은 영구 세법 조항으로 인식하고 있다. 만약, 폐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적 법 개정 절차에 따라 폐지를 결정한다.

마. 국제비교를 통한 시사점

조세지출 관리방식은 국가별로 다양하다. 개별 국가는 OECD의 준거기준을 기초하되, 경제 상황과 역사적 배경, 중요 재정지출 항목 등을 반영하고 있다. 조세지출은 국가별 다양성이 반영되기 때문에 일률적이고 획일적인 관리방식을 적용하기 어렵다.

주요국의 조세지출 관리방식에서 도출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세지출의 범위에 관해 설명하면, 대부분 국가에서 '기준조세체계로부터 벗어나 특정 납세자 또는 특정 경제·사회·문화 활동 등에 특혜를 제공하여 수혜자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며, 직접 보조금으로 대체될 수 있는 세제상의 인센티브로 인한 세수의 감소를 수반하는 모든 제도'를 조세지출로 정의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동일하게 OECD의 정의에 근거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 조세지출을 정의하고 있다. 다만 각 조세지출 항목을 따로 모아서 대부분의 조세지출 항목을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하고 있으며, 일부 조세지출 항목은 개별세법(소득세법 등)에서도 규정하고 있다. 주요국가에서는 개별세법에 조세지출 항목을 나열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을 운영하지 않고 있다.

영국은 모든 조세감면을 파악하고 있으나 규모추정이 가능한 항목(연간 5천만 파운드 이상과 연간 5천만 파운드 미만으로 구분)에 한정하여 조세지출을 관리하고 있다. 조세지출은 국세청(HMRC)이 관리하고 있고,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은 연계하여 관리하지 않고 있으며, 6가지 추정곤란 항목을 열거하고 있다. 프랑스는 예산안의 부속서류로 조세지출예산서를

활용하고 있고, 재정지출과 조세지출을 아우르는 공공정책 전반에 걸친 성과관리를 지향하고 있으며,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는 조세지출과 연계하여 관리하고 있다. 특히 성과보고서 작성시 기능별 분류와 조세지출 항목을 연계시키고 있다. 호주는 조세지출을 직접지출과 연계 검토하여 직접지출과 유사한 수준의 감사를 수행한다. 특히 사전·사후 평가 규정은 없지만 신규 조세지출은 규제영향평가(RIS)을 수행하고, 사전평가를 수행하지 못한 조세지출은 사후평가(PIR)을 수행하고 있으며, 의회의 요청에 따라 감사원이 사후평가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개별 조세지출 항목별로 기능별, 법적 근거 등 참고정보, 일몰시기(일몰규정없음)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연차결산서는 물론 반기결산서에도 조세지출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뉴질랜드는 소득세법에 근거하여 조세지출내역서를 작성하며, 조세지출내역서에 조세지출항목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예산안과 함께 조세지출내역서를 작성하여 공개하고 있다. 재정지출은 직접지출, 조세체계를 활용한 지출, 조세지출로 구분하고, 정책목적(사회, 경제, 기타)과 영향(경과규정, 영구규정, 일시규정)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다.

〈표 3-6〉 국가별 조세지출관리 요약

구분	조세지출 관리
프랑스 (개별세법)	- 예산안 부속서류로 조세지출예산서 제출(우리나라와 유사) - 재정지출 및 조세지출 전반의 성과관리, 성과보고서에 조세지출연계
호주 (개별세법)	- 재정지출과 조세지출 연계검토 - 신규조세지출은 규제영향평가, 사후평가 필히 수행, 의회요청에 따른 감사원 사후평가
뉴질랜드 (소득세법)	- 예산안과 조세지출내역서 함께 제출(우리나라와 유사) - 조세지출의 정책목적(사회, 경제, 기타) 및 영향(경과, 일시, 영구)으로 구분관리
영국 (개별세법)	- 재정지출과 조세지출 미연계 - 국세청에서 관리, 규모추정이 가능한 항목(5천만 파운드 이상 또는 이하)에 국한하여 조세지출 관리

외국의 사례를 비교검토 해 볼 때 우리나라는 조세지출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조세지출에 국한된 심층평가 등). 다만 프랑스와 유사하게 성과계획서에 소관 조세지출항목을 단위사업에 연계하여 제시하여야 하나 실상은 그러하지 못하다.[25] 또한 총량위주의 조세지출 자료를 제공하고 있어 재정지출과 조세지출 간 연계성이 다소 낮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조세지출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연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조세지출 항목을 선정할 때 불명확성에 기초하여 모든 비과세·감면을 조세지출로 볼 수도 있다. 하지만 그 범주와 대상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조세지출 항목 수를 줄여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조세특례제한법」과 「개별세법」에 열거된 조세감면항목을 명확하게 조세지출로 확정·구분할 필요가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조세지출 항목을 규정하고 있다면, 「개별세법」에 규정된 조세지출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조세지출내역 중에서 추정이 곤란한 항목으로 사실상 수 십년간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과세할 수 없는 경우 그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예, 국민주택 건설용역 부가세 면제).[26] 「개별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세지출의 경우 기준조세체계 내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분석을 통해 조세지출

25) 2015년부터 각 부처는 성과계획서 작성지침에 따라 소관조세지출 항목의 개요(법령조항, 목적, 대상, 일몰기한), 조세지출실적(최근 5개년), 예산지원과 조세지출 간 관련성을 서술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가 성과계획서에 누락되거나 관련이 없는 항목을 제시한 경우 등이 있다(김학수 외, 2017).

26)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에 관한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택 (080-088)	국민주택 및 동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 도입목적 : 국민주택 건설 및 취득 지원 - 수 혜 자 : 국민주택 취득자 및 건설업자 등 - 수혜내용 : 국민주택 및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 적용기한 : 없음 - 추정곤란 : 면세사업자는 신고의무가 없어 부가가치세 면제금액을 파악·관리하기 곤란

항목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 추후 호주 등과 같이 재정지출과 조세지출을 체계적으로 연계하여 비교 분석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그 대안적 기제로 템플렛과 dBrain 시스템 활용을 제안한다.

Ⅳ. 재정지출과 조세지출의 연계관리

1. 재정지출과 조세지출의 연계관리 필요성

정부는 재정지출과 조세지출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조세지출예산서를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하고 있다. 조세지출예산서는 기능별, 세목별 관리는 물론 미래지향적으로 세부 조세지출내역을 관리하고 있어 외형적으로는 재정지출과 연계관리가 가능하다고 인식할 수 있다. 하지만 재정지출과 조세지출의 연계관리는 극히 제한적이다. 조세지출예산서(2019년도 기준, 239개 지출항목)는 세부 조세지출 내역을 제시하고 있으나 재정지출과 조세지출 간 개별항목별 비교·검토도 제한된다. 따라서 동일한 재정지출관점에서 재정지출과 조세지출의 연계관리가 필요하며, 그 필요성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세(간접)지출은 재정(직접)지출과 대체가능한 정책수단이라는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조세지출은 직접지출이 아니고, 사후 정산 정도로만 인식하기 때문에 상대적 관심도가 낮을 수밖에 없다. 또한 조세지출예산서는 예산안 첨부서류로만 활용되기 때문에 관리상 제약이 있다. 따라서 조세지출은 적극적 재정관리대상이자 재정지출과 연계하여 정책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되어야 한다는 당위성과 인식의 대전환이 요구된다.

둘째, 재정지출과 조세지출 간 비교평가를 통해 효율적 재정운영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현재는 세목별 조세지출에 기초하여 기능별, 감면방법별, 수혜자별 등 총량규모를 관리하고 있다. 아울러 신설 또는 폐지, 일몰 등을 관리하고 있다. 특히, 조세지출예산서에 세부조세지출내역은 제시하고 있지만 총량규모 관리에 치중하고 있어 재정지출과 조세지출 간 비교·검토가 제한되는 구조이다. 예컨대, 재정지출 항목(프로그램

예산체계의 ‘분야-부문-프로그램-단위사업-세부사업’으로 구성)과 조세지출 항목(분야-부문)이 서로 다른데, 재정지출과 조세지출의 비교 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최소한 조세지출항목이 프로그램예산체계의 ‘프로그램, 단위사업 또는 세부사업’과 연계가능한 구조가 되어야 한다.

셋째, 조세지출 연계관리를 위한 기제로 조세지출 DB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세법 개정에 의한 조세지출의 신설, 폐지, 재검토, 일몰연도 등을 반영하여 재정지출과 연계하여 비교 검토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와 같은 총량관리 수준을 넘어 재정지출과 조세지출의 세부 연계관리도 병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매년 일회성 조세지출예산서 작성에 그쳐서는 안되고, 데이터의 일관성과 정합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조세지출 DB를 구축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조세지출 DB는 재정지출과 연계 활용될 필요가 있다.

넷째,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dBrain) 등을 활용하여 조세지출내역의 포괄적 관리가 필요하다. 현재는 개별 행정기관에서 내역자료를 제공받아 수작업으로 조세지출통계를 작성하고 있는데, 그 내역자료에서 누락 또는 중복, 총계 오류 등이 발견된다(기획재정부 담당자 인터뷰). 기획재정부가 조세지출예산서를 작성할 때 중복 또는 총계오류 등은 수정하지만 근본적으로 개별 행정기관이 제출한 세부 내역자료를 그대로 활용하기 때문에 원초적 오류는 치유가 불가능하다. 대안적 기제로 템플렛 활용을 제안한다.

2. 재정지출과 조세지출 연계검토

재정지출과 조세지출의 연계검토는 동일한 정책목표를 추구하는 수단으로서 재정지출의 효과성 등을 비교·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재정지출과 조세지출의 연계검토는 프로그램예산체계의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항목을 활용할 수 있다. 다만 본 보고

서는 지면의 제약으로 「조세특례제한법」상 조세지출항목 중에서 '중소기업', '연구개발', '근로·자녀장려금' 등 일부 조세지출항목을 활용하여 재정지출(프로그램예산체계)과 연계성을 검토한다. 연계성 검토를 위해 조세지출예산서에 제시된 조세지출항목(세목별, 예산의 분야-부문)과 프로그램예산분류체계의 재정지출항목(분야-부문)[27]을 비교하면 된다. 이를 위해 조세지출예산서의 세부 조세지출항목과 프로그램예산체계의 세출(재정지출)항목을 비교할 것이다.

<표 4-1>은 '중소기업 및 연구개발' 관련 재정지출과 조세지출의 개괄적 구조에 관한 설명이다. 2018년까지 재정지출은 110분야(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하위 범주에 111(산업금융지원), 112(산업기술지원), 113(무역 및 투자유치), 114(산업진흥·고도화), 115(에너지 및 자원개발), 116(중소기업일반) 부문으로 구성되었다. 한편, 2019년부터는 110분야(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하위 범주에 111(산업금융지원), 113(무역 및 투자유치), 115(에너지 및 자원개발), 116(중소기업일반), 117(산업혁신지원), 118(창업 및 벤처), 119(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 부문으로 개편되었다.

재정지출과 조세지출 항목 간 연계성을 검토하기 위해 2017년 재정지출과 조세지출의 '분야' 및 '부문'을 비교하되, 2019년 프로그램예산체계의 부문 개편에 기초하여 재정지출과 조세지출의 분야 및 부문을 비교하여 담론적 대안을 제시한다. 2017년 기준, 110(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분야 재정지출은 111(산업금융지원), 112(산업기술지원), 113(무역 및 투자유치), 114(산업진흥·고도화), 115(에너지 및 자원개발), 116(중소기업일반)으로 구성된 반면, 조세지출은 113(무역 및 투자유치), 114(산업진흥·고도화), 115(에너지 및 자원개발)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에서 재정지출과 조세지출 간 연계성을 검토하기 위해 113(무역 및 투자유치)과 114(산업진흥·고도

27) 표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분야코드 110은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부문코드 114는 '산업진흥·고도화'를 의미한다.

화)부문에 한정한다. 조세지출항목(「조세특례제한법」 분류별)에서는 110 분야(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114부문(산업진흥·고도화)은 주로 '중소기업'에 편성되어 있으며, 110분야(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113부문(무역 및 투자유치)은 연구개발, 기업구조조정에 국한되어 편성되어 있다. 2019년도 조세지출예산서 기준, 113(무역 및 투자유치)과 114(산업진흥·고도화)'부문'에 국한하여 재정지출과 조세지출을 개략적으로 비교·검토한다. 개략적으로는 재정지출의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110) 분야-'무역 및 투자유치'(113)부문과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110) 분야-'산업진흥·고도화'(114)부문은 조세지출과 연계된 듯하다. 그러나 '무역 및 투자유치'(113) 부문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 38조의 3(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 주식 등의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만 '무역 및 투자유치'(113)부문에 연계되어 있고, 산업진흥고도화(114) 부문은 2019년 예산체계의 부문 개편으로 인해 재정지출과 연계되지 않는다.

〈표 4-1〉 중소기업 및 연구개발_연계 검토 일반

프로그램 예산체계 (재정지출)					재정지출		조세지출
분야	부 문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17 결산[1]	2019 예산[2]	2017 실적[3]
11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1 산업금융지원	111	111	111	○	○	
	112 산업기술지원	112	112		○		
	113 무역 및 투자유치	113	113	113	○	○	○
	114 산업진흥·고도화	114	114		○		○
	115 에너지 및 자원개발	115	115	115	○	○	○
	116 중소기업 일반	116	116	116	○	○	
	117 산업혁신지원			117		○	
	118 창업 및 벤쳐			118		○	
	119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육성			119		○	

주: 1) 2017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서 발췌
2) 2019년도 예산(열린재정 세출)에서 발췌
3) 2019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서 발췌

2019년도 조세지출예산서 기준, ‘무역 및 투자유치’(113) 부문의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다. ‘무역 및 투자유치’(113) 부문의 조세지출은 5건으로 집계된다.

〈표 4-2〉 조세지출_‘무역 및 투자유치’ 부문(110-113) 현황 (5건)

조특법	조세지출내역	조세특례 분류	분야-부문	감면방법별
조특18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원천)*	*연구개발*	*110-113*	*소득세, 법인세 세액감면*
조특18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종소)*	*연구개발*	*110-113*	*소득세, 법인세 세액감면*
조특18 의2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저율과세]*	*연구개발*	*110-113*	*저율과세*
조특38 의3	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 주식 등의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기업구조 조정	110-113	간접감면 (준비금, 과세이연 등)
조특39	*채무의 인수·변제에 대한 과세특례(재무구조개선계획)*	*기업구조 조정*	*110-113*	*간접감면 (준비금, 과세이연 등)*

주: 이탤릭체는 분야-부문의 재분류(검토) 여지가 있는 항목임(110-113→110-117 등)
자료: 2019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서 발췌

‘무역 및 투자유치’(113) 부문에서 「조세특례제한법」 18조, 18조의 2에 근거한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및 과세특례’는 외국인 개별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인데, ‘무역 및 투자유치’(113) 부문에 해당되는지 재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39조에 근거한 ‘채무의 인수·변제에 대한 과세특례’는 내국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법인에 한정)가 채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채무를 인수·변제하는 것으로 ‘무역투자 및 투자유치’ 부문에 해당되는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오히려 산업혁신지원(117) 등으로 분류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조세특례제한법」 38조의 3에 근거한 ‘내국법인의 외국 자회사 주식 등의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는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온전히 ‘무역 및 투자유치’(113) 부문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2019년도 조세지출예산서 기준, ‘산업진흥·고도화’(114) 부문 내역은 다음과 같다. 프로그램예산체계에 기초한 ‘산업진흥·고도화’(114) 부문의 조세지출내역은 122건으로 집계된다.

〈표 4-3〉 조세지출_산업진흥·고도화 부문(110-114) 현황 (122건)

조특법	조세지출내역	조세특례분류	분야-부문	감면방법별
조특5	중소기업 투자 세액공제(소득세)	중소기업	110-114	세액공제
조특5	중소기업 투자 세액공제(법인세)	중소기업	110-114	세액공제
조특6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소득세)	중소기업	110-114	소득세,법인세 세액감면
조특6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법인세)	중소기업	110-114	소득세,법인세 세액감면
조특7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소득세)	중소기업	110-114	소득세,법인세 세액감면
조특7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법인세)	중소기업	110-114	소득세,법인세 세액감면
조특7의4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소득세)	중소기업	110-114	세액공제
조특7의4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법인세)	중소기업	110-114	세액공제
조특8의3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출연시 세액공제	중소기업	110-114	세액공제
상증18①1	기초공제(가업상속공제)	중소기업	110-114	소득공제
조특7의2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소득세)	중소기업	110-114	세액공제
조특7의2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법인세)	중소기업	110-114	세액공제
조특10①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소득세)	연구개발	110-114	세액공제
조특10①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법인세)	연구개발	110-114	세액공제
조특10①1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신성장원천기술](소득세)	연구개발	110-114	세액공제
조특10①1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신성장원천기술](법인세)	연구개발	110-114	세액공제
조특10의2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소득세)	연구개발	110-114	기타
조특10의2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법인세)	연구개발	110-114	기타
조특11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소득세)	연구개발	110-114	세액공제

조특11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법인세)	연구개발	110-114	세액공제
조특12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세액공제](소득세)	연구개발	110-114	세액공제
조특12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세액공제](법인세)	연구개발	110-114	세액공제
조특12의3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연구개발	110-114	세액공제
조특12의4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연구개발	110-114	세액공제
조특13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연구개발	110-114	비과세
조특13의2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세액공제]	연구개발	110-114	비과세
조특14	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비과세]	연구개발	110-114	비과세
조특15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법인세)	연구개발	110-114	소득세,법인세 세액감면
조특16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원천)	연구개발	110-114	소득공제
조특16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종소)	연구개발	110-114	소득공제
조특16의2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특례(소득세)	연구개발	110-114	비과세
조특16의3,4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연구개발	110-114	간접감면(준비금, 과세이연 등)
조특16의3,4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비과세]	연구개발	110-114	비과세
조특16의5	산업재산권 현물출자 이익에 대한 과세특례[과세이연]	연구개발	110-114	간접감면(준비금, 과세이연 등)
관세90①4	학술연구용품의 감면세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	연구개발	110-114	관세감면
조특9	연구인력개발준비금 손금산입(소득세)	연구개발	110-114	간접감면(준비금, 과세이연 등)
조특9	연구인력개발준비금 손금산입(법인세)	연구개발	110-114	간접감면(준비금, 과세이연 등)
	~ 이하 생략 (95건)	기업구조 조정 등	110-114	

주: 산업진흥·고도화는 중소기업(12건), 연구개발(25건)만 제시하였으며, 기업구조조정(23건) 등 13개 조세특례 분류로 구성(부록 2 참고)

자료: 2019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서 발췌

<표 4-4>는 ‘산업진흥·고도화’(110-114)와 프로그램예산체계의 부문 간 연계성을 검토한 것이다. 2019년 예산부터 프로그램예산체계의 개편으로 인해 부문의 대폭 변화가 있었다(<표 4-1> 참고). 즉, 2019년부터 프로그램예산체계의 ‘부문’ 개편으로 산업진흥·고도화(110-114)는 존재하지 않는다(<표 4-1> 및 <표 4-4> 참고).

〈표 4-4〉 중소기업_조세지출항목

예산분류	조세지출 내역	연계성
산업진흥·고도화 (110-114)	중소기업 등 투자 세액공제 ■ 근거규정 :「조세특례제한법」제5조	프로그램 예산체계 개편으로 재정지출 ‘부문’ 항목 없음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근거규정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 근거규정 :「조세특례제한법」제7조	“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 근거규정 :「조세특례제한법」제7조의4	“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시 세액공제 ■ 근거규정 :「조세특례제한법」제8조의3	“

<표 4-5>에 설명하고 있듯이, 프로그램예산체계의 ‘부문’ 개편으로 인해 기존 ‘산업진흥·고도화’(110-114) 부문은 ‘중소기업일반’(116) 등으로 재분류되어야 한다. 즉, ‘산업진흥·고도화’(110-114) 부문은 ‘중소기업일반’(116), ‘산업혁신시설’(117), ‘창업 및 벤처’(118),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육성’(119) 등으로 재분류될 필요가 있다.

〈표 4-5〉 조세지출_산업진흥·고도화 부문 재분류(예시)

조특법	조세지출 내역	조세특례분류	분야-부문 (현행)	분야-부문 (재분류)
조특5	중소기업 투자 세액공제(소득세)	중소기업	110-114	110-116
조특6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법인세)	중소기업	110-114	110-118
조특7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소득세)	중소기업	110-114	110-116
조특7의4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중소기업	110-114	110-116
조특8의3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시 세액공제	중소기업	110-114	110-116
조특15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법인세)	연구개발	110-114	110-118
조특16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원천)	연구개발	110-114	110-118
조특16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종소)	연구개발	110-114	110-118

외형적으로는, 조세지출예산서 상 조세지출의 분야-부문(110-113, 110-114 등)은 재정지출과 연계되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하지만 세부 조세지출 내역을 검토한 결과 체계적으로 연계되어 있지 않다. <표 4-1>에서 설명하고 있듯이, '중소기업' 및 '연구개발' 관련 조세지출은 재정지출의 분야-부문과 체계적으로 연계되지 않는다. 재정지출과 조세지출의 연계관리를 위해 우선적으로 두 지출간 분야-부문의 일치화 작업이 필요하다. 아울러 재정지출(분야-부문-프로그램-단위사업-세부사업) 관리방식을 조세지출까지 확장할 필요하다. 즉, 현행 조세지출관리(분야(110)-부문(114)

및 조특법 분류)는 프로그램예산체계(분야(110)-부문(116T(중소기업일반) 또는 118T(창업 및 벤쳐))-프로그램(중소기업지원)-단위사업(중소기업세액공제)-세부사업(법인세공제))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그림 4-1> 참고).

〈그림 4-1〉 중소기업_조세지출 연계 검토(2019년 예산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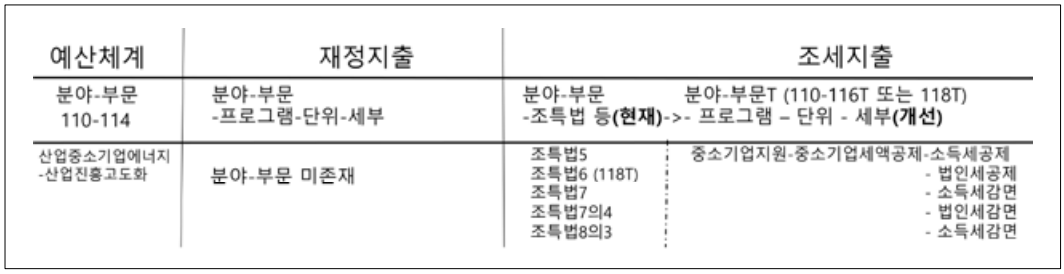

주: 116T: 중소기업일반, 118T는 창업 및 벤처를 의미

<표 4-6>은 '연구개발' 관련 조세지출 항목으로 재정지출과 연계성을 검토한 결과이다. 간략하게 설명하면, 2019년 프로그램예산체계의 부문개편으로 인해 분야(110)-부문(114)은 존재하지 않는다. 재정지출의 부문 개편에 따른 조세지출항목의 분야-부문 개편이 필요하다. 한편 조세지출의 분야(110)-부문(113)도 재정지출의 분야-부문과 일치시켜야 한다(일부만 연계, 「조세특례제한법」 38의 3).

〈표 4-6〉 연구개발_조세지출항목

예산분류	조세지출 내역	연계성
산업진흥·고도화 (110-114)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 근거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프로그램예산체계내 분야-부문(114) 항목 없음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 근거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2	〃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근거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	〃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 근거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	〃
	기술혁신형 합병 및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 근거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3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4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 근거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 근거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2	〃
	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 근거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
무역·투자유치 (110-113)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 ■ 근거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프로그램예산체계내 부문(113)과 미연계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 근거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프로그램예산체계내 부문(113)과 미연계
	내국법인의 외국 자회사 주식 등의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 근거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3	프로그램 예산체계내 부문(113)과 연계
	채무인수·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 근거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39	프로그램예산체계내 부문(113)과 미연계

〈그림 4-2〉 연구개발_조세지출 연계 검토(2019년 예산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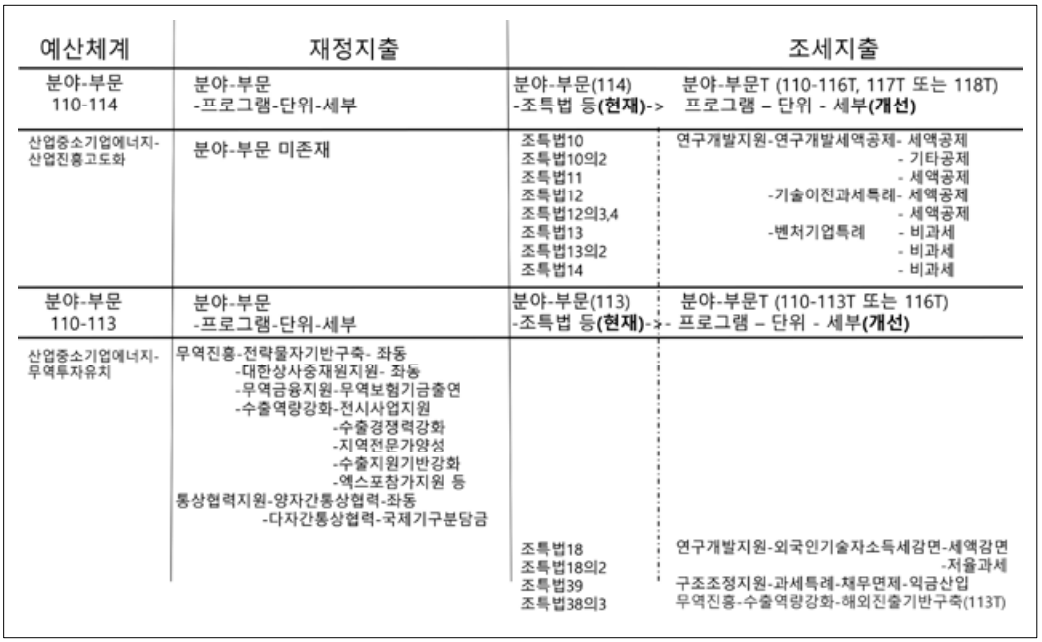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기존 ‘산업진흥·고도화’(114) 부문은 프로그램 예산체계의 ‘부문’ 개편에 맞추어 중소기업일반(116), 산업혁신시설(117), 창업 및 벤처(118),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육성(119) 부문으로 재분류해야 한다. 한편 ‘무역 및 투자유지’(113) 부문은 ‘내국법인의 외국 자회사 주식 등의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항목을 제외하고(재정지출의 110-113 부문과 정확히 일치. <표 4-7> 참고), ‘중소기업일반’(116)부문으로 재분류해야 한다.

〈표 4-7〉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_예산항목

코드	분야	코드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11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3	무역및투자유치	무역진흥	전략물자수출입 통제기반구축	전략물자수출입 통제기반구축
110		113	무역및투자유치	무역진흥	대한상사중재원지원	대한상사중재원지원
110		113	무역및투자유치	무역진흥	무역금융지원	무역보험기금출연
110		113	무역및투자유치	무역진흥	수출역량강화	전시산업경쟁력 강화지원사업
110		113	무역및투자유치	무역진흥	수출역량강화	디지털무역기반구축사업 (정보화)
110		113	무역및투자유치	무역진흥	수출역량강화	수출경쟁력 강화지원
110		113	무역및투자유치	무역진흥	수출역량강화	지역전문가양성및공급
110		113	무역및투자유치	무역진흥	수출역량강화	수출지원기반활용
110		113	무역및투자유치	무역진흥	수출역량강화	세계엑스포참가지원
110		113	무역및투자유치	무역진흥	수출역량강화	해외진출기반구축
110		113	무역및투자유치	무역진흥	수출역량강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10		113	무역및투자유치	무역진흥	수출역량강화	해외플랜트진출확대
110		113	무역및투자유치	무역구제	무역구제지원	무역구제지원사업
110		113	무역및투자유치	통상협력지원	양자간통상협력지원	양자산업협력
110		113	무역및투자유치	통상협력지원	양자간통상협력지원	산업통상협력개발지원 (ODA)
110		113	무역및투자유치	통상협력지원	다자간통상협력지원	통상기반조성및역량강화
110		113	무역및투자유치	통상협력지원	다자간통상협력지원	국제기구분담금
110		113	무역및투자유치	통상협력지원	다자간통상협력지원	국제면화자문위원회 분담금(ODA)
110		113	무역및투자유치	통상협력지원	다자간통상협력지원	다자통상협상추진 및 글로벌경제협력강화
110		113	무역및투자유치	통상협력지원	다자간통상협력지원	한중일통상협력 기반구축
110		113	무역및투자유치	통상협력지원	통상협정국내대책추진	통상협정국내대책 추진지원
110		113	무역및투자유치	통상협력지원	통상분쟁대응	통상분쟁대응
110		113	무역및투자유치	통상협력지원	자유무역협정체결	자유무역협정 체결 및 후속조치
110		114	산업진흥·고도화	**항목 미존재 (부문체계 개편)**		
110		115	에너지및자원개발	에너지 자원정책	에너지자원정책지원	에너지국제기구분담금
110		115	에너지및자원개발	에너지 자원정책	에너지자원정책지원	에너지정책홍보
110		115	에너지및자원개발	에너지 자원정책	에너지자원정책지원	국가에너지위원회운영

자료: 열린재정 홈페이지. 프로그램예산체계 무역및투자유치(113)부문: 프로그램 2개, 단위사업 8개, 세부사업 22개로 구성)

<표 4-8>은 사회복지(080) 분야의 연계성을 검토하기 위해 개괄적 구조를 설명한 도표이다. 2018년까지 프로그램예산체계의 '사회복지'(080) 분야는 '기초생활보장'(081)부터 '사회복지일반'(089) 부문으로 구성되었으나, 2019년 프로그램예산체계의 '부문' 개편으로 '보육·가족 및 여성'(084)은 '아동·보육'(08A)과 '노인'(08B)으로, '노인·청소년'(085)은 '여성·가족·청소년'(08C)과 '고용'(08D)으로, '노동'(086)은 '노동'(08E)과 '고용노동일반'(08F)으로 각각 세분화되었다. 후반부에 설명하겠지만 조세지출의 근로장려금(earned income tax credit: EITC)은 '기초생활보장'(081)이 아니라 '노동'(086)으로 분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왜냐하면 제도도입 초기는 기초생활보장적 측면이 강했다. 하지만 최근 정부차원에서 기초생활보장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기초생활보장(081)이 아닌 근로유인 제고차원의 노동(086 또는 08E)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표 4-8〉 사회복지_연계 검토 일반

프로그램 예산체계 (재정지출)					재정지출		조세지출
분야	부 문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17 결산[1]	2019 예산[2]	2017 실적[3]
080 사회복지	081 기초생활보장	081	081	081	○	○	○
	082 취약계층지원	082	082	082	○	○	○
	083 공적연금	083	083	083	○	○	
	084 보육·가족 및 여성	084	084	08A 아동·보육	○	○	○
				08B 노인		○	
	085 노인·청소년	085	085	08C 여성·가족·청소년	○	○	○
				08D 고용		○	
	086 노동	086	086	08E 노동	○	○	○
				08F 고용노동일반		○	
	087 보훈	087	087	087	○	○	
	088 주택	088	088	088	○	○	○
	089 사회복지 일반	089	089	089	○	○	○

주: 1) 2017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서 발췌
2) 2019년도 예산(열린재정 세출)에서 발췌
3) 2019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서 발췌

<표 4-9>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조세지출에 관한 세부 설명자료이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유인을 통한 빈곤탈출이며, 노동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기초생활보장(081)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표 4-9〉 근로·자녀장려금_조세지출항목

<table>
<tr><th>예산분류</th><th>조세지출 내역</th></tr>
<tr><td>기초생활 보장 (080-081)</td><td>

근로장려금

■ 근거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2~13
■ 도입목적: 저소득 가구의 소득 지원 및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층의 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
■ 수 혜 자: 저소득 근로자, 사업자 가구
■ 수혜내용: 일을 통한 빈곤 탈출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장려금 지급 ('08년 소득기준 '09년부터 지급)
- 신청자격 (모두 충족)
①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거나 수급자가 30세 이상일 것
② 가구(부부)의 연간 총소득 합계 1,300~2,500만원 미만
③ 토지·건물 등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원 미만
(단, 재산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

<table>
<tr><th>구분</th><th>총급여액 등</th><th>지급액</th></tr>
<tr><td rowspan="3">단독 가구</td><td>600만원 미만</td><td>총급여액 등 × 85/600</td></tr>
<tr><td>600만~900만원</td><td>85만원 정액지급</td></tr>
<tr><td>900만~1,300만원</td><td>85만원-(총급여액 등-900만원)×85/400</td></tr>
<tr><td rowspan="3">홑벌이 가족</td><td>900만원 미만</td><td>총급여액 등 × 200/900</td></tr>
<tr><td>900만~1,200만원</td><td>200만원 정액지급</td></tr>
<tr><td>1,200만~2,100만원</td><td>200만원-(총급여액 등-1,200만원)×200/900</td></tr>
<tr><td rowspan="3">맞벌이 가족</td><td>1,000만원 미만</td><td>총급여액 등 × 250/1000</td></tr>
<tr><td>1,000만~1,300만원</td><td>250만원 정액지급</td></tr>
<tr><td>1,300만~2,500만원</td><td>250만원-(총급여액 등-1,300만원)×250/1200</td></tr>
</table>

자녀장려금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27~31
■ 도입목적 :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비 지원
■ 수 혜 자 : 부양자녀가 있는 저소득 근로자, 사업자 가구
■ 수혜내용 : 저소득 근로가구의 자녀 양육비 지원을 위해 세금의 환급 방식으로 자녀장려금을 지급('14년 소득을 기준으로 '15년부터 지급)
- 신청자격 (모두 충족)
① 부양자녀가 있을 것(단, 생계급여수급자는 제외)
② 거주자(부부)의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4,000만 원 미만
③ 토지·건물 등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

<table>
<tr><th>구분</th><th>총급여액 등</th><th>지급액</th></tr>
<tr><td rowspan="2">홑벌이 가족</td><td>2,100만원 미만</td><td>부양자녀 수×50만원</td></tr>
<tr><td>2,100만~4,000만원</td><td>부양자녀 수×[50만원-(총급여액 등-2,100만원)×20/1900]</td></tr>
<tr><td rowspan="2">맞벌이 가족</td><td>2,500만원 미만</td><td>부양자녀 수×50만원</td></tr>
<tr><td>2,500만~4,000만원</td><td>부양자녀 수×[50만원-(총급여액 등-2,500만원)×20/1500]</td></tr>
</table>

</td></tr>
</table>

자료: 대한민국정부(2018). 2019년도 조세지출예산서

<표 4-10>은 '근로장려금'에 한정하여 재정지출과 조세지출을 연계검토하기 위해 제시한 도표이다. 얼핏보면 조세지출의 근로장려금(EITC)은 프로그램예산체계의 사회복지(080)-기초생활보장(081)과 유사하다. 그러나 유사점을 발견하기란 제한이 된다. 즉, 재정지출(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 [부록 1] 참고)과 조세지출의 근로장려금(EITC)은 차이가 있다.

〈표 4-10〉 사회복지 기초생활보장_예산 항목

코드	분야	코드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080	사회복지	081	기초생활보장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교육급여
080		081	기초생활보장	기초생활보장	기초생활급여	생계급여
080		081	기초생활보장	기초생활보장	기초생활급여	해산장제급여
080		081	기초생활보장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의료급여경상보조
080		081	기초생활보장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	긴급복지
080		081	기초생활보장	기초생활보장	자활지원	자활사업
080		081	기초생활보장	기초생활보장	자활지원	생업자금 이차 및 손실보전금
080		081	기초생활보장	기초생활보장	자활지원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
080		081	기초생활보장	기초생활보장	자활지원	근로능력 심사 및 평가 운영
080		081	기초생활보장	기초주거생활보장	주택정책지원	주거급여지원

자료: 열린재정 홈페이지(2019). 프로그램예산체계(081 부문: 프로그램 2개, 단위사업 6개, 세부사업 10개로 구성)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조세지출의 '근로장려금' 항목은 노동(086) 또는 노동(08E)부문으로 재분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림 4-3〉 근로장려금_조세지출 연계 검토 (2019년 예산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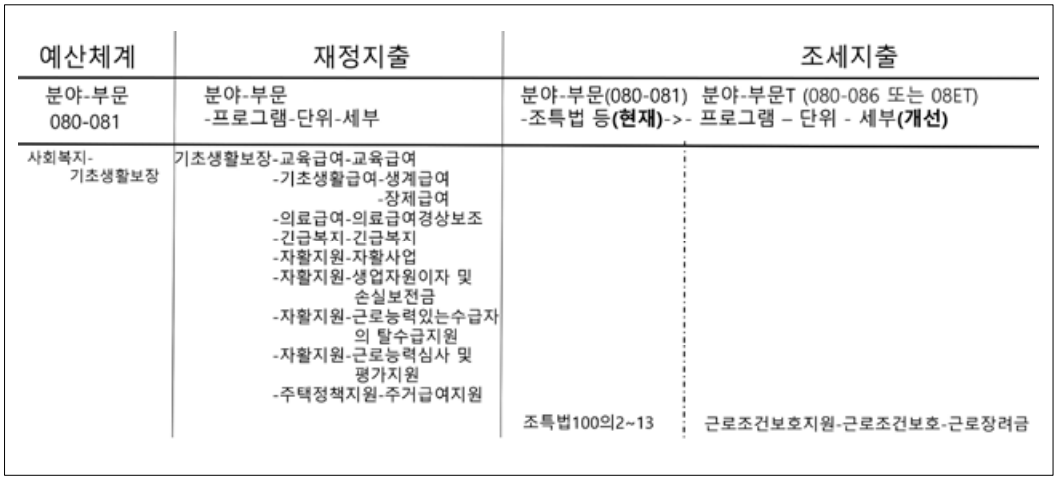

함축하면, 현행 조세지출예산서에 제시된 조세지출 항목은 프로그램예산체계의 재정지출 항목과 체계적으로 연계되지 않는다. 따라서 현행 조세지출항목의 체계적 검토를 통해 재분류할 필요가 있다. 우선 재정지출(프로그램예산체계)의 '분야-부문'과 조세지출의 '분야-부문'의 일치화 작업이 필요하며, 추가적으로 조세지출항목을 분류할 때, 프로그램예산체계의 '분야-부문'을 확장하여 최소한 '프로그램, 단위사업 또는 세부사업' 구조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3. 조세지출 통계작성 및 수단

가. 조세지출 통계작성 간 오류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조세지출예산서는 개별 행정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취합하여 수작업으로 작성한다. 개별 행정기관의 통계작성자가 조세지출 세부내역을 취합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 오류의 종류는 단순 총계오류, 누락오류 또는 중복계산 등이다. 기획재정부 담당자는

개별 행정기관이 제출한 조세지출내역의 오류를 인지할 수 없다. 다시 말해, 개별 행정기관이 제출한 세부 내역자료에서 단순히 중복 또는 총계상 오류는 인지할 수 있지만 누락오류 등은 인지조차 할 수 없다. 개별 행정기관에서는 조세지출예산서 작성을 위한 요구자료에 대한 대응행위로 인식하여 보고행위에 그칠 우려가 있다. 그러다 보니 개별 행정기관에서 제출된 세부내역자료는 책임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28] 그 책임은 고스란히 기획재정부로 전가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적어도 개별 행정기관(예, 국세청의 경우)이 세부 조세지출내역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할 때 국세통계연보를 작성하는 기초자료와 상호대사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

이제 조세지출통계 산정방식의 차이에 관해 논의해보자. 조세지출예산서와 국세통계연보의 산정방식은 동일하게 '신고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세목이 있고, '신고일과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세목도 있다. 즉, 조세지출예산서의 금액(규모)은 '신고일이 속하는 연도'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지만, 국세통계연보는 '신고일'과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다. 예컨대, 법인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신고일이 속하는 연도'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조세지출예산서와 국세통계연보의 산정방식이 동일하다. 반면, 소득세, 부가가치세, 주세 등의 통계는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작성되기 때문에 조세지출예산서와 국세통계연보의 산정방식이 다르다. 따라서 동일한 조세지출통계 산정방식 구조를 취하는 법인세에 한정하여 조세지출예산서와 국세통계연보를 비교해 보면 조세지출통계의 정합성을 검토할 수 있다.

비교·검토 결과, 동일한 산정방식인 법인세임에도 과대반영(연구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또는 과소 반영(해외 자원개발 사업지원 세액공제 등)되고 있다. 그 외 조세지출예산서와 국세통계연보의 통

28) 템플렛에 통계생산자를 명시하여 책임성을 담보할 필요가 있다. 국세통계연보 등에서는 담당자, 전화번호 등을 명시하고 있다.

계산정방식이 다른 일부 조세지출 항목의 실적치도 다르다(국회입법조사처, 2019). 이러한 오류의 근본 원인은 개별 행정기관에서 기획재정부에 제출하는 조세지출내역자료가 단순 누락오류 또는 집계 오류 등에서 비롯된다.

또한 세부 조세지출 내역자료 제출시기도 다르다. 예컨대, 2019년 조세지출예산서의 경우, 개별 행정기관이 제출한 조세지출내역(2017년 실적치)에 기초하여 기획재정부는 예산안 제출(회계연도 개시전 120일 전, 2018. 9. 3) 시 조세지출예산서를 국회에 보고한다. 한편 국세청은 회계연도 말(2018년 12월 기준) 세부 조세지출내역자료에 기초하여 국세통계연보를 발간한다.

〈표 4-11〉 개별 조세지출항목 간 차이 (조세지출예산서 / 국세통계연보)

(단위: 억원)

세목별	조세지출 내역	조세지출 예산서[1]	참고[3]	국세통계 연보[2]	참고[3]
법인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근거규정:「조세특례제한법」제6조	809	p.32	1,516	p.281~ p.283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 근거규정:「조세특례제한법」제10조	24,741	p.35	22,272	
	고용창출(임시)투자세액공제 ('17년 적용기한 종료) - 근거규정:「조세특례제한법」제26조	5,864	p.162	4,458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13년 적용기한 종료) - 근거규정:「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15	24	p.173	139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 - 근거규정:「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18	0.24	p.94	0.97	
	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운영에 대한 과세특례 근거규정:「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22	1	p.96	10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 근거규정:「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24	0	p.96	2.34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근거규정:「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17	75	p.128	103	

주: 1) 2) 2019년도 조세지출예산서와 2018 국세통계연보의 조세지출은 동일하게 2017년도 실적치임
3) 조세지출예산서와 국세통계연보 상 페이지를 의미

자료: 대한민국정부(2018). 2019년도 조세지출예산서와 국세청.(2018). 국세통계연보의 세부 내용을 활용하여 저자 재작성

<표 4-11>은 법인세에 한정하여 비교하였기 때문에 동일한 산정 방식으로 산출되는 조세지출예산서와 국세통계연보의 조세지출통계는 일치해야 한다. 동일한 조세지출임에도 불구하고 조세지출예산서와 국세통계연보상 조세지출내역은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즉, 조세지출예산서상 조세지출 규모가 국세통계연보상 조세지출 규모에 비해 과소 또는 과대 추계된다. 조세지출내역이 과소 추계(조세지출예산서, 809억원; 국세통계연보 1,516억원)되는 것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인데, 창업벤처기업과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의 세액감면이 미포함되었기 때문이다. 한편, 조세지출내역이 과대추계(조세지출예산서, 24,741억원; 국세통계연보 22,272억원)되는 것은 「조세특례제한법」 10조(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인데, 신성장·원천기술분야 세액공제분 2,469억원이 중복계산되었기 때문이다.

통계 작성의 오류를 줄이기 위해 조세지출통계는 일시적(일회성)이 아닌 주기(월 단위 등)를 설정하여 조세지출 정보를 공유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실시간 정보공유는 불가능할지라도 매월 단위 세목별 조세지출 정보를 공유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조세지출 통계의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국세청[29] 간 협의체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조세지출예산서는 9월에 발간되고 국세통계연보는 12월에 발간되더라도 조세지출내역의 상호대사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

나. 조세지출 통계작성 수단으로서 템플렛(template)

템플렛의 기본적 체계는 조세지출구분, 세목별, 조세특례제한법분류, 예산 분류 (분야 및 부문), 감면방법별, 수혜자귀착(개인, 법인), 조세지출 실적(전년도, 당해연도), 감면세액 증감 및 사유, 추정곤란[30] 사유 등으로

29) 대부분 조세지출은 국세청에서 관리되고 있다.
30) 뉴질랜드에서는 추정곤란 항목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추정곤란 항목의 제시에 관해 실익이 있는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구성된다. 기타 통계목적상 속성정보를 더 추가할 수 있다(SOCX등).

〈표 4-12〉 템플릿 체계

no	법	조문	일몰연도	내용	자료출처	부서명(과,계)	지출구분	분류방법					
								세목	조특분류	예산 분류 기준			감면방법별 구분(15개항목)
										코드	예산분류1(분야)	예산분류2(부문)	
1	조특	5	2018	중소기업 세액공제(소득세)	국세청	소득세과	조특법	소득세	1.중소기업	110-114	110.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4.산업 진흥·고도화	A-3. 세액공제

(표 계속)

no	개인						법인											
	원천소득			종합소득			중소기업			중견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			그외법인		
	건수	대상금액	세액	건수	대상금액	세액	건수	대상금액	세액	건수	대상금액	세액	건수	대상금액	세액	건수	대상금액	세액
1																		

(표 계속)

no	2018년 실적			2019년 실적			감면세액 증감		주요증감 사유*		비고
	건수	대상금액	세액(A)	건수	대상금액	세액(B)	증감액(A-B)	증감률(A-B/B)	작성대상	증감사유	(추정곤란 사유 등)
1											

법: 조세특례, 개별세법, 경과규정

일몰연도: 일몰해당연도 또는 일몰없음

내용: 조세지출 세부내용

자료출처: 국세청, 관세청 등 19개 기관

부서: 자료출처기관 부서

지출구분(3): 조특법상 조세지출, 개별세법상 조세지출, 경과조치에 따른 조세지출

조특분류(23): 중소기업, 연구개발, 국제자본거래, 투자촉진, 고용지원, 기업구조조정, 금융기관구조조정, 지역균형발전, 공익사업지원, 저축지원, 국민생활안정, 근로·자녀장려, 기타직접국세, 간접국세, 외국인투자, 제주국제도시육성, 기업도시, 지역발전, 농협구조개편, 공적자금회수, 수협구조개편, 사업재편계획, 기타

예산분류기준(코드): 예산분류1 (분야), 예산분류2(부문)

감면방법별구분(15): 직접감면은 A, 간접감면은 B로 표시. A직접감면(1.비과세, 2.세액감면, 2-1.소득 · 법인세 감면, 2-2.양도 · 증여세 감면, 3. 세액공제, 4.소득공제, 5.저율과세, 6.기타감면, 6-1.근로·자녀장려세제, 6-2.부가가치세영세율, 6-3.부가가치세 면제, 6-4.개별소비세·교육세 면제, 6-5.주세 · 증권거래세 면제, 6-6.기타(매입세액공제 등), 6-7.관세 감면) B. 간접감면(준비금, 과세이연 등)

수혜자: 개인과 법인으로 구분

* 감면세액 증감사유: 10억이상 증감, 증감률이 20%이상인 경우에 증감사유를 작성(구체적으로 기록)

템플렛(안)은 기본체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조세지출예산질문지_표지(coverage)와 표 1(<그림 4-5> 참고)로 구성되며, 아래 <그림 4-4>는 2020년도 조세지출예산서를 취합한다는 가정하에 구성된 템플렛이다. <그림 4-4>는 국세청을 예시적으로 제시하였으며, 관세청 등(관세청, 2; 해양수산부, 3; 농협중앙회, 4; 산림청, 5; 수협중앙회, 6)은 조세지출내역이 5건 이상인 기관으로 템플렛에 조세지출 내역을 입력한 후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dBrain)에 탑재(on-line)하는 것이다. 다만, 입력 건수가 5건 이하인 기타 행정기관의 경우에는 템플렛을 활용하는 것 보다는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dBrain)에 조세지출내역을 직접입력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판단된다(일정 기간 시스템 개방시 입력).

예컨대 관세청에서 조세지출내역을 입력한다고 가정하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소관부처란에는 '관세청'을 기재하고, 부처코드는 '2'를 기재하게 되면 다음 표1에 자동으로 '관세청'과 '2'가 생성된다. 그 다음 책임성을 담보하기 위해 통계작성자의 이름, 이메일, 전화번호를 기재하면 된다. 이후 다음 표 1에 제시된 세부 조세지출내역을 입력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림 4-4〉 조세지출예산 질문지_표지

조세지출예산 질문지

기획재정부

소관부처 국세청
부처코드 1
연도 2018
단위/회계연도 원/회계연도 말 12.31

<표 참고>

작성자
[이름]:
[Email]:
[Tel]

소관부처	관세청	해양수산부	농협중앙회	산림청	수협중앙회	기타기관
코드	2	3	4	5	6	직접입력

표 1 조세지출세부내역

<예시>

열1	열2	열3	열4	열5	열6	열7	열8	열9	열11	열12	열13
법	조문	내용	지출구분	세목	조특분류	예산분류1,2	감면별	수혜자(개인,법인)	2018실적	2017실적	감면증감	주요증감사유

이제 개별 행정기관에서 템플렛에 세부 조세지출내역을 입력하는 절차에 관해 논의한다. 기획재정부는 개별 행정기관에 템플렛(안)(법 조문부터 감면방법별 구분)을 사전에 제공한다. 개별 행정기관에 템플렛을 제공할 때, 전년도 조세지출내역과 신규 또는 폐지(일몰 등 포함)등 조세지출내역을 반영(추가 또는 삭제)할 필요가 있다. 개별 행정기관은 기획재정부로부터 제공받은 템플렛에 조세지출을 추가로 반영 또는 폐지할 항목이 있는지 체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는 기획재정부와 개별 행정기관이 상호대사 과정을 거친다는 의미이다.

개별 행정기관은 신규 폐지 등 적용해야 할 조세지출 항목의 검토과정이 종료되면 아래의 템플렛을 활용하여 조세지출내역을 작성하면 된다. 작성된 조세지출내역서(템플렛)는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dBrain)에 탑재하면 된다.

〈그림 4-5〉 세부 조세지출 실적 작성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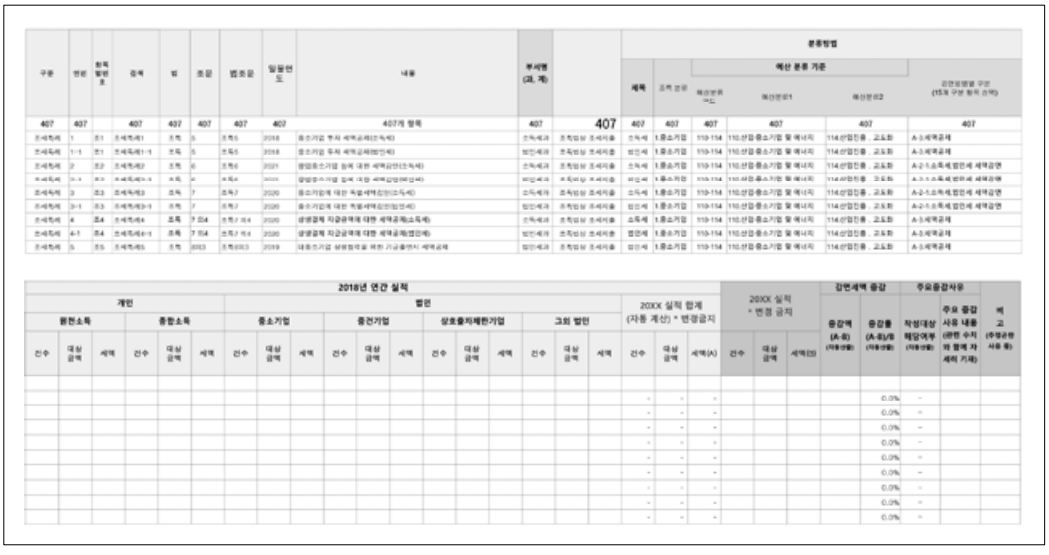

4. 향후 과제 도출

미래 지향적으로 재정지출과 조세지출의 연계관리가 가능한 구조로의 개편이 필요하다. 그 세부 내용은 예산, 결산, 성과관리와 연계하고, 이를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dBrain)에서 연계관리할 필요가 있다.

첫째, 예산 측면에서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은 연계관리되어야 한다. 현행 예산안(세출)은 재정사업의 분야-부문-프로그램 항목까지 제시하고 있지만, 조세지출예산의 세부 내역은 제시하지 않고 있어('분야-부문'만 제시) 국가재정운용을 정책수단별로 비교할 수 없다. 적어도 예산안 세출 첫 페이지 등에 기능별 재정지출과 조세지출 내역을 제시하고, 소관 부처별로는 재정지출(재정사업) 말미에 조세지출 내역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가재정운용계획에는 조세지출 내역을 포함하여 국가재정운용계획, 예산안의 재정지출, 조세지출의 연계 심의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더불어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의 연계관리를 위해 국가재정운용계획(12개 분야)과 예산안(결산서 포함) 및 조세지출예산(16개 분야) 분야를 일치시키는 것도 필요하다. 이는 궁극적으로 재정집행의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다.

둘째, 결산 측면에서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은 연계관리가 되어야 한다. 즉, 결산서(국가결산보고서)에 조세지출 내역 자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추후 재정지출과 조세지출 내역을 통합공개하는 것도 고려되어야 한다(<표 4-13> 참고). 대안으로 국가결산서 결산개요_일반회계 세출_기능별 세출란 재정지출과 조세지출의 총량을 제시하고, 필수보충정보 또는 부속서류에 제시하는 것이다. 이는 재정집행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다. 다만, 재정지출 결산은 전년 자료(예, 2019년 결산시 2018 회계연도 결산)인 반면 조세지출 결산을 가정한다면 전년도 상반기 자료(2019년 조세지출예산서에 2018년 상반기 자료만 제공)를 활용할 수밖에 없다.

프랑스와 같이 성과보고서가 조세지출과 연계되도록 하는 것도 고려

해볼 필요가 있다.[31] 재정지출과 조세지출의 결산 내역을 제공하려면 재정지출 결산과 동일한 순기로 조정이 필요하다. 다만 현재로서는 시간적·물리적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국가결산보고서의 국회 제출 시기는 5월말이고, 조세지출예산서[32]는 9월말이며, 예산안(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과 함께 제출된다. 조세지출 내역의 제출기한(순기) 조정을 고려해볼 수도 있겠다. 또한,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국세통계연보의 실시간 연계활용은 제한[33]되더라도 월 단위 조세지출 내역 공유는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이 자료를 활용하여 국가결산서에 조세지출 내역을 추정치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추후 반기결산서 작성을 가정하면 더욱 타당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표 4-13〉 기능별 재정지출과 조세지출 규모

(단위: 조원)

재정지출		조세지출	
기능별 분류	**규모**	**기능별 분류**	**규모**
일반공공행정	64.7	일반공공행정	2.6
공공질서 및 안전	18.4	공공질서 및 안전	-
외교 · 통일	2.5	외교 · 통일	0.1
국방	43.9	국방	0.6
교육	71.8	교육	1.4
문화 및 관광	3.6	문화 및 관광	0.1
환경	9.8	환경	0.9
사회복지	48.6	사회복지	11.4
보건	7.6	보건	5.5
농림수산	24.0	농림수산	5.4
산업·중소기업·에너지	12.9	산업·중소기업·에너지	12.1
교통 및 물류	38.3	교통 및 물류	0.5
통신	7.3	통신	-
국토 및 지역개발	6.7	국토 및 지역개발	11.4
과학기술	6.8	과학기술	0.1
예비비	0.6	예비비	-
소계	364.5	소계	41.8

주: 재정지출은 2018회계연도 결산자료이며, 조세지출은 2018년 추정치임

자료: 대한민국정부(2019). 2018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및 2019년도 조세지출예산서

31) 현재, 국가결산보고서상 성과보고서는 성과지표(일반적으로 단위사업)의 나열에 불과하다.
32) 6월 중순, 개별 행정기관으로부터 세부내역을 제출받아 조세지출통계를 작성한다.
33) 발간 주기가 매년 12월(예, 2018년 국세통계연보 작성기준은 2017년 12월말)이다.

셋째, 성과관리(성과평가) 측면에서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은 연계관리되어야 한다. 현재는 조세지출에 국한된 성과관리 구조로 재정지출과 연계된 성과관리가 되지 않는다. 즉, 조세지출의 성과관리는 하고 있지만 포괄적 재정지출 측면에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다고 볼 수 없다. 예컨대, 외국인 직접투자 사업을 재정지출과 조세지출로 동일하게 추진할 경우 통합 재정관점에서 성과평가가 제한된다. 따라서 재정지출과 연계하여 조세지출에 대한 성과평가가 가능한 구조로 개편이 필요하다. 이는 궁극적으로 효율적 재정운영은 물론 재정지출의 투명성을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

넷째,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dBrain)에서 조세지출 내역을 관리해야 한다. 즉, 효율적 재정운영을 위해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dBrain)에 조세지출 정보를 포함하여 재정지출과 조세지출의 총량규모 관리는 물론 조세지출의 세부내역을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종전에 설명한 템플렛(template)은 조세지출 통계작성을 위한 로직 중 하나이며, 수작업에서 발생되는 오류를 줄일 수 있는 단기 방안이다. 궁극적으로는 차세대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dBrain) 구축시 조세지출 관리 로직을 추가 반영할 전제로 다음과 같은 안을 제안한다. 현재는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dBrain)에서 재정지출만 관리하고 있는데 조세지출을 통합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34] 조세지출에 관한 로직은 세부분류기준이 없기 때문에 합리적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기존 조세특례별 분류는 프로그램단위(예, 중소기업지원)로 활용하고, 감면별 구분은 단위사업(예, 중소기업 세액공제)으로 활용할 것으로 제안한다. 추가적으로 세부사업 단위를 활용한다면 하위단위(예, 소득세 공제)를 활용하면 된다. 다만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dBrain)시스템에서 재정지출과 조세지출 항목을 구분하기 위해 부문코드에 T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117T).

34) 그 원천자료는 개별 행정기관에서 제출한 raw data에 기초한다. 추후 차세대 시스템에 로직을 추가반영하면 개별 행정기관에서는 최소 월 단위 조세지출내역을 업로드할 필요가 있겠다.

〈표 4-14〉 dBrain에서 재정지출과 조세지출의 연계관리(예시)

	소관부처	회계	코드	분야	코드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재정지출	A	일반	110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113	무역및투자유치	통상협력지원	양자간통상협력지원	양자산업협력
	A	일반	110		113	무역및투자유치	통상협력지원	양자간통상협력지원	산업통상협력개발지원(ODA)
조세지출	B	일반	110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117**T**	산업혁신지원[1)]	연구개발지원	외국인기술자소득세감면	세액감면
	B	일반	110		117**T**	산업혁신지원[2)]	연구개발지원	외국인기술자소득세감면	저율과세
	A	일반	110		116**T**	중소기업일반[3)]	중소기업지원정책	중소기업세액공제	소득세공제
	A	일반	110		116**T**	중소기업일반[4)]	중소기업지원정책	중소기업세액공제	법인세공제
	A	일반	110		116**T**	중소기업일반[5)]	중소기업지원정책	중소기업세액감면	소득세감면
재정지출	A	일반	110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115	에너지및자원개발	에너지자원정책	에너지자원정책지원	에너지국제기구분담금
	A	일반	110		115	에너지및자원개발	에너지자원정책	에너지자원정책지원	에너지정책홍보
	A	일반	110		115	에너지및자원개발	에너지자원정책	에너지자원정책지원	국가에너지위원회운영

주: 1) 조특법 §18,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 조특분류 1.중소기업, 예산분류 110-113, A-2-1소득세 법인세액감면

2) 조특법 §18의2,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분류 1.중소기업, 예산분류 110-113, A-5저율과세

3) 조특법 §5, 중소기업투자 세액공제(소득세), 조특분류 1.중소기업, 예산분류 110-114, A-3세액공제

4) 조특법 §5, 중소기업투자 세액공제(법인세), 조특분류 1.중소기업, 예산분류 110-114, A-3세액공제

5) 조특법 §6,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소득세), 조특분류 1.중소기업, 예산분류 110-114, A-2-1 소득세법인세 세액감면

** 기존 110-113은 110-117로, 110-114는 116으로 개편 필요

자료: 저자 작성

추가로 조세지출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고려되어야 할 사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재정지출과 조세지출의 분야-부문의 연계성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이를 위해 조세지출의 분야-부문 분류가 일관성을 지니고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최소한 전체 조세지출 항목과 재정지출 항목의 일치화 작업이 필요하다.

둘째, 조세지출 내역은 프로그램예산체계의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필요시)까지 그 범위를 확장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 즉, 세부 조세지출내역은 예산체계의 분야-부문에서 프로그램, 단위사업 또는 세부사업까지 연계범위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조특 분류, 감면방법별 구분). 근본적으로는 재정지출과 조세지출의 비교 검토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셋째, 조세지출내역은 공통(범용)활용이 필요하다. 조세지출 세부내역 자료는 조세지출예산서 작성의 토대가 됨은 물론 사회지출통계(social expenditure: SOCX)[35]작성 등에도 활용이 가능하다.

35) SOCX 통계는 격년 단위로 보건복지부에서 작성하여 OECD에 보고한다. SOCX 통계작성을 위해 보건복지부는 조세지출예산서와 국세통계연보를 활용한다. 예를 들면 보건복지 분야 조세지출인데, 그 항목은 취약계층지원, 보육 및 가족, 노동, 주택, 사회복지일반, 보건의료, 건강보험, 식품의약안전 등이며, 세액공제와 비과세 등이다([부록 2] 예산분류 분야 080 및 090 참고).

Ⅴ. 결론 및 정책적 함의

조세지출은 특정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유용한 수단으로 이기도 하지만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저해함은 물론 세입 기반을 축소시키는 주된 원인으로 작용한다. 조세지출은 형식적으로는 세제상의 문제이지만, 그 실질은 재정지출과 유사한 정책수단이기도 하다. 따라서 재정지출과 조세지출의 연계를 통한 관리[36]가 필요하다. 즉, 재정지출이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dBrain)에 관리되듯 조세지출도 연계하여 관리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재정지출에 비해 조세지출은 관리상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현재, 총량위주의 조세지출예산서(조세지출통계)가 공시되고 있으나, 수작업으로 조세지출통계를 작성하다 보니 종종 오류가 발생한다. 그 원인은 개별 행정기관에서 조세지출 내역 자료(rawdata)를 제출할 때 조세지출의 일부를 누락하여 보고하거나, 단순히 총계상 오류에서 비롯된다(기획재정부 담당자 인터뷰). 개별 행정기관에서는 조세지출내역 작성을 하나의 사무로 인식해서는 안 되고, 기획재정부에서는 조세지출예산서 제출을 위한 통계작성 행위로 여겨서는 안 된다. 재정지출의 관점에서, 조세지출은 재정지출과 동일한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유용한 수단으로 인식하고 관리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dBrain을 활용한 조세지출의 체계적 관리 방안을 제안한다. 주요 국가(영국, 프랑스, 호주, 뉴질랜드)의 조세지출체계와 비교·검토해본 결과, 우리나라는 비교적 조세지출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총량 위주로 조세지출을 관리하고 있으며, 수작업으로 인해 종종 통계 오류가 발생되고 있다. 따라서 수작업으로 인한 조세지출 통계의 오류를 줄일 수 있고, 동일한 재정지출(조세지출 포함)관점에서 효

36) 증거기반정책결정(evidence-based policy making)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율적 재정운영을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즉, ‘dBrain을 활용한 조세지출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방안적 기제로 개별 행정기관이 활용가능한 표준 템플렛(template)을 제안한다. 궁극적으로는 미래지향적 재정지출과 조세지출의 연계관리가 가능한 구조로의 개편을 의미한다. 아울러 조세지출은 예산, 결산, 성과관리 체계와 연계되어야 함은 물론 dBrain을 활용하여 체계적 관리가 되어야 한다.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세지출의 연계관리로 인한 편익은 재정지출과 조세지출 간 비교평가를 통한 효율적 재정운영, 재정지출과 대체가능한 정책수단으로 조세지출 활용, 세부 조세지출관리 기제로 조세지출 DB 활용, 조세지출내역서의 오류 감소 등이 있다. 둘째, 재정지출과 조세지출의 연계성을 검토한 결과, 프로그램예산체계와 조세지출체계(예산체계의 분야-부문)의 연계성이 낮다. 따라서 두 재정지출 간 비교·검토가 가능한 구조로의 개편이 필요하다. 셋째, 조세지출통계작성 간 오류가 발생되고 있는데, 개별 행정기관에서 조세지출의 세부 내역(raw data)을 지출할 때 오류를 줄이기 위한 대안적 기제로 개별 행정기관이 활용가능한 템플렛을 제안한다. 아울러 조세지출 내역의 상호대사가 가능한 구조로의 개편이 필요하다(협의체 구성 등 거버넌스 포함). 넷째, 미래지향적으로 조세지출과 예산, 결산, 성과관리체계의 연계가능한 구조로의 개편은 물론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dBrain)에서 조세지출내역 관리를 통해 합리적 재정운영에 기여함은 물론 재정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연구결과에 기초한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템플렛(template)을 활용하여 조세지출 DB 작성이 필요하다. 조세지출내역은 일회성 조세지출예산서 작성을 위한 보고에 그쳐서는 안 되며 정책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이 가능해야 한다. 둘째, 프로그램예산체계와 조세지출체계의 연계성을 고려해야 한다. 예컨대 총량위주 내역산출에서 범주를 확

장하여 분야-부문 단위(우선적으로 연계성 검토 필요)의 조세지출체계는 최소한 예산체계의 프로그램, 단위사업 또는 세부사업까지 확장할 필요가 있다. 이는 재정지출과 조세지출의 체계적 연계관리를 위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셋째, 누락오류 또는 중복계산 등의 오류를 치유해야 한다. 이를 위해 조세지출 정보의 공유(기획재정부와 국세청 간 상호대사 등)는 물론 적어도 월 단위 세목별 조세지출 정보를 공유하여 정합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넷째, 차세대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dBrain) 구축시 조세지출 관리 로직을 추가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 단기적 방안으로는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dBrain)에 작성된 템플렛을 탑재하는 방법과 직접 입력하는 방법이 있겠다(예, 5건 이하, 개별 행정기관에서 직접입력).

본 연구는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의 연계관리를 위한 담론적 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추후 두 지출 간 연계성은 물론 정합성을 강화하기 위해 프로그램 예산체계와 조세지출체계의 일대일 매칭 등 다양한 연계 방안을 지속하여 연구할 필요성이 있겠다.

〈참고문헌〉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e.go.kr.

국세청(2018). 2017 국세통계연보.

국회입법조사처(2019). 조세지출예산서통계작성의 문제점과 작성방안. 현안분석 55호.

기획재정부(2019). 열린재정 홈페이지.

김학수 외(2017). 조세지출예산서 개편방안. 기획재정부 용역보고서.

대한민국정부(2018). 2017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대한민국정부(2019). 2018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대한민국정부(2014; 2015; 2016; 2017; 2018). 2015~2019년도 조세지출예산서.

박명호·전병힐(2009). 조세지출과 세출예산의 연계방안 검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09-06.

뉴질랜드, New Zealand Treasury(2018). 2017 Tax expenditure statement.

영국, HM Revenue & customs(2018). Estimated costs of minor tax reliefs.

영국, HM Revenue & customs(2018). Estimated costs of principal tax reliefs.

영국, HM Revenue & customs(2018). Estimates of cost unavailable.

프랑스, 성과포럼홈페이지. www.performance-publique.budget.gouv.fr.

프랑스, 2018 조세지출예산서. www.performance-publique.budget.gouv.fr/sites/performance_publique/files/farandole/ressources/2018/pap/pdf/VM T2-2018.pdf.

호주, Treasury(Australia). Mid-Year Economic and Fiscal Outlook(MYEFO) 2017-18.

호주, Treasury(Australia). Tax expenditure statement 2017.

호주, 조세지출 홈페이지. www.budget.gov.au/2017-18/content/myefo/html/

호주, 조세지출 홈페이지. www.budget.gov.au/2017-18/content/bp1/html/

OECD(1996). Tax Expenditures: Recent Experience.

〈부록 1〉 사업 설명자료(열린재정 홈페이지)

사 업 명
(7) 근로 능력있는 수급자의 탈 수급지원 (1137-309)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080	081
명칭					사회복지	기초생활보장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37	309
명칭	기초생활보장	자활지원	근로능력있는수급자의탈수급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서울 40~60% 지방 70~90%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7년 결산액	2018년 예산액(A)		2019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A)	증감률(%) ((B-A)/A)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	80,394	82,883	82,883	78,090	78,090	△4,793	△5.8

4. 사업목적

○ 근로능력 있는 빈곤층의 자산형성 지원 및 일을 통한 자립·자활 활성화 촉진

- (희망키움통장Ⅰ) 일반 노동시장 취·창업자(생계·의료수급가구)가 3년 이내 생계·의료수급에서 벗어날 경우 근로소득장려금을 지급
- (희망키움통장Ⅱ) 일반 노동시장 취·창업자(교육·주거수급가구 및 차상위층)가 3년간 꾸준히 근로하고, 교육·사례관리 이수할 경우 근로소득장려금 지급
- (내일키움통장)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가 3년 이내에 일반노동시장에 취·창업하거나 탈수급하면 근로소득장려금 지급

- (청년희망키움통장) 일하는 생계급여수급 청년의 근로·사업소득공제액 10만원과 근로소득장려금을 통장에 적립하고, 3년 이내 생계급여수급에서 벗어날 경우 전액 지급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 조의4

① 보장기관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보장기관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하는 데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으로 형성된 자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급자의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 시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자산형성지원의 대상과 기준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자산형성지원의 신청, 방법 및 지원금의 반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시행령 제21조의2(자산형성의 대상 등)

① 법 제15조제1항제7호 및 제18조의4에 따른 자산형성지원의 대상은 가구별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상인 사람 중에서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가구 여건 및 취업 상태를 고려하여 선정한다. 이 경우 기준 중위소득에 대한 비율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산형성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수급자 및 차상위자(이하 이 조에서 "지원대상자"라 한다)에게 지원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지원금"이라 한다)은 지원대상자의 근로소득 등에 따라 차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지원대상자는 제21조의3제1호에 따른 금융업무를 하는 기관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저축을 하여야 한다.
1. 주택 구입비 또는 임대비
2. 본인 및 자녀의 고등교육비·기술훈련비
3. 사업의 창업자금 및 운영자금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용도
④ 보장기관은 제3항에 따라 저축을 하는 지원대상자의 자산형성을 지원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지원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⑤ 보장기관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라 적립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대상자는 지급받은 지원금을 제3항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1.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의 증가 등으로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비율을 초과한 경우
2. 기업 등에 채용되거나 단독 또는 공동으로 창업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의 소득이 발생한 경우
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충족한 경우

⑥ 보장기관은 지원대상자에게 채무 관리, 자산 관리, 신용 관리, 재무 설계 등의 교육을 할 수 있다.

⑦ 보장기관은 지원대상자가 제5항에 따라 지급받은 지원금을 제3항 각 호의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거나 제6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하면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신청, 대상자 선정, 지원금 지급 및 회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시행규칙 제32조의4(자산형성지원의 신청 등)

① 법 제18조의4제4항에 따라 자산형성지원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자산형성지원신청서를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자 가구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이하 "차상위자"라 한다)의 가구의 사업소득, 근로소득 및 가구원수 등을 고려하여 자산형성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지하여야 한다.

○ 법 제18조의4(자산형성지원)

② 추진경위

- '04.11월 참여정부 국정과제회의에서 빈곤탈출을 유인하는 지원체계 강화를 정책방향으로 하고, 자산형성지원사업 시범사업 추진 결정
  · 국정과제에 '자활장려금 확대 등 근로인센티브 강화' 포함
- '10. 1월「제1차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일자리 창출 중점과제'의 하나로 '희망키움통장제도 성과에 따른 확대 방안' 포함
- '10. 3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희망키움통장Ⅰ' 시행
- '13년 차상위 계층까지 자산형성지원을 확대하는 희망키움통장 도입을 국정과제로 설정,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포함
- '14. 7월부터 차상위 대상 '희망키움통장 Ⅱ' 시행
- '16.1월부터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대상 '내일키움통장*' 가입자에게 정부에서 근로소득 장려금 신규 지원
  * 자활근로사업단 매출액 연계 자산형성지원 사업
- '16.10월부터 희망키움통장Ⅱ 가입자 선정 기준 등 완화
  * 기준중위소득 30% 이하도 가입가능, 승용차의 소득 환산기준 등
- '18.4월부터 생계급여 수급 청년층 대상 '청년희망키움통장' 시행

6. 주요내용

- 사업기간 : '10~ (계속)
  (희망키움통장 Ⅰ) 월 평균 6.7천명에게 근로소득장려금 지급 ('17년 기준)
  * 가입가구: ('17년) 41천→ ('18년) 45천 가구→ ('19년) 47천 가구(누계, 신규 2.1천 가구)
  (희망키움통장 Ⅱ) 월 평균 41.3천명에게 근로소득장려금 지급 ('17년 기준)
  * 가입가구: ('17년) 67천→ ('18년) 87천 가구→ ('19년) 104천 가구(누계, 신규 17천 가구)
  (내일키움통장) 월 평균 5.8천명에게 내일키움장려금 지급 17년 기준)
  * 가입가구: ('17년) 19천→ ('18년) 22천 가구→ ('19년) 24천 가구(누계, 신규 2천 가구)
  (청년희망키움통장) '18년 5천명에게 근로소득장려금 지급 예정
  * 가입가구: ('18년) 5천→ ('19년) 10천(누계, 신규 5천 가구)
- 사업시행방법: 지자체 경상보조
- 사업시행주체: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 사업수혜자: 일반 노동시장 및 자활근로사업단에서 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자자체 경상보조	서울 40~60% 지방 70~90%	「국고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7. 사업 집행절차

보건복지부 국고보조 → 시·도비 부담 → 시·군·구비 부담 → 시·군·구 대상자 선정 및 장려금 지급(신청 접수 및 자격확인) → 읍·면·동 및 지역자활센터 대상자 관리 (신청접수, 상담, 실태조사 등)

〈부록 2〉 조세지출 세부내역자료

1. 국세청 407개 항목

구분	법	조문	법조문	일몰연도	내용	자료출처	부서명(과,계)	지출구분	분류방법					
									세목	조특 분류	예산 분류 기준			감면방법별 구분(15개구분항목선택)
											예산분류코드	예산분류 (분야)	예산분류 (부문)	
조세특례 1	조특	5	조특5	2018	중소기업 투자 세액공제(소득세)	국세청	소득세과	조특법상 조세지출	소득세	1.중소기업	110-114	110.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4.산업진흥·고도화	A-3.세액공제
조세특례 1-1	조특	5	조특5	2018	중소기업 투자 세액공제(법인세)	국세청	법인세과	조특법상 조세지출	법인세	1.중소기업	110-114	110.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4.산업진흥·고도화	A-3.세액공제
조세특례 2	조특	6	조특6	2021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소득세)	국세청	소득세과	조특법상 조세지출	소득세	1.중소기업	110-114	110.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4.산업진흥·고도화	A-2-1.소득세,법인세 세액감면
조세특례 2-1	조특	6	조특6	2021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법인세)	국세청	법인세과	조특법상 조세지출	법인세	1.중소기업	110-114	110.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4.산업진흥·고도화	A-2-1.소득세,법인세 세액감면
조세특례 3	조특	7	조특7	2020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소득세)	국세청	소득세과	조특법상 조세지출	소득세	1.중소기업	110-114	110.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4.산업진흥·고도화	A-2-1.소득세,법인세 세액감면
조세특례 3-1	조특	7	조특7	2020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법인세)	국세청	법인세과	조특법상 조세지출	법인세	1.중소기업	110-114	110.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4.산업진흥·고도화	A-2-1.소득세,법인세 세액감면
조세특례 4	조특	7의4	조특7의4	2020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소득세)	국세청	소득세과	조특법상 조세지출	소득세	1.중소기업	110-114	110.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4.산업진흥·고도화	A-3.세액공제
조세특례 4-1	조특	7의4	조특7의4	2020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법인세)	국세청	법인세과	조특법상 조세지출	법인세	1.중소기업	110-114	110.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4.산업진흥·고도화	A-3.세액공제
조세특례 5	조특	8의3	조특8의3	2019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출연시 세액공제	국세청	법인세과	조특법상 조세지출	법인세	1.중소기업	110-114	110.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4.산업진흥·고도화	A-3.세액공제
조세특례 6	조특	10①	조특10①	일몰없음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소득세)	국세청	소득세과	조특법상 조세지출	소득세	2.연구개발	110-114	110.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4.산업진흥·고도화	A-3.세액공제
조세특례 6-1	조특	10①	조특10①	일몰없음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법인세)	국세청	법인세과	조특법상 조세지출	법인세	2.연구개발	110-114	110.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4.산업진흥·고도화	A-3.세액공제
조세특례 6-2	조특	10①1	조특10①1	일몰없음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신성장·원천기술](소득세)	국세청	소득세과	조특법상 조세지출	소득세	2.연구개발	110-114	110.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4.산업진흥·고도화	A-3.세액공제
조세특례 6-3	조특	10①1	조특10①1	일몰없음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신성장·원천기술](법인세)	국세청	법인세과	조특법상 조세지출	법인세	2.연구개발	110-114	110.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4.산업진흥·고도화	A-3.세액공제
조세특례 7	조특	10의2	조특10의2	2018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소득세)	국세청	소득세과	조특법상 조세지출	소득세	2.연구개발	110-114	110.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4.산업진흥·고도화	A-6-6-2.기타 (손금산입,익금불산입 등)
조세특례 7-1	조특	10의2	조특10의2	2018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법인세)	국세청	법인세과	조특법상 조세지출	법인세	2.연구개발	110-114	110.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4.산업진흥·고도화	A-6-6-2.기타 (손금산입,익금불산입 등)

구분	법	조문	법조문	일몰연도	내용	자료출처	부서명(과,계)	지출구분	분류방법					
									세목	조특 분류	예산 분류 기준			감면방법별 구분(15개구분항목선택)
											예산분류코드	예산분류 (분야)	예산분류 (부문)	
조세특례 8	조특	11	조특11	2018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소득세)	국세청	소득세과	조특법상 조세지출	소득세	2.연구개발	110-114	110.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4.산업진흥·고도화	A-3.세액공제
조세특례 8-1	조특	11	조특11	2018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법인세)	국세청	법인세과	조특법상 조세지출	법인세	2.연구개발	110-114	110.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4.산업진흥·고도화	A-3.세액공제
조세특례 9	조특	12	조특12	2018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세액공제)(소득세)	국세청	소득세과	조특법상 조세지출	소득세	2.연구개발	110-114	110.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4.산업진흥·고도화	A-3.세액공제
조세특례 9-1	조특	12	조특12	2018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세액공제)(법인세)	국세청	법인세과	조특법상 조세지출	법인세	2.연구개발	110-114	110.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4.산업진흥·고도화	A-3.세액공제
조세특례 10	조특	12의2	조특12의2	2018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소득세)	국세청	소득세과	조특법상 조세지출	소득세	2.연구개발	150-152	150.과학기술	152.과학기술연구지원	A-2-1.소득세,법인세 세액감면
조세특례 10-1	조특	12의2	조특12의2	2018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법인세)	국세청	법인세과	조특법상 조세지출	법인세	2.연구개발	150-152	150.과학기술	152.과학기술연구지원	A-2-1.소득세,법인세 세액감면
조세특례 11	조특	12의3	조특12의3	2018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국세청	법인세과	조특법상 조세지출	법인세	2.연구개발	110-114	110.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4.산업진흥·고도화	A-3.세액공제
조세특례 11-1	조특	12의4	조특12의4	2018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국세청	법인세과	조특법상 조세지출	법인세	2.연구개발	110-114	110.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4.산업진흥·고도화	A-3.세액공제
조세특례 12	조특	13	조특13	2020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국세청	법인세과	조특법상 조세지출	법인세	2.연구개발	110-114	110.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4.산업진흥·고도화	A-1.비과세
조세특례 13	조특	13의2	조특13의2	2019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세액공제]	국세청	법인세과	조특법상 조세지출	법인세	2.연구개발	110-114	110.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4.산업진흥·고도화	A-1.비과세
조세특례 14	조특	14	조특14	2020	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비과세]	국세청	법인세과	조특법상 조세지출	법인세	2.연구개발	110-114	110.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4.산업진흥·고도화	A-1.비과세
조세특례 15	조특	15	조특15	2020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법인세)	국세청	법인세과	조특법상 조세지출	법인세	2.연구개발	110-114	110.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4.산업진흥·고도화	A-2-1.소득세,법인세 세액감면
조세특례 16	조특	16	조특16	2020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원천)	국세청	원천세과	조특법상 조세지출	소득세	2.연구개발	110-114	110.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4.산업진흥·고도화	A-4.소득공제
조세특례 16-1	조특	16	조특16	2020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종소)	국세청	소득세과	조특법상 조세지출	소득세	2.연구개발	110-114	110.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4.산업진흥·고도화	A-4.소득공제
조세특례 17	조특	16의2	조특16의2	2020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소득세)	국세청	소득세과	조특법상 조세지출	소득세	2.연구개발	110-114	110.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4.산업진흥·고도화	A-1.비과세
조세특례 18	조특	16의 3,4	조특16의 3,4	2018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국세청	소득세과	조특법상 조세지출	소득세	2.연구개발	110-114	110.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4.산업진흥·고도화	B.간접감면 (준비금,과세이연 등)
조세특례 18-1	조특	16의 3,4	조특16의 3,4	2018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비과세]	국세청	원천세과	조특법상 조세지출	소득세	2.연구개발	110-114	110.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4.산업진흥·고도화	A-1.비과세

구분	법	조문	법조문	일몰연도	내용	자료출처	부서명(과,계)	지출구분	분류방법					
									세목	조특 분류	예산 분류 기준			감면방법별 구분(15개구분항목선택)
											예산분류코드	예산분류 (분야)	예산분류 (부문)	
조세특례19	조특	16의5	조특16의5	일몰없음	산업재산권 현물출자 이익에 대한 과세특례[과세이연]	국세청	원천세과	조특법상 조세지출	소득세	2.연구개발	110-114	110.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4.산업진흥·고도화	B.간접감면(준비금,과세이연 등)
조세특례20	조특	18	조특18	2018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원천)	국세청	원천세과	조특법상 조세지출	소득세	2.연구개발	110-113	110.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3.무역및투자유치	A-2-1.소득세,법인세 세액감면
조세특례20-1	조특	18	조특18	2018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종소)	국세청	소득세과	조특법상 조세지출	소득세	2.연구개발	110-113	110.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3.무역및투자유치	A-2-1.소득세,법인세 세액감면
조세특례21	조특	18의2	조특18의2	2018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저율과세]	국세청	국제세원과	조특법상 조세지출	소득세	2.연구개발	110-113	110.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3.무역및투자유치	A-5.저율과세
조세특례22	조특	20	조특20	일몰없음	공공차관 도입에 따른 과세특례(소득세)	국세청	소득세과	조특법상 조세지출	소득세	3.국제자본거래	010-014	10.일반공공행정	014.재정·금융	A-2-1.소득세,법인세 세액감면
조세특례22-1	조특	20	조특20	일몰없음	공공차관 도입에 따른 과세특례(법인세)	국세청	법인세과	조특법상 조세지출	법인세	3.국제자본거래	010-014	10.일반공공행정	014.재정·금융	A-2-1.소득세,법인세 세액감면
조세특례23	조특	21	조특21	일몰없음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소득세)	국세청	소득세과	조특법상 조세지출	소득세	3.국제자본거래	010-014	10.일반공공행정	014.재정·금융	A-2-1.소득세,법인세 세액감면
조세특례23-1	조특	21	조특21	일몰없음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법인세)	국세청	법인세과	조특법상 조세지출	법인세	3.국제자본거래	010-014	10.일반공공행정	014.재정·금융	A-2-1.소득세,법인세 세액감면
조세특례24	조특	24	조특24	2019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소득세)	국세청	소득세과	조특법상 조세지출	소득세	4.투자촉진	110-114	110.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4.산업진흥·고도화	A-3.세액공제
조세특례24-1	조특	24	조특24	2019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법인세)	국세청	법인세과	조특법상 조세지출	법인세	4.투자촉진	110-114	110.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4.산업진흥·고도화	A-3.세액공제
조세특례25	조특	25	조특25	2019	안전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소득세)	국세청	소득세과	조특법상 조세지출	소득세	4.투자촉진	080-086	80.사회복지	086.노동	A-3.세액공제
조세특례25-1	조특	25	조특25	2019	안전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법인세)	국세청	법인세과	조특법상 조세지출	법인세	4.투자촉진	080-086	80.사회복지	086.노동	A-3.세액공제
조세특례26	조특	25의2	조특25의2	2018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소득세)	국세청	소득세과	조특법상 조세지출	소득세	4.투자촉진	110-115	110.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5.에너지및자원개발	A-3.세액공제
조세특례26-1	조특	25의2	조특25의2	2018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법인세)	국세청	법인세과	조특법상 조세지출	법인세	4.투자촉진	110-115	110.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5.에너지및자원개발	A-3.세액공제
조세특례27	조특	25의3	조특25의3	2018	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소득세)	국세청	소득세과	조특법상 조세지출	소득세	4.투자촉진	070-076	70.환경	076.환경일반	A-3.세액공제
조세특례27-1	조특	25의3	조특25의3	2018	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법인세)	국세청	법인세과	조특법상 조세지출	법인세	4.투자촉진	070-076	70.환경	076.환경일반	A-3.세액공제

구분	법	조문	법조문	일몰연도	내용	자료출처	부서명(과,계)	지출구분	분류방법					
									세목	조특 분류	예산 분류 기준			감면방법별 구분(15개구분항목선택)
											예산분류코드	예산분류 (분야)	예산분류 (부문)	
조세특례 28	조특	25의4	조특25의4	2019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소득세)	국세청	소득세과	조특법상 조세지출	소득세	4.투자촉진	090-093	90.보건	093.식품의약안전	A-3.세액공제
조세특례 28-1	조특	25의4	조특25의4	2019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법인세)	국세청	법인세과	조특법상 조세지출	법인세	4.투자촉진	090-093	90.보건	093.식품의약안전	A-3.세액공제
조세특례 29	조특	25의5	조특25의5	2018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소득세)	국세청	소득세과	조특법상 조세지출	소득세	4.투자촉진	110-114	110.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4.산업진흥·고도화	A-3.세액공제
조세특례 29-1	조특	25의5	조특25의5	2018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법인세)	국세청	법인세과	조특법상 조세지출	법인세	4.투자촉진	110-114	110.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4.산업진흥·고도화	A-3.세액공제
조세특례 30	조특	25의6	조특25의6	2019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소득세)	국세청	소득세과	조특법상 조세지출	소득세	4.투자촉진	110-114	110.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061.문화예술	A-3.세액공제
조세특례 30-1	조특	25의6	조특25의6	2019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법인세)	국세청	법인세과	조특법상 조세지출	법인세	4.투자촉진	110-114	110.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061.문화예술	A-3.세액공제
조세특례 31	조특	28의3	조특28의3	2019	혁신성장 투자자산에 대한 가속상각(소득세)	국세청	소득세과	조특법상 조세지출	소득세	4.투자촉진	110-114	110.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4.산업진흥·고도화	A-6-6-2.기타 (손금산입,익금불산입 등)
조세특례 31-1	조특	28의3	조특28의3	2019	혁신성장 투자자산에 대한 가속상각(법인세)	국세청	법인세과	조특법상 조세지출	법인세	4.투자촉진	110-114	110.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4.산업진흥·고도화	A-6-6-2.기타 (손금산입,익금불산입 등)
조세특례 32	조특	29의2	조특29의2	2020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졸업자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중소기업 세액공제(소득세)	국세청	소득세과	조특법상 조세지출	소득세	5.고용지원	080-086	80.사회복지	086.노동	A-3.세액공제
조세특례 32-1	조특	29의2	조특29의2	2020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중소기업 세액공제(법인세)	국세청	법인세과	조특법상 조세지출	법인세	5.고용지원	080-086	80.사회복지	086.노동	A-3.세액공제
조세특례 33	조특	29의3	조특29의3	2020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소득세)	국세청	소득세과	조특법상 조세지출	소득세	5.고용지원	080-086	80.사회복지	086.노동	A-3.세액공제
조세특례 33-1	조특	29의3	조특29의3	2020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법인세)	국세청	법인세과	조특법상 조세지출	법인세	5.고용지원	080-086	80.사회복지	086.노동	A-3.세액공제
조세특례 34	조특	29의4	조특29의4	2020	근로소득증대세제(소득세)	국세청	원천세과	조특법상 조세지출	소득세	5.고용지원	080-086	80.사회복지	086.노동	A-3.세액공제
조세특례 34-1	조특	29의4	조특29의4	2020	근로소득증대세제(법인세)	국세청	법인세과	조특법상 조세지출	법인세	5.고용지원	080-086	80.사회복지	086.노동	A-3.세액공제
조세특례 35	조특	29의6	조특29의6	2018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	국세청	소득세과	조특법상 조세지출	소득세	5.고용지원	080-086	80.사회복지	086.노동	A-2-1.소득세,법인세 세액감면
조세특례 36	조특	29의7	조특29의7	2020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소득세)	국세청	소득세과	조특법상 조세지출	소득세	5.고용지원	080-086	80.사회복지	086.노동	A-3.세액공제
조세특례 36-1	조특	29의7	조특29의7	2020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법인세)	국세청	법인세과	조특법상 조세지출	법인세	5.고용지원	080-086	80.사회복지	086.노동	A-3.세액공제

구분	법	조문	법조문	일몰연도	내용	자료출처	부서명(과,계)	지출구분	분류방법					
									세목	조특 분류	예산 분류 기준			감면방법별 구분(15개구분항목선택)
											예산분류코드	예산분류 (분야)	예산분류 (부문)	
조세특례 37	조특	30	조특30	2018	중소기업에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원천)	국세청	원천세과	조특법상 조세지출	소득세	4.투자촉진	080-086	80.사회복지	086.노동	A-2-1.소득세,법인세 세액감면
조세특례 37-1	조특	30	조특30	2018	중소기업에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종소)	국세청	소득세과	조특법상 조세지출	소득세	5.고용지원	080-086	80.사회복지	086.노동	A-2-1.소득세,법인세 세액감면
조세특례 38	조특	30의2	조특30의2	2018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소득세)	국세청	소득세과	조특법상 조세지출	소득세	5.고용지원	080-086	80.사회복지	086.노동	A-3.세액공제
조세특례 38-1	조특	30의2	조특30의2	2018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법인세)	국세청	법인세과	조특법상 조세지출	법인세	5.고용지원	080-086	80.사회복지	086.노동	A-3.세액공제
조세특례 39	조특	30의3	조특30의3	2018	고용유지 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원천)	국세청	원천세과	조특법상 조세지출	소득세	5.고용지원	080-086	80.사회복지	086.노동	A-4.소득공제
조세특례 39-1	조특	30의3	조특30의3	2018	고용유지 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종소)	국세청	소득세과	조특법상 조세지출	소득세	5.고용지원	080-086	80.사회복지	086.노동	A-4.소득공제
조세특례 39-2	조특	30의3	조특30의3	2018	고용유지 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법인세)	국세청	법인세과	조특법상 조세지출	법인세	5.고용지원	080-086	80.사회복지	086.노동	A-4.소득공제
조세특례 40	조특	30의4	조특30의4	2018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소득세)	국세청	소득세과	조특법상 조세지출	소득세	5.고용지원	080-086	80.사회복지	086.노동	A-3.세액공제
조세특례 40-1	조특	30의4	조특30의4	2018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법인세)	국세청	법인세과	조특법상 조세지출	법인세	5.고용지원	080-086	80.사회복지	086.노동	A-3.세액공제
조세특례 41	조특	30의5	조특30의5	일몰없음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국세청	상속증여세과	조특법상 조세지출	증여세	6.기업구조조정	110-114	110.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4.산업진흥·고도화	A-5.저율과세
조세특례 42	조특	30의6	조특30의6	일몰없음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국세청	상속증여세과	조특법상 조세지출	증여세	6.기업구조조정	110-114	110.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4.산업진흥·고도화	A-5.저율과세
조세특례 43	조특	31,32	조특31,32	일몰없음	중소기업 간 통합 및 법인전환에 대한 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소득세)	국세청	부동산납세과	조특법상 조세지출	소득세	6.기업구조조정	110-114	110.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4.산업진흥·고도화	B.간접감면 (준비금,과세이연 등)
조세특례 43-1	조특	31,32	조특31,32	일몰없음	중소기업 간 통합 및 법인전환에 대한 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법인세)	국세청	법인세과	조특법상 조세지출	법인세	6.기업구조조정	110-114	110.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4.산업진흥·고도화	B.간접감면 (준비금,과세이연 등)
조세특례 44	조특	33①	조특33①	2018	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법인세)	국세청	부동산납세과	조특법상 조세지출	법인세	6.기업구조조정	110-114	110.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4.산업진흥·고도화	A-6-6-2.기타 (손금산입,익금불산입 등)
조세특례 45	조특	33의2	조특33의2	2018	사업전환 중소기업 및 무역조정 지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소득세)	국세청	부동산납세과	조특법상 조세지출	소득세	6.기업구조조정	110-114	110.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4.산업진흥·고도화	A-2-1.소득세,법인세 세액감면
조세특례 45-1	조특	33의2	조특33의2	2018	사업전환 중소기업 및 무역조정 지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법인세)	국세청	법인세과	조특법상 조세지출	법인세	6.기업구조조정	110-114	110.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4.산업진흥·고도화	A-2-1.소득세,법인세 세액감면

구분	법	조문	법조문	일몰연도	내용	자료출처	부서명(과,계)	지출구분	분류방법					
									세목	조특 분류	예산 분류 기준			감면방법별 구분(15개구분항목선택)
											예산분류코드	예산분류 (분야)	예산분류 (부문)	
조세특례 46	조특	34	조특34	2018	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법인세)	국세청	법인세과	조특법상 조세지출	법인세	6.기업구조조정	110-114	110.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4.산업진흥·고도화	B.간접감면 (준비금,과세이연 등)
조세특례 47	조특	37	조특37	일몰없음	자산의 포괄적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국세청	법인세과	조특법상 조세지출	법인세	6.기업구조조정	110-114	110.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4.산업진흥·고도화	B.간접감면 (준비금,과세이연 등)
조세특례 48	조특	38	조특38	일몰없음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국세청	소득세과	조특법상 조세지출	소득세	6.기업구조조정	110-114	110.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4.산업진흥·고도화	B.간접감면 (준비금,과세이연 등)
조세특례 48-1	조특	38	조특38	일몰없음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국세청	법인세과	조특법상 조세지출	법인세	6.기업구조조정	110-114	110.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4.산업진흥·고도화	B.간접감면 (준비금,과세이연 등)
조세특례 49	조특	38의2	조특38의2	2018	주식의 현물출자(교환·이전) 등에 의한 자주회사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양도세과세이연)-개인	국세청	부동산 납세과	조특법상 조세지출	소득세	6.기업구조조정	110-114	110.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4.산업진흥·고도화	B.간접감면 (준비금,과세이연 등)
조세특례 49-1	조특	38의2	조특38의2	2018	주식의 현물출자(교환·이전) 등에 의한 자주회사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손금산입)-법인	국세청	법인세과	조특법상 조세지출	법인세	6.기업구조조정	110-114	110.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4.산업진흥·고도화	B.간접감면 (준비금,과세이연 등)
조세특례 50	조특	38의3	조특38의3	2018	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 주식 등의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국세청	법인세과	조특법상 조세지출	법인세	6.기업구조조정	110-113	110.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3.무역및투자유치	B.간접감면 (준비금,과세이연 등)
조세특례 51	조특	39	조특39	2018	채무의 인수·변제에 대한 과세특례(재무구조개선계획)	국세청	법인세과	조특법상 조세지출	법인세	6.기업구조조정	110-113	110.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3.무역및투자유치	B.간접감면 (준비금,과세이연 등)
조세특례 52	조특	40	조특40	2018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소득세)	국세청	원천세과	조특법상 조세지출	소득세	6.기업구조조정	110-114	110.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4.산업진흥·고도화	A-6-6-2.기타 (손금산입,익금불산입 등)
조세특례 52-1	조특	40	조특40	2018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소득세)	국세청	부동산 납세과	조특법상 조세지출	소득세	6.기업구조조정	110-114	110.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4.산업진흥·고도화	A-2-2.양도세,증여세 세액감면
조세특례 52-2	조특	40	조특40	2018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법인세)	국세청	법인세과	조특법상 조세지출	법인세	6.기업구조조정	110-114	110.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4.산업진흥·고도화	B.간접감면 (준비금,과세이연 등)
조세특례 53	조특	44	조특44	2018	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국세청	법인세과	조특법상 조세지출	법인세	6.기업구조조정	110-114	110.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4.산업진흥·고도화	B.간접감면 (준비금,과세이연 등)
조세특례 54	조특	46의7	조특46의7	2018	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소득세)	국세청	부동산 납세과	조특법상 조세지출	소득세	6.기업구조조정	110-114	110.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4.산업진흥·고도화	B.간접감면 (준비금,과세이연 등)
조세특례 54-1	조특	46의7	조특46의7	2018	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법인세)	국세청	법인세과	조특법상 조세지출	법인세	6.기업구조조정	110-114	110.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4.산업진흥·고도화	B.간접감면 (준비금,과세이연 등)
조세특례 55	조특	46의8	조특46의8	2018	주식매각 후 벤처기업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양도소득세)	국세청	부동산 납세과	조특법상 조세지출	소득세	6.기업구조조정	110-114	110.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4.산업진흥·고도화	A-2-2.양도세,증여세 세액감면

구분	법	조문	법조문	일몰연도	내용	자료출처	부서명(과,계)	지출구분	분류방법					
									세목	조특 분류	예산 분류 기준			감면방법별 구분(15개구분항목선택)
											예산분류코드	예산분류 (분야)	예산분류 (부문)	
조세특례 56	조특	47의4	조특47의4	2018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따른 과세특례	국세청	법인세과	조특법상 조세지출	법인세	7.금융기관 구조조정	010-014	10.일반공공행정	014.재정·금융	B.간접감면 (준비금,과세이연 등)
조세특례 57	조특	52	조특52	2018	금융기관의 자산·부채 인수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국세청	법인세과	조특법상 조세지출	법인세	7.금융기관 구조조정	010-014	10.일반공공행정	014.재정·금융	A-6-6-2.기타 (손금산입,익금불산입 등)
조세특례 58	조특	55의2 ⑤	조특55의 2⑤	2018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소득공제)(소득세)	국세청	소득세과	조특법상 조세지출	소득세	7.금융기관 구조조정	080-088	80.사회복지	088.주택	A-4.소득공제
조세특례 58-1	조특	55의2 ⑤	조특55의 2⑤	2018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소득공제)(법인세)	국세청	법인세과	조특법상 조세지출	법인세	7.금융기관 구조조정	080-088	80.사회복지	088.주택	A-4.소득공제
조세특례 59	조특	60	조특60	2020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국세청	법인세과	조특법상 조세지출	법인세	8.지역균형 발전	140-142	140.국토 및 지역개발	142.지역 및 도시	A-6-6-2.기타 (손금산입,익금불산입 등)
조세특례 60	조특	61	조특61	2020	법인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데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국세청	법인세과	조특법상 조세지출	법인세	8.지역균형 발전	140-142	140.국토 및 지역개발	142.지역 및 도시	A-6-6-2.기타 (손금산입,익금불산입 등)
조세특례 61	조특	62	조특62	2018	공공기관이 혁신도시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국세청	법인세과	조특법상 조세지출	법인세	8.지역균형 발전	140-142	140.국토 및 지역개발	142.지역 및 도시	A-6-6-2.기타 (손금산입,익금불산입 등)
조세특례 62	조특	63	조특63	2020	수도권과밀억제권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소득세)	국세청	소득세과	조특법상 조세지출	소득세	8.지역균형 발전	140-142	140.국토 및 지역개발	142.지역 및 도시	A-2-1.소득세,법인세 세액감면
조세특례 62-1	조특	63	조특63	2020	수도권과밀억제권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법인세)	국세청	법인세과	조특법상 조세지출	법인세	8.지역균형 발전	140-142	140.국토 및 지역개발	142.지역 및 도시	A-2-1.소득세,법인세 세액감면
조세특례 63	조특	63의2	조특63의2	2020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국세청	법인세과	조특법상 조세지출	법인세	8.지역균형 발전	140-142	140.국토 및 지역개발	142.지역 및 도시	A-2-1.소득세,법인세 세액감면
조세특례 63-1	조특	63의2	조특63의2	2020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양도차익 과세이연)	국세청	법인세과	조특법상 조세지출	법인세	8.지역균형 발전	140-142	140.국토 및 지역개발	142.지역 및 도시	A-6-6-2.기타 (손금산입,익금불산입 등)
조세특례 64	조특	64	조특64	2018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소득세)	국세청	소득세과	조특법상 조세지출	소득세	8.지역균형 발전	140-142	140.국토 및 지역개발	142.지역 및 도시	A-2-1.소득세,법인세 세액감면
조세특례 64-1	조특	64	조특64	2018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법인세)	국세청	법인세과	조특법상 조세지출	법인세	8.지역균형 발전	140-142	140.국토 및 지역개발	142.지역 및 도시	A-2-1.소득세,법인세 세액감면
조세특례 65	조특	66	조특66	2018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및 조합원의 배당소득세 면제 등(법인세)	국세청	법인세과	조특법상 조세지출	법인세	8.지역균형 발전	100-101	100.농림수산	101.농업·농촌	A-2-1.소득세,법인세 세액감면

구분	법	조문	법조문	일몰연도	내용	자료출처	부서명(과,계)	지출구분	분류방법					
									세목	조특 분류	예산 분류 기준			감면방법별 구분(15개구분항목선택)
											예산분류코드	예산분류 (분야)	예산분류 (부문)	
조세특례 65-1	조특	66	조특66	2018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및 조합원의 배당소득세 면제 등(양도소득세 면제)	국세청	부동산 납세과	조특법상 조세지출	소득세	8.지역균형발전	100-101	100.농림수산	101.농업·농촌	A-2-2.양도세,증여세 세액감면
조세특례 65-2	조특	66	조특66	2018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및 조합원의 배당소득세 면제 등(현물출자시 이월과세)	국세청	부동산 납세과	조특법상 조세지출	소득세	8.지역균형발전	100-101	100.농림수산	101.농업·농촌	B.간접감면 (준비금,과세이연 등)
조세특례 65-3	조특	66	조특66	2018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및 조합원의 배당소득세 면제 등(배당소득 면제)	국세청	원천세과	조특법상 조세지출	소득세	8.지역균형발전	100-101	100.농림수산	101.농업·농촌	A-2-1.소득세,법인세 세액감면
조세특례 65-4	조특	66	조특66	2018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및 조합원의 배당소득세 면제 등(배당소득 저율과세)	국세청	원천세과	조특법상 조세지출	소득세	8.지역균형발전	100-101	100.농림수산	101.농업·농촌	A-5.저율과세
조세특례 66	조특	67	조특67	2018	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및 조합원의 배당소득세 면제 등(법인세)	국세청	법인세과	조특법상 조세지출	법인세	8.지역균형발전	100-103	100.농림수산	103.수산·어촌	A-2-1.소득세,법인세 세액감면
조세특례 66-1	조특	67	조특67	2018	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및 조합원의 배당소득세 면제 등(배당소득 면제)	국세청	원천세과	조특법상 조세지출	소득세	8.지역균형발전	100-103	100.농림수산	103.수산·어촌	A-2-1.소득세,법인세 세액감면
조세특례 66-2	조특	67	조특67	2018	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및 조합원의 배당소득세 면제 등(배당소득 저율과세)	국세청	원천세과	조특법상 조세지출	소득세	8.지역균형발전	100-103	100.농림수산	103.수산·어촌	A-5.저율과세
조세특례 66-3	조특	67	조특67	2018	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및 조합원의 배당소득세 면제 등(양도소득세 면제)	국세청	부동산 납세과	조특법상 조세지출	소득세	8.지역균형발전	100-103	100.농림수산	103.수산·어촌	A-2-2.양도세,증여세 세액감면
조세특례 67	조특	68	조특68	2018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 등(법인세 감면)	국세청	법인세과	조특법상 조세지출	법인세	8.지역균형발전	100-101	100.농림수산	101.농업·농촌	A-2-1.소득세,법인세 세액감면
조세특례 67-1	조특	68	조특68	2018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 등(농업인 양도소득세 감면)	국세청	부동산 납세과	조특법상 조세지출	소득세	8.지역균형발전	100-101	100.농림수산	101.농업·농촌	A-2-2.양도세,증여세 세액감면
조세특례 68	조특	69	조특69	일몰없음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국세청	부동산 납세과	조특법상 조세지출	소득세	8.지역균형발전	100-101	100.농림수산	101.농업·농촌	A-2-2.양도세,증여세 세액감면
조세특례 69	조특	69의2	조특69의2	2020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국세청	부동산 납세과	조특법상 조세지출	소득세	8.지역균형발전	100-101	100.농림수산	101.농업·농촌	A-2-2.양도세,증여세 세액감면

구분	법	조문	법조문	일몰연도	내용	자료출처	부서명(과,계)	지출구분	분류방법					
									세목	조특 분류	예산 분류 기준			감면방법별 구분(15개구분항목선택)
											예산분류코드	예산분류 (분야)	예산분류 (부문)	
조세특례 70	조특	69의3	조특69의3	2020	아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국세청	부동산 납세과	조특법상 조세지출	소득세	8.지역균형 발전	100-101	100.농림수산	101.농업·농촌	A-2-2.양도세,증여세 세액감면
조세특례 71	조특	69의4	조특69의4	일몰 없음	자경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국세청	부동산 납세과	조특법상 조세지출	소득세	8.지역균형 발전	100-101	100.농림수산	101.농업·농촌	A-2-2.양도세,증여세 세액감면
조세특례 72	조특	70	조특70	일몰 없음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국세청	부동산 납세과	조특법상 조세지출	소득세	8.지역균형 발전	100-101	100.농림수산	101.농업·농촌	A-2-2.양도세,증여세 세액감면
조세특례 73	조특	70의2	조특70의2	일몰 없음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국세청	부동산 납세과	조특법상 조세지출	소득세	8.지역균형 발전	100-101	100.농림수산	101.농업·농촌	B.간접감면 (준비금,과세이연 등)
조세특례 74	조특	71	조특71	2020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국세청	상속 증여세과	조특법상 조세지출	증여세	8.지역균형 발전	100-101	100.농림수산	101.농업·농촌	A-2-2.양도세,증여세 세액감면
조세특례 75	조특	72	조특72	2020	조합법인(농협·수협·신협 등)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국세청	법인세과	조특법상 조세지출	법인세	9.공익사업 지원	100-101	100.농림수산	101.농업·농촌	A-5.저율과세
조세특례 76	조특	74①	조특74①	2019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특례(학교법인·국립대학병원 등 비영리법인)	국세청	법인세과	조특법상 조세지출	법인세	9.공익사업 지원	080-089	80.사회복지	089.사회복지일반	B.간접감면 (준비금,과세이연 등)
조세특례 77	조특	74④	조특74④	2019	고유목적 사업준비금 손금산입특례(지방 시문소재 비영리의료법인)	국세청	법인세과	조특법상 조세지출	법인세	9.공익사업 지원	090-091	90.보건	091.보건의료	A-6-6-2.기타 (손금산입,익금불산입 등)
조세특례 78	조특	75	조특75	일몰 없음	기부장려금(소득세)	국세청	소득세과	조특법상 조세지출	소득세	9.공익사업 지원	080-089	80.사회복지	089.사회복지일반	A-3.세액공제
조세특례 78-1	조특	75	조특75	일몰 없음	기부장려금(법인세)	국세청	법인세과	조특법상 조세지출	법인세	9.공익사업 지원	080-089	80.사회복지	089.사회복지일반	A-3.세액공제
조세특례 79	조특	76	조특76	일몰 없음	정치자금의 손금산입특례 등(소득공제)-원천	국세청	소득세과	조특법상 조세지출	소득세	9.공익사업 지원	010-011	10.일반공공행정	011.입법및선거관리	A-4.소득공제
조세특례 79-1	조특	76	조특76	일몰 없음	정치자금의 손금산입특례 등(소득공제)-원천	국세청	원천세과	조특법상 조세지출	소득세	9.공익사업 지원	010-011	10.일반공공행정	011.입법및선거관리	A-4.소득공제
조세특례 79-2	조특	76	조특76	일몰 없음	정치자금의 손금산입특례 등(세액공제)-원천	국세청	원천세과	조특법상 조세지출	소득세	9.공익사업 지원	010-011	10.일반공공행정	011.입법및선거관리	A-3.세액공제
조세특례 79-3	조특	76	조특76	일몰 없음	정치자금의 손금산입특례 등(세액공제)-종소	국세청	소득세과	조특법상 조세지출	소득세	9.공익사업 지원	010-011	10.일반공공행정	011.입법및선거관리	A-3.세액공제
조세특례 80	조특	77	조특77	2018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국세청	부동산 납세과	조특법상 조세지출	소득세	9.공익사업 지원	140-142	140.국토 및 지역개발	142.지역및도시	A-2-2.양도세,증여세 세액감면
조세특례 81	조특	77의2	조특77의2	2018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과세이연)	국세청	부동산 납세과	조특법상 조세지출	소득세	9.공익사업 지원	140-142	140.국토 및 지역개발	142.지역및도시	B.간접감면 (준비금,과세이연 등)

구분	법	조문	법조문	일몰연도	내용	자료출처	부서명(과,계)	지출구분	분류방법					감면방법별 구분(15개구분항목선택)
									세목	조특 분류	예산 분류 기준			
											예산분류코드	예산분류 (분야)	예산분류 (부문)	
조세특례 81-4	조특	77의2	조특77의2	2018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양도소득세 감면)	국세청	부동산 납세과	조특법상 조세지출	소득세	9.공익사업 지원	140-142	140.국토 및 지역개발	142.지역및도시	A-2-2.양도세,증여세 세액감면
조세특례 82	조특	77의3	조특77의3	2020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국세청	부동산 납세과	조특법상 조세지출	소득세	9.공익사업 지원	140-142	140.국토 및 지역개발	142.지역및도시	A-2-2.양도세,증여세 세액감면
조세특례 83	조특	83	조특83	2019	박물관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	국세청	부동산 납세과	조특법상 조세지출	양도소득세	9.공익사업 지원	060-061	60.문화 및 관광	061.문화예술	A-2-2.양도세,증여세 세액감면
조세특례 84	조특	85의6 ①	조특85의6 ①	2019	사회적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소득세)	국세청	소득세과	조특법상 조세지출	소득세	9.공익사업 지원	080-086	80.사회복지	086.노동	A-2-1.소득세,법인세 세액감면
조세특례 84-1	조특	85의6 ①	조특85의6 ①	2019	사회적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법인세)	국세청	법인세과	조특법상 조세지출	법인세	9.공익사업 지원	080-086	80.사회복지	086.노동	A-2-1.소득세,법인세 세액감면
조세특례 84-2	조특	85의6 ②	조특85의6 ②	2019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소득세)	국세청	소득세과	조특법상 조세지출	소득세	9.공익사업 지원	080-086	80.사회복지	086.노동	A-2-1.소득세,법인세 세액감면
조세특례 84-3	조특	85의6 ②	조특85의6 ②	2019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법인세)	국세청	법인세과	조특법상 조세지출	법인세	9.공익사업 지원	080-086	80.사회복지	086.노동	A-2-1.소득세,법인세 세액감면
조세특례 85	조특	85의7	조특85의7	2018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등에 따른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소득세)	국세청	부동산 납세과	조특법상 조세지출	소득세	9.공익사업 지원	140-142	140.국토 및 지역개발	142.지역및도시	B.간접감면 (준비금,과세이연 등)
조세특례 85-1	조특	85의7	조특85의7	2018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등에 따른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법인세)	국세청	법인세과	조특법상 조세지출	법인세	9.공익사업 지원	140-142	140.국토 및 지역개발	142.지역및도시	B.간접감면 (준비금,과세이연 등)
조세특례 86	조특	85의8	조특85의8	2020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소득세)	국세청	부동산 납세과	조특법상 조세지출	소득세	9.공익사업 지원	110-114	110.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4.산업진흥·고도화	B.간접감면 (준비금,과세이연 등)
조세특례 86-1	조특	85의8	조특85의8	2020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법인세)	국세청	법인세과	조특법상 조세지출	법인세	9.공익사업 지원	110-114	110.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4.산업진흥·고도화	B.간접감면 (준비금,과세이연 등)
조세특례 87	조특	85의9	조특85의9	2018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물류시설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소득세)	국세청	소득세과	조특법상 조세지출	소득세	9.공익사업 지원	120-126	120.교통 및 물류	126.물류등기타	B.간접감면 (준비금,과세이연 등)
조세특례 87-1	조특	85의9	조특85의9	2018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물류시설이전에 대한 과세특례(법인세)	국세청	법인세과	조특법상 조세지출	법인세	9.공익사업 지원	120-126	120.교통 및 물류	126.물류등기타	B.간접감면 (준비금,과세이연 등)
조세특례 88	조특	85의10	조특85의10	2020	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국세청	부동산 납세과	조특법상 조세지출	소득세	9.공익사업 지원	100-102	100.농림수산	102.임업·산촌	A-2-2.양도세,증여세 세액감면
조세특례 89	조특	86의3	조특86의3	일몰없음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원천)	국세청	원천세과	조특법상 조세지출	소득세	10.저축지원	110-114	110.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4.산업진흥·고도화	A-4.소득공제
조세특례 89-1	조특	86의3	조특86의3	일몰없음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종소)	국세청	소득세과	조특법상 조세지출	소득세	10.저축지원	110-114	110.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4.산업진흥·고도화	A-4.소득공제

구분	법	조문	법조문	일몰연도	내용	자료출처	부서명(과,계)	지출구분	분류방법					
									세목	조특 분류	예산 분류 기준			감면방법별 구분(15개구분항목선택)
											예산분류코드	예산분류 (분야)	예산분류 (부문)	
조세특례 90	조특	87②	조특87②	2019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원천)	국세청	원천세과	조특법상 조세지출	소득세	10.저축지원	080-088	80.사회복지	088.주택	A-4.소득공제
조세특례 91-1	조특	87②	조특87②	2019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종소)	국세청	소득세과	조특법상 조세지출	소득세	10.저축지원	080-088	80.사회복지	088.주택	A-4.소득공제
조세특례 91	조특	87의2	조특87의2	2020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국세청	원천세과	조특법상 조세지출	소득세	10.저축지원	010-014	10.일반공공행정	014.재정·금융	A-1.비과세
조세특례 92	조특	87의6	조특87의6	2018	부동산집합투자기구등 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국세청	원천세과	조특법상 조세지출	소득세	10.저축지원	080-088	80.사회복지	088.주택	A-5.저율과세
조세특례 93	조특	88의2	조특88의2	2019	비과세 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노인·장애인 등의 생계형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국세청	원천세과	조특법상 조세지출	소득세	10.저축지원	080-089	80.사회복지	089.사회복지일반	A-1.비과세
조세특례 93-1	조특	88의2	조특88의2	2019	비과세 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노인·장애인 등의 생계형저축 배당소득 비과세)	국세청	원천세과	조특법상 조세지출	소득세	10.저축지원	080-089	80.사회복지	089.사회복지일반	A-1.비과세
조세특례 94	조특	88의4	조특88의4	일몰없음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소득공제)(원천)	국세청	원천세과	조특법상 조세지출	소득세	10.저축지원	080-086	80.사회복지	086.노동	A-4.소득공제
조세특례 94-1	조특	88의4	조특88의4	일몰없음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소득공제)(종소)	국세청	소득세과	조특법상 조세지출	소득세	10.저축지원	080-086	80.사회복지	086.노동	A-4.소득공제
조세특례 94-2	조특	88의4	조특88의4	일몰없음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출연금에 대한 배당소득 비과세)	국세청	원천세과	조특법상 조세지출	소득세	10.저축지원	080-086	80.사회복지	086.노동	A-1.비과세
조세특례 94-3	조특	88의4	조특88의4	일몰없음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자사주 배정시 소득세 비과세)	국세청	원천세과	조특법상 조세지출	소득세	10.저축지원	080-086	80.사회복지	086.노동	A-1.비과세
조세특례 95	조특	88의5, 89의3	조특88의5, 89의3	2018	조합 등 출자금에 대한 과세특례(배당소득 비과세 등)	국세청	원천세과	조특법상 조세지출	소득세	10.저축지원	100-101	100.농림수산	101.농업·농촌	A-1.비과세
조세특례 95-1	조특	88의5, 89의3	조특88의5, 89의3	2018	조합 등 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이자소득 비과세 등)	국세청	원천세과	조특법상 조세지출	소득세	10.저축지원	100-101	100.농림수산	101.농업·농촌	A-1.비과세
조세특례 95-2	조특	88의5, 89의3	조특88의5, 89의3	2018	조합 등 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이자소득 비과세 등, 저율과세)	국세청	원천세과	조특법상 조세지출	소득세	10.저축지원	100-101	100.농림수산	101.농업·농촌	A-1.비과세
조세특례 96	조특	91의 18	조특91의 18	2018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한 과세특례	국세청	원천세과	조특법상 조세지출	소득세	10.저축지원	010-014	10.일반공공행정	014.재정·금융	A-1.비과세

구분	법	조문	법조문	일몰연도	내용	자료출처	부서명(과,계)	지출구분	분류방법					
									세목	조특 분류	예산 분류 기준			감면방법별 구분(15개구분항목선택)
											예산분류코드	예산분류 (분야)	예산분류 (부문)	
조세특례97	조특	91의19	조특91의19	2021	장병내일준비적금 이자소득비과세	국세청	원천세과	조특법상 조세지출	소득세	10.저축 지원	010-014	10.일반공공행정	014.재정·금융	A-1.비과세
조세특례98	조특	94	조특94	2018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소득세)	국세청	소득세과	조특법상 조세지출	소득세	11.국민 생활안정	080-086	80.사회복지	086.노동	A-3.세액공제
조세특례98-1	조특	94	조특94	2018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법인세)	국세청	법인세과	조특법상 조세지출	법인세	11.국민 생활안정	080-086	80.사회복지	086.노동	A-3.세액공제
조세특례99	조특	95의2	조특95의2	일몰없음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국세청	원천세과	조특법상 조세지출	소득세	11.국민 생활안정	080-088	80.사회복지	088.주택	A-3.세액공제
조세특례100	조특	96	조특96	2019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소득세)	국세청	소득세과	조특법상 조세지출	소득세	11.국민 생활안정	080-088	80.사회복지	088.주택	A-2-1.소득세,법인세 세액감면
조세특례100-1	조특	96	조특96	2019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법인세)	국세청	법인세과	조특법상 조세지출	법인세	11.국민 생활안정	080-088	80.사회복지	088.주택	A-2-1.소득세,법인세 세액감면
조세특례101	조특	97의3	조특97의3	일몰없음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국세청	부동산 납세과	조특법상 조세지출	소득세	11.국민 생활안정	080-088	80.사회복지	088.주택	A-4.소득공제
조세특례102	조특	97의4	조특97의4	일몰없음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국세청	부동산 납세과	조특법상 조세지출	소득세	11.국민 생활안정	080-088	80.사회복지	088.주택	A-4.소득공제
조세특례103	조특	97의5	조특97의5	2018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액감면	국세청	부동산 납세과	조특법상 조세지출	소득세	11.국민 생활안정	080-088	80.사회복지	088.주택	A-2-1.소득세,법인세 세액감면
조세특례104	조특	97의7	조특97의7	2018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국세청	부동산 납세과	조특법상 조세지출	소득세	11.국민 생활안정	080-088	80.사회복지	088.주택	A-2-1.소득세,법인세 세액감면
조세특례105	조특	97의8	조특97의8	2019	공모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과세이연)	국세청	법인세과	조특법상 조세지출	법인세	11.국민 생활안정	080-088	80.사회복지	088.주택	B.간접감면 (준비금,과세이연 등)
조세특례106	조특	99의4	조특99의4	2020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국세청	부동산 납세과	조특법상 조세지출	소득세	11.국민 생활안정	100-101	100.농림수산	101.농업·농촌	A-2-2.양도세,증여세 세액감면
조세특례107	조특	99의9	조특99의9	2021	위기지역 내 창업기업 세액감면(소득세)	국세청	소득세과	조특법상 조세지출	소득세	11.국민 생활안정	140-142	140.국토 및 지역개발	142.지역및도시	A-2-1.소득세,법인세 세액감면
조세특례107-1	조특	99의9	조특99의9	2021	위기지역 내 창업기업 세액감면(법인세)	국세청	법인세과	조특법상 조세지출	법인세	11.국민 생활안정	140-142	140.국토 및 지역개발	142.지역및도시	A-2-1.소득세,법인세 세액감면
조세특례108	조특	100의2-13	조특100의2-13	일몰없음	근로장려금 지급	국세청	장려세제 운영과	조특법상 조세지출	소득세	12.근로 자녀장려	080-081	80.사회복지	081.기초생활보장	A-6-1.근로장려세제
조세특례109	조특	100의27-31	조특100의27-31	일몰없음	자녀장려금 지급	국세청	장려세제 운영과	조특법상 조세지출	소득세	12.근로 자녀장려	080-081	80.사회복지	081.기초생활보장	A-6-1.근로장려세제
조세특례110	조특	101	조특101	2020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	국세청	상속 증여세과	조특법상 조세지출	상속세	13.기타 직접국세	110-114	110.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4.산업진흥·고도화	A-6-6-2.기타 (손금산입,익금불산입 등)

구분	법	조문	법조문	일몰연도	내용	자료출처	부서명(과,계)	지출구분	분류방법					
									세목	조특 분류	예산 분류 기준			감면방법별 구분(15개구분항목선택)
											예산분류코드	예산분류 (분야)	예산분류 (부문)	
조세특례 111-1	조특	102	조특102	2018	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소득세)	국세청	소득세과	조특법상 조세지출	소득세	13.기타직접 국세	100-102	100.농림수산	102.임업·산촌	A-2-1.소득세,법인세 세액감면
조세특례 111	조특	102	조특102	2018	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법인세)	국세청	법인세과	조특법상 조세지출	법인세	13.기타직접 국세	100-102	100.농림수산	102.임업·산촌	A-2-1.소득세,법인세 세액감면
조세특례 112	조특	104의3	조특104의3	2021	자본확충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법인세)	국세청	법인세과	조특법상 조세지출	법인세	13.기타직접 국세	010-014	10.일반공공행정	014.재정·금융	A-6-6-2.기타 (손금산입,익금불산입 등)
조세특례 113	조특	104의8	조특104의8	일몰없음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소득세)	국세청	소득세과	조특법상 조세지출	소득세	13.기타직접 국세	010-014	10.일반공공행정	014.재정·금융	A-3.세액공제
조세특례 113-1	조특	104의8	조특104의8	일몰없음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법인세)	국세청	법인세과	조특법상 조세지출	법인세	13.기타직접 국세	010-014	10.일반공공행정	014.재정·금융	A-3.세액공제
조세특례 113-2	조특	104의8	조특104의8	일몰없음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부가세)	국세청	부가세과	조특법상 조세지출	부가가치세	13.기타직접 국세	010-014	10.일반공공행정	014.재정·금융	A-3.세액공제
조세특례 114	조특	104의 11	조특104의 11	2018	금융기관의 신용회복목적회사 출자출연 시 손금산입 특례	국세청	법인세과	조특법상 조세지출	법인세	13.기타직접 국세	010-014	10.일반공공행정	014.재정·금융	B.간접감면 (준비금,과세이연 등)
조세특례 115	조특	104의 12	조특104의 12	2018	신용회복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국세청	법인세과	조특법상 조세지출	법인세	13.기타직접 국세	010-014	10.일반공공행정	014.재정·금융	B.간접감면 (준비금,과세이연 등)
조세특례 116	조특	104의 14	조특104의 14	2018	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소득세)	국세청	소득세과	조특법상 조세지출	소득세	13.기타직접 국세	120-124	120.교통 및 물류	124.해운·항만	A-3.세액공제
조세특례 116-1	조특	104의 14	조특104의 14	2018	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법인세)	국세청	법인세과	조특법상 조세지출	법인세	13.기타직접 국세	120-124	120.교통 및 물류	124.해운·항만	A-3.세액공제
조세특례 117	조특	104의 16	조특104의 16	일몰없음	대학 재정 건전화를 위한 과세특례	국세청	법인세과	조특법상 조세지출	법인세	13.기타직접 국세	050-052	50.교육	052.고등교육	A-6-6-2.기타 (손금산입,익금불산입 등)
조세특례 118	조특	104의 18	조특104의 18	2019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소득세)	국세청	소득세과	조특법상 조세지출	소득세	13.기타직접 국세	050-052	50.교육	052.고등교육	A-3.세액공제
조세특례 118-1	조특	104의 18	조특104의 18	2019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법인세)	국세청	법인세과	조특법상 조세지출	법인세	13.기타직접 국세	050-052	50.교육	052.고등교육	A-3.세액공제
조세특례 119	조특	104의 19	조특104의 19	일몰없음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국세청	부동산 납세과	조특법상 조세지출	소득세	13.기타직접 국세	080-088	80.사회복지	088.주택	A-1.비과세
조세특례 120	조특	104의 21	조특104의 21	일몰없음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의 합병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국세청	법인세과	조특법상 조세지출	법인세	13.기타직접 국세	080-088	80.사회복지	088.주택	B.간접감면 (준비금,과세이연 등)
조세특례 121	조특	104의 22	조특104의 22	일몰없음	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운영에 대한 과세특례	국세청	법인세과	조특법상 조세지출	법인세	13.기타직접 국세	060-063	60.문화 및 관광	063.체육	A-3.세액공제
조세특례 122	조특	104의 24	조특104의 24	2018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소득세)	국세청	소득세과	조특법상 조세지출	소득세	13.기타직접 국세	080-086	80.사회복지	086.노동	A-2-1.소득세,법인세 세액감면

구분	법	조문	법조문	일몰연도	내용	자료출처	부서명(과,계)	지출구분	분류방법					
									세목	조특 분류	예산 분류 기준			감면방법별 구분(15개구분항목선택)
											예산분류코드	예산분류 (분야)	예산분류 (부문)	
조세특례 122-1	조특	104의 24	조특104의 24	2018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법인세)	국세청	법인세과	조특법상 조세지출	법인세	13.기타 직접국세	080-086	80.사회복지	086.노동	A-2-1.소득세,법인세 세액감면
조세특례 123	조특	104의 25	조특104의 25	2019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소득세)	국세청	소득세과	조특법상 조세지출	소득세	13.기타 직접국세	110-115	110.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5.에너지 및 자원개발	A-3.세액공제
조세특례 123-1	조특	104의 25	조특104의 25	2019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법인세)	국세청	법인세과	조특법상 조세지출	법인세	13.기타 직접국세	110-115	110.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5.에너지 및 자원개발	A-3.세액공제
조세특례 124	조특	104의 26	조특104의 26	2020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 포기액의 손금산입	국세청	법인세과	조특법상 조세지출	법인세	13.기타 직접국세	080-088	80.사회복지	088.주택	A-6-6-2.기타 (손금산입,익금불산입 등)
조세특례 125	조특	104의 28	조특104의 28	2018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에 대한 과세특례	국세청	국제 세원과	조특법상 조세지출	법인세	13.기타 직접국세	060-063	60.문화 및 관광	063.체육	A-1.비과세
조세특례 125-1	조특	107⑨	조특107⑨	2018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개최 지원(외국사업자 부가세 환급)	국세청	부가세과	조특법상 조세지출	부가 가치세	14.간접국세	060-063	60.문화 및 관광	063.체육	A-6-3.부가가치세 면제
조세특례 126	조특	104의 29	조특104의 29	2019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대한 과세특례(부가세 매입세액)	국세청	부가세과	조특법상 조세지출	부가 가치세	14.간접국세	060-063	60.문화 및 관광	063.체육	A-6-6-1.기타(매입세액공제특례 등)
조세특례 127	조특	105① 1,2	조특105① 1,2	일몰 없음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방위산업물자) [군부대 석유류 제외]	국세청	부가세과	조특법상 조세지출	부가 가치세	14.간접국세	040-043	40.국방	043.방위력개선	A-6-2.부가가치세 영세율
조세특례 128	조특	105① 3,3의2	조특105① 3, 3의2	2018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도시철도 건설용역) [사회기반시설 제외]	국세청	부가세과	조특법상 조세지출	부가 가치세	14.간접국세	120-123	120.교통 및 물류	123.도시철도	A-6-2.부가가치세 영세율
조세특례 129	조특	105①4	조특105①4	일몰 없음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장애인용 보장구 등)	국세청	부가세과	조특법상 조세지출	부가 가치세	14.간접국세	080-082	80.사회복지	082.취약계층지원	A-6-2.부가가치세 영세율
조세특례 130	조특	105①5	조특105①5	2020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농업·축산업·임업용 기자재, 농협중복분 제거)	국세청	부가세과	조특법상 조세지출	부가 가치세	14.간접국세	100-101	100.농림수산	101.농업·농촌	A-6-2.부가가치세 영세율
조세특례 130-1	조특	105①6	조특105①6	2020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어업용 기자재)	국세청	부가세과	조특법상 조세지출	부가 가치세	14.간접국세	100-101	100.농림수산	101.농업·농촌	A-6-2.부가가치세 영세율
조세특례 133	조특	106①2	조특106①2	2018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공장·학교 등의 급식용역제공)	국세청	부가세과	조특법상 조세지출	부가 가치세	14.간접국세	050-054	50.교육	054.교육일반	A-6-3.부가가치세 면제
조세특례 134	조특	106①3	조특106①3	2018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농·어업경영 및 농·어 작업의 대행용역)	국세청	부가세과	조특법상 조세지출	부가 가치세	14.간접국세	100-101	100.농림수산	101.농업·농촌	A-6-3.부가가치세 면제
조세특례 135	조특	106①4	조특106①4	일몰 없음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국민주택 및 건설용역)	국세청	부가세과	조특법상 조세지출	부가 가치세	14.간접국세	080-088	80.사회복지	088.주택	A-6-3.부가가치세 면제

구분	법	조문	법조문	일몰연도	내용	자료출처	부서명(과,계)	지출구분	분류방법					
									세목	조특 분류	예산 분류 기준			감면방법별 구분(15개구분항목선택)
											예산분류코드	예산분류 (분야)	예산분류 (부문)	
조세특례 136	조특	106① 4의2, 4의3	조특106① 4의2, 4의3	2020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공동주택 관리용역)	국세청	부가세과	조특법상 조세지출	부가가치세	14.간접국세	080-088	80.사회복지	088.주택	A-6-3.부가가치세 면제
조세특례 137	조특	106① 4의4	조특106① 4의4	일몰없음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노인복지주택 관리용역)	국세청	부가세과	조특법상 조세지출	부가가치세	14.간접국세	080-085	80.사회복지	085.노인·청소년	A-6-3.부가가치세 면제
조세특례 138	조특	106① 4의5	조특106① 4의5	2018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	국세청	부가세과	조특법상 조세지출	부가가치세	14.간접국세	080-088	80.사회복지	088.주택	A-6-3.부가가치세 면제
조세특례 140	조특	106① 8의2	조특106① 8의2	일몰없음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대학생기숙사에 대한관리용역)	국세청	부가세과	조특법상 조세지출	부가가치세	14.간접국세	080-088	80.사회복지	088.주택	A-6-3.부가가치세 면제
조세특례 142	조특	106① 9의2	조특106① 9의2	2020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시내버스, 마을버스용 전기버스 공급)	국세청	부가세과	조특법상 조세지출	부가가치세	14.간접국세	070-073	70.환경	073.대기	A-6-3.부가가치세 면제
조세특례 143	조특	106① 9의3	조특106① 9의3	2020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개인택시용 차량 구입비)	국세청	부가세과	조특법상 조세지출	부가가치세	14.간접국세	120-126	120.교통 및 물류	126.물류등기타	A-6-3.부가가치세 면제
조세특례 144	조특	106① 10	조특106① 10	일몰없음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희귀병 치료제)	국세청	부가세과	조특법상 조세지출	부가가치세	14.간접국세	090-091	90.보건	091.보건의료	A-6-3.부가가치세 면제
조세특례 145	조특	106① 11	조특106① 11	2020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영유아용 기저귀, 분유, 액상형분유)	국세청	부가세과	조특법상 조세지출	부가가치세	14.간접국세	080-084	80.사회복지	084.보육·가족 및여성	A-6-3.부가가치세 면제
조세특례 146	조특	106① 12	조특106① 12	2020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임산물중 목재펠릿)	국세청	부가세과	조특법상 조세지출	부가가치세	14.간접국세	100-102	100.농림수산	102.임업·산촌	A-6-3.부가가치세 면제
조세특례 151	조특	106의7	조특106의7	2018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국세청	부가세과	조특법상 조세지출	부가가치세	14.간접국세	120-126	120.교통 및 물류	126.물류등기타	A-6-3.부가가치세 면제
조세특례 152	조특	107의2	조특107의2	2018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호텔숙박료 환급)	국세청	부가세과	조특법상 조세지출	부가가치세	14.간접국세	060-063	60.문화 및 관광	063.체육	A-6-3.부가가치세 면제
조세특례 153	조특	107의3	조특107의3	2018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환급 특례 (2017.3.31)	국세청	부가세과	조특법상 조세지출	부가가치세	14.간접국세	060-062	60.문화 및 관광	062.관광	A-6-6-1.기타(매입세액공제특례 등)
조세특례 154	조특	108	조특108	2018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국세청	부가세과	조특법상 조세지출	부가가치세	14.간접국세	070-072	70.환경	072.폐기물	A-6-6-1.기타(매입세액공제특례 등)

구분	법	조문	법조문	일몰연도	내용	자료출처	부서명(과,계)	지출구분	분류방법					
									세목	조특 분류	예산 분류 기준			감면방법별 구분(15개구분항목선택)
											예산분류코드	예산분류 (분야)	예산분류 (부문)	
조세특례 155	조특	109①	조특109①	2018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하이브리드 자동차, 개별소비세)	국세청	소비세과	조특법상 조세지출	개별소비세	14.간접국세	110-114	110.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4.산업진흥·고도화	A-6-4.개별소비세,교통세,교육세 면제
조세특례 155-1	조특	109①	조특109①	2018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하이브리드 자동차 교육세, 30%)	국세청	소비세과	조특법상 조세지출	교육세	14.간접국세	110-114	110.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4.산업진흥·고도화	A-6-4.개별소비세,교통세,교육세 면제
조세특례 156	조특	109④	조특109④	2020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전기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국세청	소비세과	조특법상 조세지출	개별소비세	14.간접국세	070-073	70.환경	073.대기	A-6-4.개별소비세,교통세,교육세 면제
조세특례 156-1	조특	109④	조특109④	2020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전기자동차 교육세, 30%)	국세청	소비세과	조특법상 조세지출	교육세	14.간접국세	070-073	70.환경	073.대기	A-6-4.개별소비세,교통세,교육세 면제
조세특례 157	조특	109⑦	조특109⑦	2019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연료전지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국세청	소비세과	조특법상 조세지출	개별소비세	14.간접국세	110-114	110.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4.산업진흥·고도화	A-6-4.개별소비세,교통세,교육세 면제
조세특례 157-1	조특	109⑦	조특109⑦	2019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연료전지자동차 교육세, 30%)	국세청	소비세과	조특법상 조세지출	교육세	14.간접국세	110-114	110.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4.산업진흥·고도화	A-6-4.개별소비세,교통세,교육세 면제
조세특례 158	조특	109의2	조특109의2	2019	노후경유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국세청	소비세과	조특법상 조세지출	개별소비세	14.간접국세	110-114	110.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4.산업진흥·고도화	A-6-4.개별소비세,교통세,교육세 면제
조세특례 158-1	조특	109의2	조특109의2	2019	노후경유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교육세)	국세청	소비세과	조특법상 조세지출	교육세	14.간접국세	110-114	110.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4.산업진흥·고도화	A-6-4.개별소비세,교통세,교육세 면제
조세특례 159	조특	110	조특110	일몰 없음	외교관용 등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국세청	소비세과	조특법상 조세지출	개별소비세	14.간접국세	030-032	30.외교·통일	032.외교·통상	A-6-4.개별소비세,교통세,교육세 면제
조세특례 159-1	조특	110	조특110	일몰 없음	외교관용 등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교육세, 30%)	국세청	소비세과	조특법상 조세지출	교육세	14.간접국세	030-032	30.외교·통일	032.외교·통상	A-6-4.개별소비세,교통세,교육세 면제
조세특례 160	조특	111의2	조특111의2	2018	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국세청	소비세과	조특법상 조세지출	개별소비세	14.간접국세	110-114	110.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4.산업진흥·고도화	A-6-4.개별소비세,교통세,교육세 면제
조세특례 161	조특	111의3	조특111의3	2018	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면제	국세청	소비세과	조특법상 조세지출	개별소비세	14.간접국세	120-126	120.교통 및 물류	126.물류등기타	A-6-4.개별소비세,교통세,교육세 면제
조세특례 161-1	조특	111의3	조특111의3	2018	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면제(교육세 면제(15%)	국세청	소비세과	조특법상 조세지출	교육세	14.간접국세	120-126	120.교통 및 물류	126.물류등기타	A-6-4.개별소비세,교통세,교육세 면제

구분	법	조문	법조문	일몰연도	내용	자료출처	부서명(과,계)	지출구분	분류방법					
									세목	조특 분류	예산 분류 기준			감면방법별 구분(15개구분항목선택)
											예산분류코드	예산분류 (분야)	예산분류 (부문)	
조세특례 162	조특	111의4	조특111의4	일몰 없음	외교관용 등 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환급	국세청	소비세과	조특법상 조세지출	개별 소비세	14.간접국세	030-032	30.외교·통일	032.외교·통상	A-6-4.개별소비세,교통세, 교육세 면제
조세특례 163	조특	114	조특114	일몰 없음	군인 등에게 판매하는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국세청	소비세과	조특법상 조세지출	개별 소비세	14.간접국세	040-042	40.국방	042.전력유지	A-6-4.개별소비세,교통세, 교육세 면제
조세특례 163-1	조특	114	조특114	일몰 없음	군인 등에게 판매하는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교육세, 30%)	국세청	소비세과	조특법상 조세지출	교육세	14.간접국세	040-042	40.국방	042.전력유지	A-6-4.개별소비세,교통세, 교육세 면제
조세특례 163-2	조특	114	조특114	일몰 없음	군인 등에게 판매하는 물품에 대한 주세 면제	국세청	소비세과	조특법상 조세지출	주세	14.간접국세	040-042	40.국방	042.전력유지	A-6-5.주세, 증권거래세 등 면제
조세특례 163-3	조특	114	조특114	일몰 없음	군인 등에게 판매하는 물품에 대한 주세 면제(교육세, 10%)	국세청	소비세과	조특법상 조세지출	교육세	14.간접국세	040-042	40.국방	042.전력유지	A-6-5.주세, 증권거래세 등 면제
조세특례 164	조특	115	조특115	일몰 없음	주세의면제(주한외국군인 및 외국인선원 전용 유흥음식점에서 제공하는 주류)	국세청	소비세과	조특법상 조세지출	주세	14.간접국세	060-062	60.문화 및 관광	062.관광	A-6-5.주세, 증권거래세 등 면제
조세특례 164-1	조특	115	조특115	일몰 없음	주세의면제(주한외국군인 및 외국인선원 전용 유흥음식점에서 제공하는 주류 교육세, 10%)	국세청	소비세과	조특법상 조세지출	교육세	14.간접국세	060-062	60.문화 및 관광	062.관광	A-6-5.주세, 증권거래세 등 면제
조세특례 165	조특	116① 5,6,7, 9,11	조특116① 5,6,7,9,11	2018	인지세의 면제 (농어민 지원, 국세청)	국세청	소비세과	조특법상 조세지출	인지세	14.간접국세	100-101	100.농림수산	101.농업·농촌	A-6-5.주세, 증권거래세 등 면제
조세특례 167	조특	117① 1,2,2의 3	조특117① 1,2,2의3	2020	증권거래세의 면제 (중소기업 지원)	국세청	자본거래 관리과	조특법상 조세지출	증권 거래세	14.간접국세	110-114	110.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4.산업진흥·고도화	A-6-5.주세, 증권거래세 등 면제
조세특례 168	조특	117① 2의5,3	조특117① 2의5,3	2020	파생상품시장 조성 지원을 위한 증권거래세 면제	국세청	자본거래 관리과	조특법상 조세지출	증권 거래세	14.간접국세	110-114	110.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4.산업진흥·고도화	A-6-5.주세, 증권거래세 등 면제
조세특례 168-1	조특	117① 2의5,3	조특117① 2의5,3	2020	증권시장 조성 지원을 위한 증권거래세 면제	국세청	자본거래 관리과	조특법상 조세지출	증권 거래세	14.간접국세	110-114	110.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4.산업진흥·고도화	A-6-5.주세, 증권거래세 등 면제

구분	법	조문	법조문	일몰연도	내용	자료출처	부서명(과,계)	지출구분	분류방법					
									세목	조특 분류	예산 분류 기준			감면방법별 구분(15개구분항목선택)
											예산분류코드	예산분류 (분야)	예산분류 (부문)	
조세특례 168-2	조특	117①5	조특117①5	2020	증권시장 조성 지원을 위한 증권거래세 면제(연기금)	국세청	자본거래관리과	조특법상 조세지출	증권거래세	14.간접국세	110-114	110.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4.산업진흥·고도화	A-6-5.주세, 증권거래세 등 면제
조세특례 169	조특	117① 6 등	조특117① 6 등	일몰없음	증권거래세의 면제 (구조조정 지원 등)	국세청	자본거래관리과	조특법상 조세지출	증권거래세	14.간접국세	110-114	110.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4.산업진흥·고도화	A-6-5.주세, 증권거래세 등 면제
조세특례 172	조특	121의2, 121의4	조특121의2, 121의4	일몰없음	외국인 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소득세)	국세청	소득세과	조특법상 조세지출	소득세	15.외국인 투자	110-114	110.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4.산업진흥·고도화	A-2-1.소득세,법인세 세액감면
조세특례 172-1	조특	121의2, 121의4	조특121의2, 121의4	일몰없음	외국인 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법인세)	국세청	국제세원과	조특법상 조세지출	법인세	15.외국인 투자	110-114	110.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4.산업진흥·고도화	A-2-1.소득세,법인세 세액감면
조세특례 172-2	조특	121의2, 121의4	조특121의2, 121의4	일몰없음	증자의 조세감면(외국인 투자기업)	국세청	국제세원과	조특법상 조세지출	법인세	15.외국인 투자	110-114	110.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4.산업진흥·고도화	A-2-1.소득세,법인세 세액감면
조세특례 174	조특	121의8	조특121의8	2018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소득세)	국세청	소득세과	조특법상 조세지출	소득세	16.제주국제자유도시육성	140-142	140.국토 및 지역개발	142.지역및도시	A-2-1.소득세,법인세 세액감면
조세특례 174-1	조특	121의8	조특121의8	2018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법인세)	국세청	법인세과	조특법상 조세지출	법인세	16.제주국제자유도시육성	140-142	140.국토 및 지역개발	142.지역및도시	A-2-1.소득세,법인세 세액감면
조세특례 175	조특	121의9	조특121의9	2018	제주투자진흥지구·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소득세)	국세청	소득세과	조특법상 조세지출	소득세	16.제주국제자유도시육성	140-142	140.국토 및 지역개발	142.지역및도시	A-2-1.소득세,법인세 세액감면
조세특례 175-1	조특	121의9	조특121의9	2018	제주투자진흥지구·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법인세)	국세청	법인세과	조특법상 조세지출	법인세	16.제주국제자유도시육성	140-142	140.국토 및 지역개발	142.지역및도시	A-2-1.소득세,법인세 세액감면
조세특례 178-1	조특	121의 13	조특121의 13	일몰없음	제주도여행객 면세점에 대한 간접세 등의 특례(부가가치세)	국세청	부가세과	조특법상 조세지출	부가가치세	16.제주국제자유도시육성	140-142	140.국토 및 지역개발	142.지역및도시	A-6-2.부가가치세 영세율
조세특례 178-2	조특	121의 13	조특121의 13	일몰없음	제주도여행객 면세점에 대한 간접세 등의 특례(개별소비세)	국세청	소비세과	조특법상 조세지출	개별소비세	16.제주국제자유도시육성	140-142	140.국토 및 지역개발	142.지역및도시	A-6-4.개별소비세,교통세, 교육세 면제
조세특례 178-3	조특	121의 13	조특121의 13	일몰없음	제주도여행객 면세점에 대한 간접세 등의 특례(개별소비세) (교육세, 30%)	국세청	소비세과	조특법상 조세지출	교육세	16.제주국제자유도시육성	140-142	140.국토 및 지역개발	142.지역및도시	A-6-4.개별소비세,교통세, 교육세 면제

구분	법	조문	법조문	일몰연도	내용	자료출처	부서명(과,계)	지출구분	분류방법					
									세목	조특 분류	예산 분류 기준			감면방법별 구분(15개구분항목선택)
											예산분류코드	예산분류 (분야)	예산분류 (부문)	
조세특례 178-4	조특	121의 13	조특121의 13	일몰 없음	제주도여행객 면세점에 대한 간접세 등의 특례(주세)	국세청	소비세과	조특법상 조세지출	주세	16.제주국제 자유도시육성	140-142	140.국토 및 지역개발	142.지역및도시	A-6-5.주세, 증권거래세 등 면제
조세특례 178-5	조특	121의 13	조특121의 13	일몰 없음	제주도여행객 면세점에 대한 간접세 등의 특례(주세)(교육세, 30%)	국세청	소비세과	조특법상 조세지출	교육세	16.제주국제 자유도시육성	140-142	140.국토 및 지역개발	142.지역및도시	A-6-4.개별소비세,교통세, 교육세 면제
조세특례 179	조특	121의 17	조특121의 17	2018	기업도시개발구역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소득세)	국세청	소득세과	조특법상 조세지출	소득세	17.기업도시	140-142	140.국토 및 지역개발	142.지역및도시	A-2-1.소득세,법인세 세액감면
조세특례 179-1	조특	121의 17	조특121의 17	2018	기업도시개발구역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법인세)	국세청	법인세과	조특법상 조세지출	법인세	17.기업도시	140-142	140.국토 및 지역개발	142.지역및도시	A-2-1.소득세,법인세 세액감면
조세특례 180	조특	121의 20	조특121의 20	2018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등(소득세)	국세청	소득세과	조특법상 조세지출	소득세	18.자역발전	060-061	60.문화 및 관광	061.문화예술	A-2-1.소득세,법인세 세액감면
조세특례 180-1	조특	121의 20	조특121의 20	2018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등(법인세)	국세청	법인세과	조특법상 조세지출	법인세	18.자역발전	060-061	60.문화 및 관광	061.문화예술	A-2-1.소득세,법인세 세액감면
조세특례 181	조특	121의 21	조특121의 21	2018	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등(소득세)	국세청	소득세과	조특법상 조세지출	소득세	18.자역발전	140-142	140.국토 및 지역개발	142.지역및도시	A-2-1.소득세,법인세 세액감면
조세특례 181-1	조특	121의 21	조특121의 21	2018	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등(법인세)	국세청	법인세과	조특법상 조세지출	법인세	18.자역발전	140-142	140.국토 및 지역개발	142.지역및도시	A-2-1.소득세,법인세 세액감면
조세특례 182	조특	121의 22	조특121의 22	2019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소득세)	국세청	소득세과	조특법상 조세지출	소득세	18.자역발전	090-091	90.보건	091.보건의료	A-2-1.소득세,법인세 세액감면
조세특례 182-1	조특	121의 22	조특121의 22	2019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법인세)	국세청	법인세과	조특법상 조세지출	법인세	18.자역발전	090-091	90.보건	091.보건의료	A-2-1.소득세,법인세 세액감면
조세특례 186	조특	121의 26	조특121의 26	2018	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과세이연)	국세청	법인세과	조특법상 조세지출	법인세	22.사업재편계획	110-114	110.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4.산업진흥·고도화	B.간접감면(준비금,과세이연 등)
조세특례 187	조특	121의 27	조특121의 27	2018	채무의 인수·변제에 대한 과세특례(사업재편계획)	국세청	소득세과	조특법상 조세지출	소득세	22.사업재편계획	110-114	110.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4.산업진흥·고도화	A-6-6-2.기타(손금산입, 익금불산입 등)
조세특례 187-1	조특	121의 27	조특121의 27	2018	채무의 인수·변제에 대한 과세특례(사업재편계획)	국세청	법인세과	조특법상 조세지출	법인세	22.사업재편계획	110-114	110.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4.산업진흥·고도화	A-6-6-2.기타(손금산입, 익금불산입 등)

구분	법	조문	법조문	일몰연도	내용	자료출처	부서명(과,계)	지출구분	분류방법					
									세목	조특 분류	예산 분류 기준			감면방법별 구분(15개구분항목선택)
											예산분류코드	예산분류 (분야)	예산분류 (부문)	
조세특례 187-2	조특	121의 27	조특121의 27	2018	채무의 인수·변제에 대한 과세특례(사업재편계획)	국세청	상속증여세과	조특법상 조세지출	증여세	22.사업재편계획	110-114	110.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4.산업진흥·고도화	A-6-6-2.기타(손금산입, 익금불산입 등)
조세특례 188	조특	121의 28	조특121의 28	2018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과세이연)	국세청	소득세과	조특법상 조세지출	소득세	22.사업재편계획	110-114	110.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4.산업진흥·고도화	B.간접감면(준비금,과세이연 등)
조세특례 188-1	조특	121의 28	조특121의 28	2018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과세이연)	국세청	법인세과	조특법상 조세지출	법인세	22.사업재편계획	110-114	110.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4.산업진흥·고도화	B.간접감면(준비금,과세이연 등)
조세특례 189	조특	121의 29	조특121의 29	2018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과세이연)	국세청	법인세과	조특법상 조세지출	법인세	22.사업재편계획	110-114	110.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4.산업진흥·고도화	B.간접감면(준비금,과세이연 등)
조세특례 190	조특	121의 30	조특121의 30	2018	기업 간 주식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법인세)	국세청	법인세과	조특법상 조세지출	법인세	22.사업재편계획	110-114	110.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4.산업진흥·고도화	B.간접감면(준비금,과세이연 등)
조세특례 191	조특	121의 31	조특121의 31	2018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국세청	법인세과	조특법상 조세지출	법인세	22.사업재편계획	110-114	110.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4.산업진흥·고도화	B.간접감면(준비금,과세이연 등)
조세특례 192	조특	122의 3(1)	조특122의 3(1)	2018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교육비)	국세청	소득세과	조특법상 조세지출	소득세	23.기타	050-054	50.교육	054.교육일반	A-4.소득공제
조세특례 192-1	조특	122의 3(2)	조특122의 3(2)	2018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의료비)	국세청	소득세과	조특법상 조세지출	소득세	23.기타	090-091	90.보건	091.보건의료	A-4.소득공제
조세특례 193	조특	122의4	조특122의4	2018	금사업자와 구리 스크랩등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소득세과)	국세청	소득세과	조특법상 조세지출	소득세	23.기타	110-115	110.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5.에너지 및 자원개발	A-3.세액공제
조세특례 193-1	조특	122의4	조특122의4	2018	금사업자와 구리 스크랩등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법인세과)	국세청	법인세과	조특법상 조세지출	법인세	23.기타	110-115	110.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5.에너지 및 자원개발	A-3.세액공제
조세특례 194	조특	126의2	조특126의2	2018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원천)	국세청	원천세과	조특법상 조세지출	소득세	23.기타	010-014	10.일반공공행정	014.재정·금융	A-4.소득공제
조세특례 194-1	조특	126의2	조특126의2	2018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종소)	국세청	소득세과	조특법상 조세지출	소득세	23.기타	010-014	10.일반공공행정	014.재정·금융	A-4.소득공제
조세특례 195	조특	126의3	조특126의3	일몰없음	현금영수증 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세액공제)	국세청	소득세과	조특법상 조세지출	소득세	23.기타	110-114	110.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4.산업진흥·고도화	A-3.세액공제
조세특례 195-1	조특	126의3	조특126의3	일몰없음	현금영수증 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세액공제)-부가	국세청	전자세원과	조특법상 조세지출	부가가치세	23.기타	110-114	110.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4.산업진흥·고도화	A-3.세액공제
조세특례 196	조특	126의6	조특126의6	일몰없음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국세청	소득세과	조특법상 조세지출	소득세	23.기타	110-114	110.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4.산업진흥·고도화	A-3.세액공제

구분	법	조문	법조문	일몰연도	내용	자료출처	부서명(과,계)	지출구분	분류방법					
									세목	조특 분류	예산 분류 기준			감면방법별 구분(15개구분항목선택)
											예산분류코드	예산분류 (분야)	예산분류 (부문)	
조세특례 197	조특	126의7	조특126의7	2019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	국세청	법인세과	조특법상 조세지출	법인세	23.기타	110-115	110.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5.에너지 및 자원개발	A-3.세액공제
조세특례 197-1	조특	126의7	조특126의7	2019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	국세청	소득세과	조특법상 조세지출	소득세	23.기타	110-115	110.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5.에너지 및 자원개발	A-3.세액공제
조세특례 197-3	조특	126의7	조특126의7	2019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	국세청	부가세과	조특법상 조세지출	부가가치세	23.기타	110-115	110.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5.에너지 및 자원개발	A-3.세액공제
조세특례 198	조특	136③	조특136③	2020	접대비 손금불산입 특례(문화접대비 손금산입 한도 확대)	국세청	법인세과	조특법상 조세지출	법인세	23.기타	060-061	60.문화 및 관광	061.문화예술	A-6-6-2.기타(손금산입, 익금불산입 등)
조세특례 198-1	조특	136③	조특136③	2020	접대비 손금불산입 특례(문화접대비 손금산입 한도 확대)	국세청	소득세과	조특법상 조세지출	소득세	23.기타	060-061	60.문화 및 관광	061.문화예술	A-6-6-2.기타(손금산입, 익금불산입 등)
조세특례 199-2	조특	140	조특140	2019	해저광물자원개발을 위한 과세특례(소득세 면제)	국세청	원천세과	조특법상 조세지출	소득세	23.기타	110-115	110.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5.에너지 및 자원개발	A-1.비과세
개별세법 2	개소	18①3	개소18①3	일몰없음	조건부 면세(장애인, 환자수송, 영업용 승용차 개별소비세)	국세청	소비세과	개별세법상 조세지출	개별소비세	11.국민생활 안정	080-089	80.사회복지	089.사회복지일반	A-6-4.개별소비세,교통세,교육세 면제
개별세법 2-1	개소	18①3	개소18①3	일몰없음	조건부 면세(장애인, 환자수송, 영업용 승용차 개별소비세의 교육세, 30%)	국세청	소비세과	개별세법상 조세지출	교육세	11.국민생활 안정	080-089	80.사회복지	089.사회복지일반	A-6-4.개별소비세,교통세,교육세 면제
개별세법 3	개소	19의 2 1,2	개소19의 2 1,2	일몰없음	입장행위의 면세(골프선수의 골프장 이용 개별소비세)	국세청	소비세과	개별세법상 조세지출	개별소비세	14.간접국세	060-063	60.문화 및 관광	063.체육	A-6-4.개별소비세,교통세,교육세 면제
개별세법 3-1	개소	19의 2 1,2	개소19의 2 1,2	일몰없음	입장행위의 면세(골프선수의 골프장 이용 개별소비세의 교육세, 30%)	국세청	소비세과	개별세법상 조세지출	교육세	14.간접국세	060-063	60.문화 및 관광	063.체육	A-6-4.개별소비세,교통세,교육세 면제
개별세법 9	법인	24	법인24	일몰없음	기부금의 손금산입(법인)	국세청	법인세과	개별세법상 조세지출	법인세	11.국민생활 안정	080-089	80.사회복지	089.사회복지일반	A-6-6-2.기타(손금산입, 익금불산입 등)
개별세법 12	부가	42	부가42	일몰없음	면세농산물등의제매입세액공제특례	국세청	부가세과	개별세법상 조세지출	부가가치세	14.간접국세	110-114	110.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4.산업진흥·고도화	A-6-6-1.기타(매입세액공제특례 등)
개별세법 13	부가	46	부가46	일몰없음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국세청	부가세과	개별세법상 조세지출	부가가치세	14.간접국세	110-114	110.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4.산업진흥·고도화	A-6-6-1.기타(매입세액공제특례 등)
개별세법 15	소득	12 2(나)	소득12 2(나)	2018	비과세소득(소규모 주택 임대소득)	국세청	소득세과	개별세법상 조세지출	소득세	11.국민생활 안정	080-088	80.사회복지	088.주택	A-1.비과세

구분	법	조문	법조문	일몰연도	내용	자료출처	부서명(과,계)	지출구분	분류방법					
									세목	조특 분류	예산 분류 기준			감면방법별 구분(15개구분항목선택)
											예산분류코드	예산분류 (분야)	예산분류 (부문)	
개별세법 16	소득	12 2(다), (라)	소득12 2(다), (라)	일몰 없음	비과세 소득 (농가부업·전통주 제조 소득)	국세청	소득세과	개별세법상 조세지출	소득세	11.국민생활 안정	100-101	100.농림수산	101.농업·농촌	A-1.비과세
개별세법 17	소득	12 3(자)	소득12 3(자)	일몰 없음	비과세 소득 (대학교원·연구기관 종사자 등이 받는 연구보조비·활동비)	국세청	원천세과	개별세법상 조세지출	소득세	2.연구개발	050-052	50.교육	052.고등교육	A-1.비과세
개별세법 18	소득	12 3(거)	소득12 3(거)	일몰 없음	비과세 소득(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국세청	원천세과	개별세법상 조세지출	소득세	11.국민생활 안정	080-086	80.사회복지	086.노동	A-1.비과세
개별세법 20	소득	12 3(더)	소득12 3(더)	일몰 없음	비과세 소득(생산직 근로자의 연장근로로 인한 급여)	국세청	원천세과	개별세법상 조세지출	소득세	11.국민생활 안정	080-086	80.사회복지	086.노동	A-1.비과세
개별세법 21	소득	16① 9(영 25①)	소득16① 9(영25①)	일몰 없음	이자소득(장기저축성보험 보험차익의 이자소득 비과세)	국세청	원천세과	개별세법상 조세지출	소득세	10.저축지원	010-014	10.일반공공행정	014.재정·금융	A-1.비과세
개별세법 22	소득	51①1	소득51①1	일몰 없음	추가공제 (경로우대자 추가공제)(원천)	국세청	원천세과	개별세법상 조세지출	소득세	11.국민생활 안정	080-085	80.사회복지	085.노인·청소년	A-4.소득공제
개별세법 22-1	소득	51①1	소득51①1	일몰 없음	추가공제 (경로우대자 추가공제)(종소)	국세청	소득세과	개별세법상 조세지출	소득세	11.국민생활 안정	080-085	80.사회복지	085.노인·청소년	A-4.소득공제
개별세법 23	소득	51①2	소득51①2	일몰 없음	추가공제(장애인 추가공제)(원천)	국세청	원천세과	개별세법상 조세지출	소득세	11.국민생활 안정	080-082	80.사회복지	082.취약계층지원	A-4.소득공제
개별세법 23-1	소득	51①2	소득51①2	일몰 없음	추가공제(장애인 추가공제)(종소)	국세청	소득세과	개별세법상 조세지출	소득세	11.국민생활 안정	080-082	80.사회복지	082.취약계층지원	A-4.소득공제
개별세법 24	소득	51①3	소득51①3	일몰 없음	추가공제(부녀자 추가공제)(원천)	국세청	원천세과	개별세법상 조세지출	소득세	11.국민생활 안정	080-084	80.사회복지	084.보육·가족및여성	A-4.소득공제
개별세법 24-1	소득	51①3	소득51①3	일몰 없음	추가공제(부녀자 추가공제)(종소)	국세청	소득세과	개별세법상 조세지출	소득세	11.국민생활 안정	080-084	80.사회복지	084.보육·가족및여성	A-4.소득공제
개별세법 25	소득	51①6	소득51①6	일몰 없음	추가공제(한부모 소득공제)(원천)	국세청	원천세과	개별세법상 조세지출	소득세	11.국민생활 안정	080-084	80.사회복지	084.보육·가족및여성	A-4.소득공제
개별세법 25-1	소득	51①6	소득51①6	일몰 없음	추가공제(한부모 소득공제)(종소)	국세청	소득세과	개별세법상 조세지출	소득세	11.국민생활 안정	080-084	80.사회복지	084.보육·가족및여성	A-4.소득공제
개별세법 26	소득	51의3	소득51의3	일몰 없음	연금보험료공제(원천)	국세청	원천세과	개별세법상 조세지출	소득세	11.국민생활 안정	080-089	80.사회복지	089.사회복지일반	A-4.소득공제

구분	법	조문	법조문	일몰연도	내용	자료출처	부서명(과,계)	지출구분	분류방법					
									세목	조특 분류	예산 분류 기준			감면방법별 구분(15개구분항목선택)
											예산분류코드	예산분류 (분야)	예산분류 (부문)	
개별세법 26-1	소득	51의3	소득51의3	일몰없음	연금보험료공제(소득)	국세청	소득세과	개별세법상 조세지출	소득세	11.국민생활 안정	080-089	80.사회복지	089.사회복지일반	A-4.소득공제
개별세법 27	소득	51의4	소득51의4	일몰없음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원천)	국세청	원천세과	개별세법상 조세지출	소득세	11.국민생활 안정	080-089	80.사회복지	089.사회복지일반	A-4.소득공제
개별세법 27-1	소득	51의4	소득51의4	일몰없음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소득)	국세청	소득세과	개별세법상 조세지출	소득세	11.국민생활 안정	080-089	80.사회복지	089.사회복지일반	A-4.소득공제
개별세법 28	소득	52④,⑤	소득52④,⑤	일몰없음	특별소득공제(무주택 근로자의 주택자금)(원천)	국세청	원천세과	개별세법상 조세지출	소득세	11.국민생활 안정	080-086	80.사회복지	086.노동	A-4.소득공제
개별세법 28-1	소득	52④,⑤	소득52④,⑤	일몰없음	특별소득공제(무주택 근로자의 주택자금)(소득)	국세청	소득세과	개별세법상 조세지출	소득세	11.국민생활 안정	080-086	80.사회복지	086.노동	A-4.소득공제
개별세법 29	소득	56의2	소득56의2	일몰없음	기장세액공제	국세청	소득세과	개별세법상 조세지출	소득세	1.중소기업	010-014	10.일반공공행정	014.재정·금융	A-3.세액공제
개별세법 30	소득	59의2,(구)51①4	소득59의2,(구)51①4	일몰없음	자녀세액공제(자녀양육비)(원천)	국세청	원천세과	개별세법상 조세지출	소득세	11.국민생활 안정	080-084	80.사회복지	084.보육·가족 및여성	A-3.세액공제
개별세법 30-1	소득	59의2,(구)51①4	소득59의2,(구)51①4	일몰없음	자녀세액공제(자녀양육비)(소득)	국세청	소득세과	개별세법상 조세지출	소득세	11.국민생활 안정	080-084	80.사회복지	084.보육·가족 및여성	A-3.세액공제
개별세법 30-2	소득	59의2,(구)51①5	소득59의2,(구)51①5	일몰없음	자녀세액공제(출생·입양)(원천)	국세청	원천세과	개별세법상 조세지출	소득세	11.국민생활 안정	080-084	80.사회복지	084.보육·가족 및여성	A-3.세액공제
개별세법 30-3	소득	59의2,(구)51①5	소득59의2,(구)51①5	일몰없음	자녀세액공제(출생·입양)(소득)	국세청	소득세과	개별세법상 조세지출	소득세	11.국민생활 안정	080-084	80.사회복지	084.보육·가족 및여성	A-3.세액공제
개별세법 30-4	소득	59의2,(구)51의2	소득59의2,(구)51의2	일몰없음	자녀세액공제(다자녀)(원천)	국세청	원천세과	개별세법상 조세지출	소득세	11.국민생활 안정	080-084	80.사회복지	084.보육·가족 및여성	A-3.세액공제
개별세법 30-5	소득	59의2,(구)51의2	소득59의2,(구)51의2	일몰없음	자녀세액공제(다자녀)(소득)	국세청	소득세과	개별세법상 조세지출	소득세	11.국민생활 안정	080-084	80.사회복지	084.보육·가족 및여성	A-3.세액공제
개별세법 31	소득	59의3,(구)51의3	소득59의3,(구)51의3	일몰없음	연금계좌세액공제(원천)	국세청	원천세과	개별세법상 조세지출	소득세	11.국민생활 안정	080-089	80.사회복지	014.재정·금융	A-3.세액공제

구분	법	조문	법조문	일몰연도	내용	자료출처	부서명(과,계)	지출구분	분류방법					
									세목	조특 분류	예산 분류 기준			감면방법별 구분(15개구분항목선택)
											예산분류코드	예산분류 (분야)	예산분류 (부문)	
개별세법 31-1	소득	59의3,(구)51의3	소득59의3,(구)51의3	일몰없음	연금계좌세액공제(소득)	국세청	소득세과	개별세법상 조세지출	소득세	11.국민생활안정	080-089	80.사회복지	014.재정·금융	A-3.세액공제
개별세법 32	소득	59의4①,52①	소득59의4①,52①	일몰없음	특별소득공제(국민건강,고용보험)(원천)	국세청	원천세과	개별세법상 조세지출	소득세	11.국민생활안정	090-091	90.보건	091.보건의료	A-4.소득공제
개별세법 32-1	소득	59의4①,52①	소득59의4①,52①	일몰없음	특별소득공제(국민건강,고용보험)(소득)	국세청	소득세과	개별세법상 조세지출	소득세	11.국민생활안정	090-091	90.보건	091.보건의료	A-4.소득공제
개별세법 32-2	소득	59의4①,52①	소득59의4①,52①	일몰없음	특별세액공제(보험료)(원천)	국세청	원천세과	개별세법상 조세지출	소득세	11.국민생활안정	090-091	90.보건	091.보건의료	A-3.세액공제
개별세법 32-3	소득	59의4①,52①,	소득59의4①,52①,	일몰없음	특별세액공제(보험료)(소득)	국세청	소득세과	개별세법상 조세지출	소득세	11.국민생활안정	090-091	90.보건	091.보건의료	A-3.세액공제
개별세법 33	소득	59의4②,(구)52②	소득59의4②,(구)52②	일몰없음	특별세액공제(의료비)(원천)	국세청	원천세과	개별세법상 조세지출	소득세	11.국민생활안정	090-091	90.보건	091.보건의료	A-3.세액공제
개별세법 33-1	소득	59의4②,(구)52②	소득59의4②,(구)52②	일몰없음	특별세액공제(의료비)(소득)	국세청	소득세과	개별세법상 조세지출	소득세	11.국민생활안정	090-091	90.보건	091.보건의료	A-3.세액공제
개별세법 34	소득	59의4③,(구)52③	소득59의4③,(구)52③	일몰없음	특별세액공제(교육비)(원천)	국세청	원천세과	개별세법상 조세지출	소득세	11.국민생활안정	050-054	50.교육	054.교육일반	A-3.세액공제
개별세법 34-1	소득	59의4③,(구)52③	소득59의4③,(구)52③	일몰없음	특별세액공제(교육비)(소득)	국세청	소득세과	개별세법상 조세지출	소득세	11.국민생활안정	050-054	50.교육	054.교육일반	A-3.세액공제
개별세법 35	소득	59의4④,(구)52⑥	소득59의4④,(구)52⑥	일몰없음	특별세액공제(개인기부금)(원천)	국세청	원천세과	개별세법상 조세지출	소득세	11.국민생활안정	080-089	80.사회복지	089.사회복지일반	A-3.세액공제
개별세법 35-1	소득	59의4④,(구)52⑥	소득59의4④,(구)52⑥	일몰없음	특별세액공제(개인기부금)(소득)	국세청	소득세과	개별세법상 조세지출	소득세	11.국민생활안정	080-089	80.사회복지	089.사회복지일반	A-3.세액공제

구분	법	조문	법조문	일몰연도	내용	자료출처	부서명(과,계)	지출구분	분류방법					
									세목	조특 분류	예산 분류 기준			감면방법별 구분(15개구분항목선택)
											예산분류코드	예산분류 (분야)	예산분류 (부문)	
개별세법 36	상증	18①1	상증18①1	일몰없음	기초공제(가업상속공제)	국세청	상속증여세과	개별세법상 조세지출	상속세	1.중소기업	110-114	110.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4.산업진흥·고도화	A-4.소득공제
개별세법 37	상증	18①2	상증18①2	일몰없음	기초공제(영농상속공제)	국세청	상속증여세과	개별세법상 조세지출	상속세	11.국민생활안정	100-101	100.농림수산	101.농업·농촌	A-4.소득공제
개별세법 38	상증	23의2	상증23의2	일몰없음	동거주택 상속공제	국세청	상속증여세과	개별세법상 조세지출	상속세	11.국민생활안정	010-014	10.일반공공행정	014.재정·금융	A-4.소득공제
개별세법 39	상증	52의2	상증52의2	일몰없음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국세청	상속증여세과	개별세법상 조세지출	증여세	11.국민생활안정	080-082	80.사회복지	082.취약계층지원	A-1.비과세
경과규정1	조특	7의2	조특7의2	종료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소득세)	국세청	소득세과	경과조치에 따른 조세지출	소득세	1.중소기업	110-114	110.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4.산업진흥·고도화	A-3.세액공제
경과규정 1-1	조특	7의2	조특7의2	종료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법인세)	국세청	법인세과	경과조치에 따른 조세지출	법인세	1.중소기업	110-114	110.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4.산업진흥·고도화	A-3.세액공제
경과규정2	조특	9	조특9	종료	연구인력개발준비금 손금산입(소득세)	국세청	소득세과	경과조치에 따른 조세지출	소득세	2.연구개발	110-114	110.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4.산업진흥·고도화	B.간접감면 (준비금,과세이연 등)
경과규정 2-1	조특	9	조특9	종료	연구인력개발준비금 손금산입(법인세)	국세청	법인세과	경과조치에 따른 조세지출	법인세	2.연구개발	110-114	110.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4.산업진흥·고도화	B.간접감면 (준비금,과세이연 등)
경과규정3	조특	21의2	조특21의2	종료	비거주자의 정기 외화예금에 대한 이자소득세 비과세(소득세)	국세청	소득세과	경과조치에 따른 조세지출	소득세	3.국제자본거래	110-114	110.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4.산업진흥·고도화	A-1.비과세
경과규정 3-1	조특	21의2	조특21의2	종료	비거주자의 정기 외화예금에 대한 이자소득세 비과세(법인세)	국세청	국제세원과	경과조치에 따른 조세지출	법인세	3.국제자본거래	110-114	110.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4.산업진흥·고도화	A-1.비과세
경과규정4	조특	26	조특26	종료	임시투자세액공제(소득세)-통합	국세청	소득세과	경과조치에 따른 조세지출	소득세	4.투자촉진	110-114	110.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4.산업진흥·고도화	A-3.세액공제
경과규정 4-1	조특	26	조특26	종료	임시투자세액공제(법인세)-통합	국세청	법인세과	경과조치에 따른 조세지출	법인세	4.투자촉진	110-114	110.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4.산업진흥·고도화	A-3.세액공제
경과규정 4-2	조특	26	조특26	종료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소득세)	국세청	소득세과	경과조치에 따른 조세지출	소득세	4.투자촉진	110-114	110.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4.산업진흥·고도화	A-3.세액공제

구분	법	조문	법조문	일몰연도	내용	자료출처	부서명(과,계)	지출구분	분류방법					
									세목	조특 분류	예산 분류 기준			감면방법별 구분(15개구분항목선택)
											예산분류코드	예산분류 (분야)	예산분류 (부문)	
경과규정 4-3	조특	26	조특26	종료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법인세)	국세청	법인세과	경과조치에 따른 조세지출	법인세	4.투자촉진	110-114	110.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4.산업진흥·고도화	A-3.세액공제
경과규정5	조특	28 (28의2)	조특28 (28의2)	종료	서비스업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특례(소득세)	국세청	소득세과	경과조치에 따른 조세지출	소득세	4.투자촉진	110-114	110.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4.산업진흥·고도화	A-6-6-2.기타(손금산입, 익금불산입 등)
경과규정 5-1	조특	28 (28의2)	조특28 (28의2)	종료	서비스업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특례(법인세)	국세청	법인세과	경과조치에 따른 조세지출	법인세	4.투자촉진	110-114	110.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4.산업진흥·고도화	A-6-6-2.기타(손금산입, 익금불산입 등)
경과규정6	조특	28의2	조특28의2	종료	중소.중견기업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소득세)	국세청	소득세과	경과조치에 따른 조세지출	소득세	4.투자촉진	110-114	110.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4.산업진흥·고도화	A-6-6-2.기타(손금산입, 익금불산입 등)
경과규정 6-1	조특	28의2	조특28의2	종료	중소.중견기업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법인세)	국세청	법인세과	경과조치에 따른 조세지출	법인세	4.투자촉진	110-114	110.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4.산업진흥·고도화	A-6-6-2.기타(손금산입, 익금불산입 등)
경과규정7	조특	29의5	조특29의5	종료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소득세)	국세청	소득세과	경과조치에 따른 조세지출	소득세	5.고용지원	080-086	80.사회복지	086.노동	A-3.세액공제
경과규정 7-1	조특	29의5	조특29의5	종료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청년고용증대세제)	국세청	법인세과	경과조치에 따른 조세지출	법인세	5.고용지원	080-086	80.사회복지	086.노동	A-3.세액공제
경과규정8	(구) 조특	30의4	(구)조특 30의4	종료	고용증대세액공제(소득세)	국세청	소득세과	경과조치에 따른 조세지출	소득세	5.고용지원	080-086	80.사회복지	086.노동	A-3.세액공제
경과규정 8-1	(구) 조특	30의4	(구)조특 30의4	종료	고용증대세액공제(법인세)	국세청	법인세과	경과조치에 따른 조세지출	법인세	5.고용지원	080-086	80.사회복지	086.노동	A-3.세액공제
경과규정9	조특	43	조특43	종료	구조조정대상 부동산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등	국세청	부동산 납세과	경과조치에 따른 조세지출	소득세	6.기업구조 조정	110-114	110.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4.산업진흥·고도화	A-2-2.양도세,증여세 세액감면
경과규정 10	조특	46	조특46	종료	기업간 주식 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소득세)	국세청	부동산 납세과	경과조치에 따른 조세지출	소득세	6.기업구조 조정	110-114	110.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4.산업진흥·고도화	B.간접감면 (준비금,과세이연 등)
경과규정 10-1	조특	46	조특46	종료	기업간 주식 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법인세)	국세청	법인세과	경과조치에 따른 조세지출	법인세	6.기업구조 조정	110-114	110.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4.산업진흥·고도화	B.간접감면 (준비금,과세이연 등)
경과규정 11	(구) 조특	86①	(구)조특 86①	종료	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원천)	국세청	원천세과	경과조치에 따른 조세지출	소득세	10.저축지원	080-089	80.사회복지	089.사회복지일반	A-4.소득공제

구분	법	조문	법조문	일몰연도	내용	자료출처	부서명(과,계)	지출구분	분류방법					
									세목	조특 분류	예산 분류 기준			감면방법별 구분(15개구분항목선택)
											예산분류코드	예산분류 (분야)	예산분류 (부문)	
경과규정 11-1	(구)조특	86①	(구)조특86①	종료	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종소)	국세청	소득세과	경과조치에 따른 조세지출	소득세	10.저축지원	080-089	80.사회복지	089.사회복지일반	A-4.소득공제
경과규정 12	(구)조특	86②	(구)조특86②	종료	개인연금저축에 대한 비과세	국세청	원천세과	경과조치에 따른 조세지출	소득세	10.저축지원	080-089	80.사회복지	089.사회복지일반	A-1.비과세
경과규정 13	조특	87①	조특87①	종료	주택청약종합저축등에대한소득공제 등(이자소득비과세)	국세청	원천세과	경과조치에 따른 조세지출	소득세	10.저축지원	010-014	10.일반공공행정	014.재정·금융	A-1.비과세
경과규정 13-1	조특	87①	조특87①	종료	주택청약종합저축등에대한소득공제 등(배당소득비과세)	국세청	원천세과	경과조치에 따른 조세지출	소득세	10.저축지원	010-014	10.일반공공행정	014.재정·금융	A-1.비과세
경과규정 14	조특	89	조특89	종료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이자소득 저율과세)	국세청	원천세과	경과조치에 따른 조세지출	소득세	10.저축지원	010-014	10.일반공공행정	014.재정·금융	A-5.저율과세
경과규정 14-1	조특	89	조특89	종료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배당소득 저율과세)	국세청	원천세과	경과조치에 따른 조세지출	소득세	10.저축지원	010-014	10.일반공공행정	014.재정·금융	A-5.저율과세
경과규정 15	조특	91의6	조특91의6	종료	해외자원개발투자 등의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국세청	원천세과	경과조치에 따른 조세지출	소득세	10.저축지원	110-115	110.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5.에너지 및 자원개발	A-5.저율과세
경과규정 16	조특	91의7	조특91의7	종료	고수익·고위험 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	국세청	원천세과	경과조치에 따른 조세지출	소득세	10.저축지원	010-014	10.일반공공행정	014.재정·금융	A-5.저율과세
경과규정 17	조특	91의14	조특91의14	종료	재형저축에 대한 비과세	국세청	원천세과	경과조치에 따른 조세지출	소득세	10.저축지원	010-014	10.일반공공행정	014.재정·금융	A-1.비과세
경과규정 18	조특	91의15	조특91의15	종료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이자소득 비과세)	국세청	원천세과	경과조치에 따른 조세지출	소득세	10.저축지원	010-014	10.일반공공행정	014.재정·금융	A-1.비과세
경과규정 18-1	조특	91의15	조특91의15	종료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배당소득 비과세)	국세청	원천세과	경과조치에 따른 조세지출	소득세	10.저축지원	010-014	10.일반공공행정	014.재정·금융	A-1.비과세
경과규정 19	조특	91의16	조특91의16	종료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원천)	국세청	원천세과	경과조치에 따른 조세지출	소득세	10.저축지원	010-014	10.일반공공행정	014.재정·금융	A-4.소득공제
경과규정 19-1	조특	91의16	조특91의16	종료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종소)	국세청	소득세과	경과조치에 따른 조세지출	소득세	10.저축지원	010-014	10.일반공공행정	014.재정·금융	A-4.소득공제

구분	법	조문	법조문	일몰연도	내용	자료출처	부서명(과,계)	지출구분	분류방법					
									세목	조특 분류	예산 분류 기준			감면방법별 구분(15개구분항목선택)
											예산분류코드	예산분류 (분야)	예산분류 (부문)	
경과규정 20	조특	91 의17	조특91 의17	종료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특례	국세청	원천세과	경과조치에 따른 조세지출	소득세	10.저축지원	010-014	10.일반공공행정	014.재정·금융	A-1.비과세
경과규정 21	조특	97, 97의2	조특97, 97의2	종료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국세청	부동산 납세과	경과조치에 따른 조세지출	소득세	11.국민생활 안정	080-088	80.사회복지	088.주택	A-2-2.양도세,증여세 세액감면
경과규정 21-1	조특	97, 97의2	조특97, 97의2	종료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특례	국세청	부동산 납세과	경과조치에 따른 조세지출	소득세	11.국민생활 안정	080-088	80.사회복지	088.주택	A-2-2.양도세,증여세 세액감면
경과규정 22	조특	97의6	조특97의6	종료	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등(양도소득세)	국세청	부동산 납세과	경과조치에 따른 조세지출	소득세	11.국민생활 안정	080-088	80.사회복지	088.주택	B.간접감면 (준비금,과세이연 등)
경과규정 22-1	조특	97의6	조특97의6	종료	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등(법인세)	국세청	법인세과	경과조치에 따른 조세지출	법인세	11.국민생활 안정	080-088	80.사회복지	088.주택	B.간접감면 (준비금,과세이연 등)
경과규정 23	조특	98	조특98	종료	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국세청	부동산 납세과	경과조치에 따른 조세지출	소득세	11.국민생활 안정	080-088	80.사회복지	088.주택	A-2-2.양도세,증여세 세액감면
경과규정 24	조특	98의2	조특98의2	종료	지방미분양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과세특례	국세청	부동산 납세과	경과조치에 따른 조세지출	소득세	11.국민생활 안정	080-088	80.사회복지	088.주택	A-2-2.양도세,증여세 세액감면
경과규정 25	조특	98의3	조특98의3	종료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국세청	부동산 납세과	경과조치에 따른 조세지출	소득세	11.국민생활 안정	080-088	80.사회복지	088.주택	A-2-2.양도세,증여세 세액감면
경과규정 26	조특	98의5	조특98의5	종료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국세청	부동산 납세과	경과조치에 따른 조세지출	소득세	11.국민생활 안정	080-088	80.사회복지	088.주택	A-2-2.양도세,증여세 세액감면
경과규정 27	조특	98의8	조특98의8	종료	준공후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국세청	부동산 납세과	경과조치에 따른 조세지출	소득세	11.국민생활 안정	080-088	80.사회복지	088.주택	A-2-2.양도세,증여세 세액감면
경과규정 28	조특	99	조특99	종료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국세청	부동산 납세과	경과조치에 따른 조세지출	소득세	11.국민생활 안정	080-088	80.사회복지	088.주택	A-2-2.양도세,증여세 세액감면
경과규정 29	조특	99의2	조특99의2	종료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국세청	부동산 납세과	경과조치에 따른 조세지출	소득세	11.국민생활 안정	080-088	80.사회복지	088.주택	A-2-2.양도세,증여세 세액감면
경과규정 30	조특	99의3	조특99의3	종료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국세청	부동산 납세과	경과조치에 따른 조세지출	소득세	11.국민생활 안정	080-088	80.사회복지	088.주택	A-2-2.양도세,증여세 세액감면

구분	법	조문	법조문	일몰연도	내용	자료출처	부서명(과,계)	지출구분	분류방법					
									세목	조특 분류	예산 분류 기준			감면방법별 구분(15개구분항목선택)
											예산분류코드	예산분류 (분야)	예산분류 (부문)	
경과규정31	조특	104의5	조특104의5	종료	지급명세서에 대한 세액공제(소득세)	국세청	소득세과	경과조치에 따른 조세지출	소득세	13.기타직접국세	010-014	10.일반공공행정	014.재정·금융	A-3.세액공제
경과규정31-1	조특	104의5	조특104의5	종료	지급명세서에 대한 세액공제(법인세)	국세청	법인세과	경과조치에 따른 조세지출	법인세	13.기타직접국세	010-014	10.일반공공행정	014.재정·금융	A-3.세액공제
경과규정32	조특	104의15	조특104의15	종료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소득세)	국세청	소득세과	경과조치에 따른 조세지출	소득세	13.기타직접국세	110-115	110.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5.에너지 및 자원개발	A-3.세액공제
경과규정32-1	조특	104의15	조특104의15	종료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법인세)	국세청	법인세과	경과조치에 따른 조세지출	법인세	13.기타직접국세	110-115	110.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5.에너지 및 자원개발	A-3.세액공제
경과규정33	조특	104의27	조특104의27	종료	고배당기업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원천)	국세청	원천세과	경과조치에 따른 조세지출	소득세	13.기타직접국세	010-014	10.일반공공행정	014.재정·금융	A-5.저율과세
경과규정33-1	조특	104의27	조특104의27	종료	고배당기업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종소)	국세청	소득세과	경과조치에 따른 조세지출	소득세	13.기타직접국세	010-014	10.일반공공행정	014.재정·금융	A-5.저율과세
경과규정35	조특	121의14	조특121의14	종료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과세특례	국세청	소비세과	경과조치에 따른 조세지출	개별소비세	16.제주국제자유도시육성	140-142	140.국토 및 지역개발	142.지역및도시	A-6-4.개별소비세,교통세,교육세 면제
경과규정35-1	조특	121의14	조특121의14	종료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과세특례 (교육세, 30%)	국세청	소비세과	경과조치에 따른 조세지출	교육세	16.제주국제자유도시육성	140-142	140.국토 및 지역개발	142.지역및도시	A-6-4.개별소비세,교통세,교육세 면제
경과규정36	조특	121의24	조특121의24	종료	공적자금 회수를 위한 합병 및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법인세)	국세청	법인세과	경과조치에 따른 조세지출	법인세	20.공적자금회수	010-014	10.일반공공행정	014.재정·금융	A-2-1.소득세,법인세 세액감면

2. 관세청 22개 항목

구분	법	조문	법조문	일몰 연도	내용	자료 출처	부서명 (과,계)	지출 구분	분류방법					
									세목	조특 분류	예산 분류 기준			감면방법별 구분 (15개구분항목선택)
											예산분류 코드	예산분류1	예산분류2	
조세특례 147	조특	106②9	조특106②9	2020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농어민이 직수입하는 농축산어업용 기자재)	관세청	통관기획과	조특법상 조세지출	부가 가치세	14.간접국세	100-101	100.농림수산	101.농업·농촌	A-6-3.부가가치세 면제
조세특례 148-2	조특	118 ①19등	조특118 ①19등	2018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개최 지원(관세의 경감)	관세청	통관기획과	조특법상 조세지출	관세	14.간접국세	060-063	60.문화 및 관광	063.체육	A-6-7.관세감면
조세특례 170	조특	118①3	조특118①3	2019	관세의 경감(신재생에너지 생산용 기자재)	관세청	통관기획과	조특법상 조세지출	관세	14.간접국세	110-115	110.산업·중소 기업 및 에너지	115.에너지및 자원개발	A-6-7.관세감면
조세특례 171	조특	118의2	조특118의2	2018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관세 감면	관세청	통관기획과	조특법상 조세지출	관세	14.간접국세	110-114	110.산업·중소 기업 및 에너지	114.산업진흥· 고도화	A-6-7.관세감면
조세특례 173	조특	121의3	조특121의3	일몰 없음	관세 등의 면제(외국인 투자기업의 자본재도입 관세)	관세청	통관기획과	조특법상 조세지출	관세	15.외국인투자	110-114	110.산업·중소 기업 및 에너지	114.산업진흥· 고도화	A-6-7.관세감면
조세특례 173-1	조특	121의3	조특121의3	일몰 없음	관세 등의 면제(외국인 투자 기업의 자본재도입 부가가치세)	관세청	통관기획과	조특법상 조세지출	부가 가치세	15.외국인투자	110-114	110.산업·중소 기업 및 에너지	114.산업진흥· 고도화	A-6-3.부가가치세 면제
조세특례 173-2	조특	121의3	조특121의3	일몰 없음	관세 등의 면제(외국인 투자 기업의 자본재도입 개별소비세)	관세청	통관기획과	조특법상 조세지출	개별 소비세	15.외국인투자	110-114	110.산업·중소 기업 및 에너지	114.산업진흥· 고도화	A-6-4.개별소비세, 교통세, 교육세 면제
조세특례 173-3	조특	121의3	조특121의3	일몰 없음	관세 등의 면제(외국인 투자 기업의 자본재도입 교육세, 30%)	관세청	통관기획과	조특법상 조세지출	교육세	15.외국인투자	110-114	110.산업·중소 기업 및 에너지	114.산업진흥· 고도화	A-6-4.개별소비세, 교통세, 교육세 면제
조세특례 176	조특	121의 10	조특121의 10	2018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면제	관세청	통관기획과	조특법상 조세지출	관세	16.제주국제자 유도시육성	140-142	140.국토 및 지역개발	142.지역및도시	A-6-7.관세감면
조세특례 177	조특	121의 11	조특121의 11	2018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면제	관세청	통관기획과	조특법상 조세지출	관세	16.제주국제자 유도시육성	140-142	140.국토 및 지역개발	142.지역및도시	A-6-7.관세감면
조세특례 178	조특	121의 13	조특121의 13	일몰 없음	제주도여행객 면세점에 대한 간접세 등의 특례(관세)	관세청	통관기획과	조특법상 조세지출	관세	16.제주국제자 유도시육성	140-142	140.국토 및 지역개발	142.지역및도시	A-6-7.관세감면
조세특례 197-2	조특	126의7	조특126의7	2019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	관세청	통관기획과	조특법상 조세지출	관세	23.기타	110-115	110.산업·중소 기업 및 에너지	115.에너지및 자원개발	A-6-7.관세감면
조세특례 199	조특	140	조특140	2019	해저광물자원개발을 위한 과세특례(부가가치세 면제)	관세청	통관기획과	조특법상 조세지출	부가 가치세	23.기타	110-115	110.산업·중소 기업 및 에너지	115.에너지및 자원개발	A-6-3.부가가치세 면제

구분	법	조문	법조문	일몰연도	내용	자료출처	부서명(과,계)	지출구분	분류방법					
									세목	조특 분류	예산 분류 기준			감면방법별 구분(15개구분항목선택)
											예산분류코드	예산분류1	예산분류2	
조세특례 199-1	조특	140	조특140	2019	해저광물자원개발을 위한 과세특례(관세 면제)	관세청	통관기획과	조특법상 조세지출	관세	23.기타	110-115	110.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5.에너지및 자원개발	A-6-7.관세감면
조세특례 200	조특	141의2	조특141의2	일몰없음	비거주자등의 보세구역 물류시설의 재고자산 판매이익에 대한 과세특례(소득세)	관세청	통관기획과	조특법상 조세지출	소득세	23.기타	120-126	120.교통 및 물류	126.물류등 기타	A-1.비과세
조세특례 200-1	조특	141의2	조특141의2	일몰없음	비거주자등의 보세구역 물류시설의 재고자산 판매이익에 대한 과세특례(법인세)	관세청	통관기획과	조특법상 조세지출	법인세	23.기타	120-126	120.교통 및 물류	126.물류등 기타	A-1.비과세
개별세법 4	관세	89①	관세89①	일몰없음	세율불균형물품의면세(항공기, 반도체 제조·수리용 물품)	관세청	통관기획과	개별세법상 조세지출	관세	23.기타	110-114	110.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4.산업진흥·고도화	A-6-7.관세감면
개별세법 5	관세	90①4	관세90①4	일몰없음	학술연구용품의 감면세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	관세청	통관기획과	개별세법상 조세지출	관세	2.연구개발	110-114	110.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4.산업진흥·고도화	A-6-7.관세감면
개별세법 6	관세	91 4,5	관세91 4,5	일몰없음	종교용품, 자선용품, 장애인용품 등의 면세(장애인용품, 장애인의료용구 등)	관세청	통관기획과	개별세법상 조세지출	관세	11.국민생활안정	080-082	80.사회복지	082.취약계층지원	A-6-7.관세감면
개별세법 7	관세	95① 1,2	관세95① 1,2	2019	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대한 감면세(환경오염방지 물품)	관세청	통관기획과	개별세법상 조세지출	관세	23.기타	070-076	70.환경	076.환경일반	A-6-7.관세감면
개별세법 8	관세	95①3	관세95①3	2018	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대한 감면세(공장자동화 물품)	관세청	통관기획과	개별세법상 조세지출	관세	23.기타	110-114	110.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4.산업진흥·고도화	A-6-7.관세감면
개별세법 11	부가	273	부가273	일몰없음	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교육·과학·문화 관련 수입물품)	관세청	통관기획과	개별세법상 조세지출	부가가치세	14.간접국세	050-054	50.교육	054.교육일반	A-6-3.부가가치세 면제

3. 해양수산부 11개 항목

구분	법	조문	법조문	일몰 연도	내용	자료 출처	부서명 (과,계)	지출 구분	분류방법					
									세목	조특 분류	예산 분류 기준			감면방법별 구분 (15개구분항목선택)
											예산분류 코드	예산분류1	예산분류2	
조세특례 132	조특	106①1, 111①2	조특106 ①1, 111①2	2018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석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면제(부가가치세,도서지방 자가발전)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조특법상 조세지출	부가 가치세	14.간접 국세	100-103	100.농림수산	103.수산·어촌	A-6-3.부가가치세 면제
조세특례 132-1	조특	106①1, 111①2	조특106 ①1, 111①2	2018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석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면제(교통세,도서지방 자가발전)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조특법상 조세지출	교통에너 지환경세	14.간접 국세	100-103	100.농림수산	103.수산·어촌	A-6-4.개별소비세, 교통세, 교육세 면제
조세특례 132-2	조특	106①1, 111①2	조특106 ①1, 111①2	2018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석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면제(교육세,도서지방 자가발전))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조특법상 조세지출	교육세	14.간접 국세	100-103	100.농림수산	103.수산·어촌	A-6-4.개별소비세, 교통세, 교육세 면제
조세특례 149-8	조특	106의2 ①1	조특106 의2①1	2018	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조특법상 조세지출	개별 소비세	14.간접 국세	100-103	100.농림수산	103.수산·어촌	A-6-4.개별소비세, 교통세, 교육세 면제
조세특례 149-9	조특	106의2 ①1	조특106 의2①1	2018	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교통세 면제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조특법상 조세지출	교통에너 지환경세	14.간접 국세	100-103	100.농림수산	103.수산·어촌	A-6-4.개별소비세, 교통세, 교육세 면제
조세특례 149-10	조특	106의2 ①1	조특106 의2①1	2018	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교육세 면제(15%)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조특법상 조세지출	교육세	14.간접 국세	100-103	100.농림수산	103.수산·어촌	A-6-4.개별소비세, 교통세, 교육세 면제
조세특례 149-11	조특	106의2 ①1	조특106 의2①1	2018	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조특법상 조세지출	부가 가치세	14.간접 국세	100-103	100.농림수산	103.수산·어촌	A-6-3.부가가치세 면제
조세특례 150	조특	106의2 ①2	조특106 의2①2	2018	연안운항여객 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면세유)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	조특법상 조세지출	부가 가치세	14.간접 국세	120-124	120.교통 및 물류	124.해운·항만	A-6-3.부가가치세 면제
조세특례 150-1	조특	106의2 ①2	조특106 의2①2	2018	연안운항여객 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면세유)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	조특법상 조세지출	개별 소비세	14.간접 국세	120-124	120.교통 및 물류	124.해운·항만	A-6-4.개별소비세, 교통세, 교육세 면제
조세특례 150-2	조특	106의2 ①2	조특106 의2①2	2018	연안운항여객 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교통세 면제(면세유)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	조특법상 조세지출	교통에너 지환경세	14.간접 국세	120-124	120.교통 및 물류	124.해운·항만	A-6-4.개별소비세, 교통세, 교육세 면제

구분	법	조문	법조문	일몰 연도	내용	자료 출처	부서명 (과,계)	지출 구분	분류방법					
									세목	조특 분류	예산 분류 기준			감면방법별 구분 (15개구분항목선택)
											예산분류 코드	예산분류1	예산분류2	
조세특례 150-3	조특	106의2 ①2	조특106 의2①2	2018	연안운항여객 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교육세 면제(면세유)(15%)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	조특법상 조세지출	교육세	14.간접 국세	120-124	120.교통 및 물류	124.해운·항만	A-6-4.개별소비세, 교통세, 교육세 면제

4. 농협중앙회 10개 항목

구분	법	조문	법조문	일몰 연도	내용	자료 출처	부서명 (과,계)	지출 구분	분류방법					
									세목	조특 분류	예산 분류 기준			감면방법별 구분 (15개구분항목선택)
											예산분류 코드	예산분류1	예산분류2	
조세특례 131	조특	105의2	조특105 의2	일몰 없음	농업,임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농협 중앙회	세무팀	조특법상 조세지출	부가 가치세	14.간접 국세	100-101	100.농림수산	101.농업·농촌	A-6-6-1.기타(매입 세액공제특례 등)
조세특례 149	조특	106의2 ①1	조특106 의2①1	2018	농업용 석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농협 중앙회	세무팀	조특법상 조세지출	개별 소비세	14.간접 국세	100-101	100.농림수산	101.농업·농촌	A-6-4.개별소비세, 교통세, 교육세 면제
조세특례 149-1	조특	106의2 ①1	조특106 의2①1	2018	농업용 석유류에 대한 교통세 면제	농협 중앙회	세무팀	조특법상 조세지출	교통에너 지환경세	14.간접 국세	100-101	100.농림수산	101.농업·농촌	A-6-4.개별소비세, 교통세, 교육세 면제
조세특례 149-2	조특	106의2 ①1	조특106 의2①1	2018	농업용 석유류에 대한 교육세 면제(15%)	농협 중앙회	세무팀	조특법상 조세지출	교육세	14.간접 국세	100-101	100.농림수산	101.농업·농촌	A-6-4.개별소비세, 교통세, 교육세 면제
조세특례 149-3	조특	106의2 ①1	조특106 의2①1	2018	농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농협 중앙회	세무팀	조특법상 조세지출	부가 가치세	14.간접 국세	100-101	100.농림수산	101.농업·농촌	A-6-3.부가가치세 면제
조세특례 165-2	조특	116①5, 6,7,9,1 1	조특116 ①5,6,7, 9,11	2018	인지세의 면제 (농어민 지원, 농협)	농협 중앙회	세무팀	조특법상 조세지출	인지세	14.간접 국세	100-101	100.농림수산	101.농업·농촌	A-6-5.주세, 증권거래세 등 면제

구분	법	조문	법조문	일몰 연도	내용	자료 출처	부서명 (과,계)	지출 구분	분류방법					
									세목	조특 분류	예산 분류 기준			감면방법별 구분 (15개구분항목선택)
											예산분류 코드	예산분류1	예산분류2	
조세특례 184	조특	121의2 3	조특121 의23	일몰 없음	농협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농협 중앙회	세무팀	조특법상 조세지출	법인세	19.농협 구조개편	100-101	100.농림수산	101.농업·농촌	A-2-1.소득세, 법인세 세액감면
조세특례 183	조특	121의2 3①,③, ⑩	조특121 의23①, ③,⑩	2019	농협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과세이연)	농협 중앙회	세무팀	조특법상 조세지출	법인세	19.농협 구조개편	100-101	100.농림수산	101.농업·농촌	B.간접감면(준비금, 과세이연 등)
조세특례 183-1	조특	121의2 3①,③, ⑩	조특121 의23①, ③,⑩	2019	농협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손금산입)	농협 중앙회	세무팀	조특법상 조세지출	법인세	19.농협 구조개편	100-101	100.농림수산	101.농업·농촌	A-6-6-2.기타(손금 산입,익금불산입 등)
조세특례 183-2	조특	121의2 3①,③, ⑩	조특121 의23①, ③,⑩	2019	농협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부가가치세 면제)	농협 중앙회	세무팀	조특법상 조세지출	부가 가치세	19.농협 구조개편	100-101	100.농림수산	101.농업·농촌	A-6-3.부가가치세 면제
조세특례 150-3	조특	106의2 ①2	조특106 의2①2	2018	연안운항여객 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교육세 면제(면세유)(15%)	해양 수산부	연안 해운과	조특법상 조세지출	교육세	14.간접 국세	120-124	120.교통 및 물류	124.해운·항만	A-6-4.개별소비세, 교통세, 교육세 면제

5. 산림청 5개 항목

구분	법	조문	법조문	일몰 연도	내용	자료 출처	부서명 (과,계)	지출 구분	분류방법					
									세목	조특 분류	예산 분류 기준			감면방법별 구분 (15개구분항목선택)
											예산분류 코드	예산분류1	예산분류2	
조세특례 149-4	조특	106의2 ①1	조특106 의2①1	2018	임업용 석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산림청	사유림경 영소득과	조특법상 조세지출	개별소비세	14.간접 국세	100-102	100.농림수산	102.임업·산촌	A-6-4.개별소비세,교통세, 교육세 면제
조세특례 149-5	조특	106의2 ①1	조특106 의2①1	2018	임업용 석유류에 대한 교통세 면제	산림청	사유림경 영소득과	조특법상 조세지출	교통에너지 환경세	14.간접 국세	100-102	100.농림수산	102.임업·산촌	A-6-4.개별소비세,교통세, 교육세 면제
조세특례 149-6	조특	106의2 ①1	조특106 의2①1	2018	임업용 석유류에 대한 교육세 면제(15%)	산림청	사유림경 영소득과	조특법상 조세지출	교육세	14.간접 국세	100-102	100.농림수산	102.임업·산촌	A-6-4.개별소비세,교통세, 교육세 면제

구분	법	조문	법조문	일몰 연도	내용	자료 출처	부서명 (과,계)	지출 구분	분류방법					
									세목	조특 분류	예산 분류 기준			감면방법별 구분 (15개구분항목선택)
											예산분류 코드	예산분류1	예산분류2	
조세특례 149-7	조특	106의 2①1	조특106 의2①1	2018	임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산림청	사유림경 영소득과	조특법상 조세지출	부가가치세	14.간접 국세	100-102	100.농림수산	102.임업·산촌	A-6-3.부가가치세 면제
조세특례 165-6	조특	116① 5,6,7,9, 11	조특116 ①5,6,7, 9,11	2018	인지세의 면제 (농어민 지원, 산림청), 산림청=산림조합	산림청	사유림경 영소득과	조특법상 조세지출	인지세	14.간접 국세	100-102	100.농림수산	102.임업·산촌	A-6-5.주세, 증권거래세 등 면제

6. 수협중앙회 5개 항목

구분	법	조문	법조문	일몰 연도	내용	자료 출처	부서명 (과,계)	지출 구분	분류방법					
									세목	조특 분류	예산 분류 기준			감면방법별 구분 (15개구분항목선택)
											예산분류 코드	예산분류1	예산분류2	
조세특례 131-1	조특	105의2	조특105 의2	일몰 없음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수협중앙회	세무팀	조특법상 조세지출	부가가치세	14.간접 국세	100-103	100.농림수산	103.수산·어촌	A-6-6-1.기타 (매입세액공제특례 등)
조세특례 165-4	조특	116① 5,6,7,9, 11	조특116 ①5,6,7, 9,11	2018	인지세의 면제 (농어민 지원, 수협)	수협중앙회	세무팀	조특법상 조세지출	인지세	14.간접 국세	100-103	100.농림수산	103.수산·어촌	A-6-5.주세, 증권거래세 등 면제
조세특례 185	조특	121의 25⑦⑧	조특121 의25⑦ ⑧	2020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부가가치세 면제)	수협중앙회	세무팀	조특법상 조세지출	부가가치세	21.수협 구조개편	010-014	10.일반공공행정	014.재정·금융	A-6-3.부가가치세 면제
경과규정37	조특	121의 25①	조특121 의25①	종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법인세 과세이연)	수협중앙회	세무팀	경과조치에 따른 조세지출	부가가치세	21.수협 구조개편	110-114	110.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4.산업진흥·고도화	B.간접감면(준비금, 과세이연 등)
경과규정 37-1	조특	121의 25①	조특121 의25①	종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부가세 면제)	수협중앙회	세무팀	경과조치에 따른 조세지출	부가가치세	21.수협 구조개편	110-114	110.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4.산업진흥·고도화	A-6-3.부가가치세 면제

7. 기타 19개 항목

구분	법	조문	법조문	일몰 연도	내용	자료 출처	부서명 (과,계)	지출 구분	분류방법					
									세목	조특 분류	예산 분류 기준			감면방법별 구분 (15개구분항목선택)
											예산분류 코드	예산분류1	예산분류2	
조세특례 139	조특	106①5	조특106①5	2020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환경부	기후경제과	조특법상 조세지출	부가가치세	14.간접국세	070-073	70.환경	073.대기	A-6-3.부가가치세 면제
조세특례 141	조특	106①9	조특106①9	2018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천연가스(CNG시내버스 공급)	환경부	대기환경과	조특법상 조세지출	부가가치세	14.간접국세	070-073	70.환경	073.대기	A-6-3.부가가치세 면제
조세특례 148	조특	106② 19등	조특106② 19등	2018	2018평창동계올림픽 대회 개최 지원 (부가가치세의 면제)	평창동계 올림픽 조직위	재정부	조특법상 조세지출	부가가치세	14.간접국세	060-063	60.문화 및 관광	063.체육	A-6-3.부가가치세 면제
조세특례 148-1	조특	116① 28등	조특116① 28등	2018	2018평창동계올림픽 대회 개최 지원 (인지세의 면제)	평창동계 올림픽 조직위	재정부	조특법상 조세지출	인지세	14.간접국세	060-063	60.문화 및 관광	063.체육	A-6-5.주세, 증권거래세 등 면제
조세특례 165-1	조특	116① 5,6,7,9 ,11	조특116① 5,6,7,9,11	2018	인지세의 면제 (농어민 지원, 행자부)	행정 안전부	지역금융 지원과	조특법상 조세지출	인지세	14.간접국세	100-101	100.농림수산	101.농업·농촌	A-6-5.주세, 증권거래세 등 면제
조세특례 165-3	조특	116① 5,6,7,9 ,11	조특116① 5,6,7,9,11	2018	인지세의 면제(농어민 지원, 농림부)	농림축산 식품부	농업금융 정책과	조특법상 조세지출	인지세	14.간접국세	100-101	100.농림수산	101.농업·농촌	A-6-5.주세, 증권거래세 등 면제
조세특례 165-5	조특	116① 5,6,7,9 ,11	조특116① 5,6,7,9,11	2018	인지세의 면제(농어민 지원, 산림조합)	산림조합 중앙회	세무팀	조특법상 조세지출	인지세	14.간접국세	100-102	100.농림수산	102.임업·산촌	A-6-5.주세, 증권거래세 등 면제
조세특례 165-7	조특	116① 5,6,7,9 ,11	조특116① 5,6,7,9,11	2018	인지세의 면제(농어민 지원, 새마을금고)	새마을금고	경영전략부	조특법상 조세지출	인지세	14.간접국세	100-101	100.농림수산	101.농업·농촌	A-6-5.주세, 증권거래세 등 면제
조세특례 165-8	조특	116① 5,6,7,9 ,11	조특116① 5,6,7,9,11	2018	인지세의 면제(농어민 지원, 신협)	신협중앙회	경영지원부	조특법상 조세지출	인지세	14.간접국세	100-101	100.농림수산	101.농업·농촌	A-6-5.주세, 증권거래세 등 면제
조세특례 166	조특	116① 19	조특116① 19	2018	인지세의 면제 (창업중소기업의 융자서류)	중소벤처 기업부	정책총괄과	조특법상 조세지출	인지세	14.간접국세	110-114	110.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4.산업진흥·고도화	A-6-5.주세, 증권거래세 등 면제

구분	법	조문	법조문	일몰 연도	내용	자료 출처	부서명 (과,계)	지출 구분	분류방법					
									세목	조특 분류	예산 분류 기준			감면방법별 구분 (15개구분항목선택)
											예산분류 코드	예산분류1	예산분류2	
개별세법 1	개소	1③,19 의2 3	개소1③,19 의2 3	일몰 없음	입장행위의 면세 폐광지역 카지노 개별소비세 저율과세 등)	산업통상 자원부	석탄산업과	개별세법상 조세지출	개별소 비세	8.지역 균형발전	140-142	140.국토 및 지역개발	142.지역및도시	A-6-4.개별소비세, 교통세, 교육세 면제
개별세법 1-1	개소	1③,19 의2 3	개소1③,19 의2 3	일몰 없음	입장행위의 면세 폐광지역 카지노 개별소비세 저율과세 등 교육세, 30%)	산업통상 자원부	석탄산업과	개별세법상 조세지출	교육세	8.지역 균형발전	140-142	140.국토 및 지역개발	142.지역및도시	A-6-4.개별소비세, 교통세, 교육세 면제
개별세법 10	부가	26①10	부가26①10	일몰 없음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소액담배, 특수제조용 담배)	KT&G	재무실	개별세법상 조세지출	부가가 치세	11.국민 생활안정	080-089	80.사회복지	089.사회복지 일반	A-6-3.부가가치세 면제
개별세법 14	소득	12 2(가)	소득12 2(가)	일몰 없음	비과세소득 (전답 임대소득)	통계청	통계시스템	개별세법상 조세지출	소득세	11.국민 생활안정	100-101	100.농림수산	101.농업·농촌	A-1.비과세
개별세법 19	소득	12 3(너)	소득12 3(너)	일몰 없음	비과세 소득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용자부담금)	국민건강 보험공단	재정관리실	개별세법상 조세지출	소득세	13.기타 직접국세	090-092	90.보건	092.건강보험	A-1.비과세
개별세법 19-1	소득	12 3(너)	소득12 3(너)	일몰 없음	비과세 소득(고용보험료 사용자부담금)	근로복지 공단	보험재정부	개별세법상 조세지출	소득세	13.기타 직접국세	090-092	90.보건	092.건강보험	A-1.비과세
경과규정 34	조특	106② 16등	조특106② 16등	종료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 대회 지원 (부가가치세의 면제)	포뮬러원 조직위	기획행정팀	경과조치에 따른 조세지출	부가가 치세	14.간접 국세	060-063	60.문화 및 관광	063.체육	A-6-3.부가가치세 면제
경과규정 34-1	조특	116① 26등	조특116① 26등	종료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 대회 지원(인지세의 면제)	포뮬러원 조직위	기획행정팀	경과조치에 따른 조세지출	인지세	14.간접 국세	060-063	60.문화 및 관광	063.체육	A-6-5.주세, 증권거래세 등 면제
경과규정 34-2	조특	118① 17등	조특118① 17등	종료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 대회 지원(관세의 경감)	포뮬러원 조직위	기획행정팀	경과조치에 따른 조세지출	관세	14.간접 국세	060-063	60.문화 및 관광	063.체육	A-6-7.관세감면

* 환경부, 평창동계조직위, 농림부, 행안부, 산림조합중앙회, 새마을금고, 신협중앙회, 중기부, 산통부, KT&G, 통계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dBrain을 활용한 재정지출과 조세지출 연계관리

발 간 월 2019년 8월

발 행 인 김재훈 한국재정정보원장

편　　집 재정정보분석본부 재정분석기획부

발 행 처 한국재정정보원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0, 메트로타워
(Tel. 02-6273-0500)

디 자 인 (주)메이커뮤니케이션　Tel. 02-761-8340

I S B N 979-11-965521-2-1 93350

문의: 재정정보분석본부 재정분석기획부 02)6908-8591
jazzsh@kpfis.kr

9 791196552121 93350

한국재정정보원

Korea Public Finance
Information Service

9 791196552121 93350